



최신 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별책부록 2011년 주요 국가 법령 제·개정목록

모니터링 국가 미국 / 유럽연합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중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2011년 주요 국가 법령 제·개정목록

C · O · N · T · E · N · T · S

모니터링 국가

004 미국

021 유럽연합

058 영국

070 프랑스

088 독일

102 일본

117 중국

134 남아프리카공화국

※ 모니터링 국가는 추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게재된 내용은 모니터링 담당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

1 월

■ S.118

Latest Title: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the Elderly Act of 2010

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1-372.

- 2010년 섹션 202 노인지원주택법 개정

노인지원주택을 위한 임차지원사업에 관한 1959년 주택법(Housing Act of 1959)을 개정하였다. 합리적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 및 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장관이 임차지원사업 연간 계약대금을 조정하는 권한을 자유재량에서 의무적인 것으로 변경하였다. 장관이 지원주택 소유자가 무주택 노인에게 임차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허가하게끔 규정하였다.

본 법은 2000년 미국인 주택소유권 및 경제적 기회법을 개정하여 (1)프로젝트형 임차주택지원사업 부채변제 (2) 비자출자금의 사용, (3) 사업잔여금의 사용 등을 규제하는 요건사항을 개정하였다. 연장자보호 임차료지원계약을 규제하는 요건 등을 규정하여, 리파이낸싱이나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의 경우 노인사업 거주자의 주거상실을 예방하고, 노인사업보호 및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있다. 노인주택을 지원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grants)에 관하여 지원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의 정의를 확장하였다. 주된 주거공간으로서 지원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을 사용하는 가족을 위한 임차료 지원에 관하여, 1937년 연방주택법(United States Housing Act of 1937)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가정은 임차료 지원을 최초 받는 시점에 월조정수입(monthly adjusted income)의 40%를 넘는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장관은 전미 연장자주거정보센터(clearinghouse)를 설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

■ S.841

Latest Title: Pedestrian Safety Enhancement Act of 2010

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1-373.

- 2010년 보행자안전증진법 개정

2010년 보행자안전증진법(Pedestrian Safety Enhancement Act of 2010)은 교통부 장관에게 단계적 모터 자동차 안전기준 규제입법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자동차 또는 기타 장치가 시각장애인 및 기타 보행자들에게 안전경고를 하기 위하여 발산하는 최소한의 소음수준을 연구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이나 기타 보행자들이 근처에 있는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일정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고음 발산의무화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들은 해당 기준에 맞추어 경고음을 발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본 법은 또한 규제입법을 만들기 위하여 전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책임자에게 국고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2월 9일 상원에서 통과된 원안이 그대로 법률로 입법되었다.

■ S.1481

Latest Title: Frank Melville Supportive Housing Investment Act of 2010

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1-374.

- 2010년 프랭크 멜빌 지원주택투자법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주거지원요건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미 주거공급법(affordable housing act)를 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제공권한은 유지시켰다. 하지만,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의 장관이 직접 장애인에게 임차료 지원을 제공하는 권한은 폐지하였다. 프로젝트 임차지원 계약요건과 연간 계약대금의 갱신 및 증가를 개정하였다. 저소득 주거세공제 또는 세금면제 주택채권으로 지원받는 사업 스폰서와의 최초 계약은 기간을 최대 360개월로 하고 60개월 동안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주택소유자와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원주택에 대한 비용제한 적용을 개정하고, 장관은 이러한 비용제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가족 사업을 위한 회계연도별 자본금 선급금의 최소비율을 확립하였다. 또한 저소득 장애를 가진 비노인계층 및 최소한 사람의 장애인을 포함한 최저임금가족에 대한 지원주택 제공을 확대하기 및 임차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Comptroller General(회계감사원장)은 장애인 가정 지원사업의 적합성 및 효율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S.3036

Latest Title: National Alzheimer's Project Act

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1-375.

- 알츠하이머 사업법

미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장관실에 전미 알츠하이머사업국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은 구체적으로 이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알츠하이머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방법 개발을 가속화함, 2) 알츠하이머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계획을 만들고 유지함, 3) 알츠하이머병을 가진 시민의 건강보호와 치료를 협력 지원함, 4)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높은 인종과 낮은 인종을 임상실험이나 리서치에 포함시켜 인종간 격차를 해소함, 5) 병 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 공조를 강화함, 6) 모든 연방기관에 걸쳐 알츠하이머 리서치 및 서비스 정보와 협력을 제공. 또한 알츠하이머에 관한 모든 연방사업을 평가할 부서책임자의 재량권과 관련의무를 규정하고, 알츠하이머 리서치 및 치료 자문위원회를 부서 내에 설립하고 있다.

■ S.3243

Anti-Border Corruption Act of 2010

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1-376.

- 2010년 국경지역 부패방지법

2010년 국경지역 부패방지법은 국토안보부의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DHS))에게 이하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1) 본 법 제정 후 2년 이내에 미연방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법 강제집행 부서 지원자들이 해당 부서에 고용되기 전에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2) 본 법 발효 후 180 일 이내에 미연방 세관 및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상기 법강제집행 부서원들의 신상배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에 관한 하원 및 상원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월

■ H.R.366

Latest Title: To provide for an additional temporary extension of programs under the Small Business Act and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and for other purposes.

1/3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1

-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및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상의 프로그램 추가적 일시 연장법 (개정)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및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하에서 실시되던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일시 연장하고 그 연장기한을 2011년 5월 31일로 하였다. 대신에 프로그램의 조건과 내용은 동일하다. 프로그램은 시범사업(pilot program)까지 포함한다. 본 법은 하원 소기업위원회(House Small Business)의 심사를 거쳐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거쳐 입법화되었다. 본 법률의 구성은 전문과 섹션 1. 등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 H.R.514

Latest Title: FISA Sunsets Extension Act of 2011

2/25/2011 Became Public Law No: 112-3

- 2011년 FISA 일몰 연장법

본 법은 “2005년 미 연방 애국자 증진 및 재승인법(USA PATRIOT Improvement and Reauthorization Act of 2005)”을 개정하여 2011년 5월 27일까지 이동식 전자감시권한(roving electronic surveillance authority) 부여 규정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은 동시에 “2004년 정보개선 및 테러리즘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개정하여 “해외 권리(foreign power)의 대리인(agent)”의 정의를 개정하는 규정을 2011년 5월 27일까지 연장하였다. 해외권력 대리인은 국제적 테러리즘이나 약탈적 행위(“외로운 늑대[lonewolf]”규정)에 참여한 모든 비미국인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사업행위 기록(business records)과 개인적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접근과 관련된 것이다. 본 법은 하원 사법위원회(House Judiciary)와 하원 정보위원회(House Intelligence)의 심사를 거쳐 하원에서 먼저 통과한 후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본 법률은 전문과 섹션 1. 법률명(Short title)과 섹션 2. 특정규정의 종료연장(Extension of sunsets of provisions relating to...) 등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3 월

■ H.J.RES.44

Latest Title: Further Continuing Appropriations Amendments, 2011

3/2/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

- 2011년 추가적(further) 예산지속승인 개정법

2011년 추가적 예산지속승인 개정법- 2011년 예산지속승인법(Continuing Appropriation Act, CAA of 2011) (P.L. 111-242)을 개정하여 2011년3월18일까지 연장한다. 하원법안[H.Res. 5 (112th Congress)]에 따라 테러에 대한 전세계적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상작전 및 상원법안[S.Con.Res. 13 (FY2010 budget resolution)]에 따른 비상상황 조건으로서 특정 예산금액을 지정한다. 본 예산연장법은 농업국, 비도시지역 개발국, 식품및약품 행정국 등 관련 행정기관 2010년 예산승인법하에서의 특정 규정을 제정함. 2010년 예산승인법은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으로서 비도시지역 유틸리티 서비스, 원거리 학습, 원격의료 및 광대역 사업 등의 광대역 전화통신 여신과 관련되며 2011년 예산지속승인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1)하에서 승인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예산연장법은 미공병대의 민간 조사, 건설,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정 비율로 예산배정을 함. 또한 이하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운용비율로 예산배정을 규정하고 있음: (1)내무부 개간국(Bureau of Reclamation)의 수자원 및 기타 자원, (2)에너지부의 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3) 에너지부의 에너지 사업으로서 전기 운송 및 에너지 신뢰도, (4) 에너지부 에너지 사업으로서 핵 에너지, (5) 에너지부 에너지 사업으로서 화석에너지 조사 및 개발, (6) 에너지부 에너지 사업으로서 과학.

■ H.R.662

Latest Title: 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 Act of 2011

3/4/2011 Became Public Law No: 112-5

- 2011년 육상교통확장법 (개정)

본 법에 의해 교통부장관은 회계연도 2011년 육상교통사업활동을 위해 예산배정된 금액을 2010년 육상교통확장법(Surface Transportation Extension Act of 2010)하에서 배정된 금액수준까지 축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타이틀 1. 연방보조 고속도로 (섹션 101)는 2010년 육상교통확장법을 개정하여 고속도로 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 HTF)(대량 수송 계좌는 제외)로부터의 예산배정 승인을 회계연도 2011년도까지 연장함을 규정한다. 고속도로 신탁펀드(Highway Trust Fund, HTF)는 “안전하고 책임있으며 유연하며 효율적인 교통형평법: 사용자를 위한 유산(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하에서의 연방보조 고속도로, 지상 운송 리서치 및 운송계획사업 등을 위한 것이다. 본 법은 또한 “딩젤 존슨 스포츠낚시 회복법(Dingell-Johnson Sport Fish Restoration Act)”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2011년까지 낚시회복 및 관리사업을 위한 예산승인 및 예산분배를 위한 현재 요건을 연장한다. ▶타이틀 2. 고속도로 안전 사업연장(섹션201)은 SAFETEA-LU를 개정하여 회계연도 2011년까지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 안전사업을 위한 예산승인을 연장하되 회계연도 2009년 수준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타이틀 3. 공공교통사업(섹션 301)은 2011년 회계연도까지 대도시 계획사업 및 주정부 계획및리서치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교통사업을 위한 자본투자보조금할당을 연장하고 있음을 규정한다. ▶타이틀 4. 지출권한 연장(섹션 401)은 세법을 개정하여 회계연도 2011년까지 (1) 상기 펀드(HTF) 고속도로 및 대량수송수단 계좌 및 (2) 스포츠 낚시회복 및 보트활동 신탁펀드 등의 지출권한을 연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 H.J.RES.48

Latest Title: Additional Continuing Appropriations Amendments, 2011

3/18/2011 Became Public Law No: 112-6

- 2011년 추가적(additional) 예산지속승인 개정법

2011년 추가적 예산지속승인개정법은 2011년 예산지속승인법(CAA of 2011) (P.L. 111-242)을 개정하여 2011년 4월 8일까지 회계연도 2011년 특정예산 지속승인을 연장한다. 본 개정법은 특정 농업, 보존,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정 운용비율로 자금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본 개정법은 또한 (1) 농업 리서치 서비스, (2) 천연자원보존 서비스, (3) 전미전화통신 및 정보 행정국, (4) 워싱턴D.C. 책임재무사무관실에 대한 연방지급, (5) 아일랜드(Ireland) 국제펀드, (6) 주거및도시개발부(HUD), 재개발필요지역 재개발, (7) 연방철도행정국 등을 위한 특정 자금제공을 제거한다.

대신에 에이브러햄 링컨 2백주년 기념위원회 또는 네브拉斯카 주 오마하시에 위치한 더햄 박물관(Durham Museum)의 운용을 위한 회계연도 2011년 예산지속승인법(CAA of 2011)상 이용가능한 특정 자금제공 사용을 금지한다.

■ H.R.1079

Latest Title: Airport and Airway Extension Act of 2011

3/3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7

- 2011년 공항 및 항로 확장법 (개정)

본 법은 1986년 세법을 개정하여 공항 및 항로 신탁펀드의 제공 및 지출권한을 연장하고, 미통합법전 타이틀 49편을 개정하여 공항개선사업 등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섹션 2(세제지원 공항 및 항로 신탁펀드 연장)는 연료세(fuel taxes), 티켓세(Ticket taxes)에 대하여 적용되는 1986년 미연방세법 섹션 4081(d)(2)의 sub-paragraph(B), 4261(j)(1)(A)의 Clause (ii), 4271(d)(1)(A)의 Clause(ii)를 개정하여 기간을 2011년 3월 31일로부터 2011년 5월 31일로 연장한다. ▶섹션 3(공항 및 항로 신탁펀드 지출권한 연장)는 1986년 미연방세법 9502(d)의 paragraph (1)을 개정하여 2011년 4월 1일로부터 2011년 6월 1일로 연장한다. ▶섹션 4(공항개선사업의 연장)는 미통합법전 타이틀 49, 섹션 48103을 개정하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였다.

4 월

■ H.R.4

Latest Title: Comprehensive 1099 Taxpayer Protection and Repayment of Exchange Subsidy Overpayments Act of 2011

Sponsor: Rep Lungren, Daniel E. [CA-3] (introduced 1/12/2011) Cosponsors (273)

Related Bills: H.RES.129, H.R.60, H.R.144, H.R.584, H.R.705, S.18, S.72

4/14/2011 Became Public Law No: 112-9

- 2011년 종합적 1099 납세자 보호 및 교환보조금 과지급 반환법 (연방세법 개정)

2011년 종합적 1099 납세자 보호 및 교환보조금 과지급 반환법은 이하의 목적을 위하여 연방세법을 개정하였다:

1) 면세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600달러이상의 지급 및 모든 종류의 재산을 대가로 지급된 총매출액의 지급에 대하여 연방국세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연방세법 Section 6041), 2) 거래나 사업용이 아닌 임대부동산에 대한 지급금액 보고 의무를 폐지(연방세법 Section 6041), 3) 2013년 12월 31일 이후의 과세연도에는 가구당 소득이 극빈소득 수준(poverty line)의 4배이하인 납세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금공제 선지급금액을 증가(연방세법 Clause (i) of section 36B(f)(2)(B)).

■ H.R.1473

Latest Title: Department of Defense and Full-Year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1

4/15/2011 Became Public Law No: 112-10

- 2011년 국방부 해당연도 지속예산승인법

2011년 국방부 해당연도 지속예산승인법은 국방부에 대한 회계연도 2011년 예산을 이하와 같은 목적으로 승인한다:

(1) 군인, (2) 미연방 항소 군법원 운용, 환경복구, 해외인도주의 활동, 재난, 민간지원, 소련과의 협동적 위협 감축행위, 및 국방 조달인력 개발기금 등의 운용과 유지,(3) 1950년 국방생산법(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하에서의 전 투기, 미사일, 무기, 전투 차량, 탄약, 전투선박의 건조와 개조, 구매 등을 포함한 조달, (4) 연구, 개발, 시험, 평가, (5) 국방 운용자금펀드 및 전미국방 해상수송 기금, (6) 국방 건강 프로그램, (7)화학약품 및 군수품 파괴, (8) 마약거래금지 및 마약 금지활동, (9) 조사관 사무, (10) 중앙정보국 퇴직 및 장애 시스템 기금, (11), 정보 커뮤니티 관리계좌, (12) 해외 비상작전 (보통, 예비 및 전미경비군, 운용 및 유지 포함), 아프간 인프라 기금, 아프간 보안군 기금, 이라— 보안군 기금, 파키스탄 대 저항군 기금, 조달, 전미경비군 및 예비군 장비, 합동 폭발물 처리기금 등.

5 월

■ H.R.1308

Latest Title: To amend the Ronald Reagan Centennial Commission Act to extend the termination date for the Commission, and for other purposes.

5/12/2011 Became Public Law No: 112-13

- ‘로널드 레이건 100주년 위원회법(Ronald Reagan Centennial Commission Act)’을 개정하여 상기 위원회의 만료일을 연장 및 기타 목적을 위한 개정

‘로널드 레이건 100주년 위원회 법(Ronald Reagan Centennial Commission Act)’을 개정하여 (1) 본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일을 2011년 4월 30일로부터 2011년 11월 30일로 연장하고(Section 7(c) of the Ronald Reagan Centennial Commission Act, Public Law 111-25; 36 U.S.C. 101 note prec.), (2) 위원회의 최종 종료일을 2011년 5월 30일로부터 11월 31일로 연장하였다(Section 8 of the Ronald Reagan Centennial Commission Act, Public Law 111-25; 36 U.S.C. 101 note prec.).

6 월

■ S.1082

Latest Title: Small Business Additional Temporary Extension Act of 2011

6/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17

- 2011년 소기업 추가임시 연장법(개정)

2011년 소기업 추가임시 연장법(Small Business Additional Temporary Extension Act of 2011) -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SBA; 본 법은 1953년 7월 30일 소규모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제정 및 공포되었다. 본 법률에 근거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소기업 대출사업이다) 또는 1958년 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of 1958; 본 법률에 기하여 SBA는 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SBICs)를 설립하여 미국내 중소 벤처기업 여신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상 2011년 5월 31일까지 현재 승인되어 있는 모든 사업 및 시범사업, 권한, 제공 등에 대한 예산승인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2011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본 법은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개정하여 소기업혁신리서치[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및 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사업, 그리고 상업화 시범 프로그램을 회계연도 2011년도 까지 재승인하였다. 또한 본 개정에 의하여 상기 소기업혁신리서치 및 소기업기술이전 사업기금(funds)은 경쟁성과 우위 점에 기반한 선정절차에 따라 지급 된다.

■ H.R.754

Latest Titl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1

6/8/2011 Became Public Law No: 112-18

- 회계연도 2011년 정보기관 예산승인법

본 법은 정보기관의 행위 및 정보기관 관련활동을 위한 회계연도 2011년 예산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연방정보이사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연방보안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 육군, 해군, 및 공군부(Department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해안경비대(Coast Guard); 국무부(Departments of State), 재무부(Treasury), 에너지부(Energy, DOE), 및 사법부(Justice, DOJ); 연방조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마약강제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연방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연방지리원(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 및 승인되게 되었다.

7 월

■ H.R.2279

Latest Title: Airport and Airway Extension Act of 2011, Part III

6/29/2011 Became Public Law No: 112-21

- 2011년 공항 및 활주로 연장법 파트3(Part III)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상 관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1년 7월 22일까지 연장하고, 항공유에 대한 특별소비세(Excise Tax)와 승객과 물건에 대한 항공운송 특별소비세를 증액할 뿐 아니라, 공항 및 활주로 신탁자금에 대한 지출권한을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11년 7월 22일 종료되는 ‘공항 개발계획 및 소음대응계획 프로젝트 (공항발전사업-Airport improvement projects [AIPs])’에 대한 예산승인을 증액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소진될 때까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본 개정법은 상기 ‘공항발전사업[AIPS]’ 자금제공액을 계산하는 계산식을 삽입하고,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항발전사업[AIPS]’ 지원금을 마련할 권한을 2011년 7월 22일까지 연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전 100-세기 항공 예산재승인법’[Vision 100 - 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을 개정함으로써 ‘특정공항발전사업[AIPS]’비용의 연방정부 부담부분을 95%까지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미드웨이 아이랜드 공항(Midway Island Airport) 개발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 월

■ S.1103

Latest Title: A bill to extend the term of the incumbent Director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7/26/2011 Became Public Law No: 112-24

- FBI의 현 Director 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1968년 옴니버스 범죄 통제 및 안전 거리법'(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을 개정하여 FBI의 Director 직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기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2011년 8월 3일부로 시작되어 2013년 9월 4일까지 지속되게 된다. 본 제도는 법률제정일 현재 Director 가 상기의 새로운 임기제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 Director는 2013년 9월 4일 이후에는 Director로서 직위를 계속할 수는 없다.

■ S.365

Latest Title: Budget Control Act of 2011

8/2/2011 Became Public Law No: 112-25

- 2011년 예산통제법

본 법은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 관리법(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그램-러드만-홀링스법, Gramm-Rudman-Hollings Act)을 개정하여 임의성 지출(discretionary spending) 한도 시행을 위한 감축요건(sequestration requirements)을 수정하였다. 먼저 '행정관리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위반발생을 방지하도록 필요시 감축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6가지 항목, 즉 1)고속도로, 2)IMF 할당금, 3)국제연체액에 대한 특별할당금, 4)소득세 공제 이니셔티브, 5)보건복지부 채택 이티셔티브 지급금, 및 6)보전활동 등에 대하여 임의성 지출한도 정정(adjustments)을 위한 특별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행정관리 예산국(OMB)'의 감축보고서 및 대통령의 예산보고서는 (1)비상 예산승인 또는 해외 긴급작전/테러와의 전쟁, (2) 건강보험 사기 및 남용 통제, (3) 재난 구호 등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및 차년도에 대한 임의성 지출 한도 정정내용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본 법률은 여러가지 복잡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적자감축을 위한 의회합동선발 상임위원회'(Congressional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균형예산수정(a Balanced Budget Amendment)을 위한 옵션제도이다. '적자감축을 위한 의회합동선발 상임위원회'는 회계연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적자를 최소 \$1.5 trillion까지 감축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본 법률에 의하여 우선 연방채무한도는 즉각적으로 \$400 billion까지 증액되었고, 또한 대통령은 향후 의회의 불승인 이의절차 등의 단계를 거칠 수 있지만 \$500 billion를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 H.R.2715

Latest Title: To provide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with greater authority and discretion in enforcing the consumer product safety laws, and for other purposes.

8/12/2011 Became Public Law No: 112-28

-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에 소비자제품안전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더 큰 권한과 재량을 부여함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증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을 개정하여 효력발생일 후에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아동제품 납성분 한도를 적용한다. 본 법에 의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일정한 경우 특정물품, 일정분류 물품, 재료 기타 구성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 납성분한도 적용 면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일정한 경우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납제한에 따라 제조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아동의 입에 들어갈 수 없거나 소화될 수 없는 제품인 경우, 3) 상기 면제가 공공건강이나 안전에 측정가능한 부작용이 없는 경우 등.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본 법에 의하여 제3자 시험규칙(third party testing regulations)을 개정하여 시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9 월

■ H.R.2005

Latest Title: Combating Autism Reauthorization Act of 2011

9/30/2011 Became Public Law No: 112-32

- 2011년 자폐증퇴치 예산재승인법

본 법은 공공건강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를 개정하여 회계연도 2014년까지 이하의 사항을 연장 및 예산 재승인을 하였다. 즉, (1) 자폐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및 기타 발달장애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프로그램;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발달장애에 대한 교육, 조기진단 및 개입 프로그램; (3) 유관기관 상호간 자폐 협력위원회 등의 사항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산승인된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 조사 및 연구사업(Developmental Disabilities Surveillance and Research Program)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22백만달러가 예산승인되었으며, 자폐교육 조기진단 개입(Autism Education,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48백만 달러를 예산승인하였다. 유관기관간 자폐협조위원회 및 기타 사업(Interagency Autism Coordinating Committee; Certain Other Programs)을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161백만 달러 예산승인하였다.

■ H.R.2883

Latest Titl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nd Innovation Act

9/30/2011 Became Public Law No: 112-34

- 자녀및가정 서비스 증진및개혁법

본 법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타이틀 4편 파트 B(title IV part B)(자녀 및 가정서비스)를 개정하여 '스테파니 터브 존스 자녀복지서비스사업(Stephanie Tubbs Jones Child Welfare Services Program)'을 위한 예산승인을 회계연도 2016년까지 연장한다.

본 법은 '위탁가정 자녀의 의료서비스 감시 및 협력을 위한 각 주정부 계획'이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및 친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따르는 감정적 충격(emotional trauma)의 모니터링 및 치료,
(2) 향정신 치료약품(psychotropic medications)의 적절한 사용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 등. 또한 본 법은 자녀 복지서비스에 대한 각 주정부 계획이 이하의 내용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5세 이하의 자녀들이 가정(a permanent family)없이 지내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 (2) 정부의 관련프로그램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은 자녀들의 성장 필요(developmental needs)를 해결하기 위한 주정부의 활동, (3)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정보원 등.

■ H.R.2943

Latest Title: Short-Term TANF Extension Act

9/30/2011 Became Public Law No: 112-35

- 단기 빈곤가정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연장법

본 법은 회계연도 2012년 1분기까지 예산승인을 하여 주정부,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아일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등에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타이틀 4편 파트 A (빈곤가정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하의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본 연장법은 특정 주에서의 인구증가로 인한 보충적 지원금과 주정부의 복지사업을 위한 비상기금 관련 활동은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법은 또한 직전 회계연도 동안 주정부가 효율적인 빈곤가정임시지원 지출을 적정지출비율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 행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0 월

■ H.R.2646

Latest Title: Veterans Health Care Facilities Capital Improvement Act of 2011

10/5/2011 Became Public Law No: 112-37

- 2011년 전역군인 의료시설자금 증진법

본 법은 특정금액 한도내 보훈처장관이 보훈처의 회계연도 2012년도의 주요 의료시설건축사업을 위성턴 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 주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본 법은 또한 보훈처장관이 주요 의료시설 건축사업 또는 임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와 함께 미연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안에 (1) 인력소요 현황, 건축, 사업진행, 부속서비스, 장비 등에 항목별 비용상세를 포함한 의료시설 비용총액 예상치, (2) 향후 5년, 10년, 20년에 걸친 인구현황 데이터, 업무량, 영업비용에 관한 데이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H.R.2832

Latest Titl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tension Act of 2011

9/7/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0

- 2011년 무역조정지원연장법

본 법은 1974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를 개정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하에서의 면세처우를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본 법은 또한 2010년 12월 31일 후 본 법 시행한 날로부터 15일 전 미국에 들어온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85년 통합 옴니버스 예산화해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COBRA)'을 개정하여 국내 반입 물품의 처리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customs user fee)를 종가관세 1.21%에서 0.3464% 인상하기로 하였다.

■ H.R.3080

Latest Titl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10/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1

- 한미 FTA 이행법

본 법은 2011년 10월 3일 미연방의회에 제출된 2007년 6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본 협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안된 미행정부 성명을 모두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조건들이 만족됨과 동시에 2012년 1월 1일부로 본 FTA가 효력을 발함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FTA가 발효되는 날 동시에 발효되게 되는 본 법의 모든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및 연방정부의 유관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1)관련 자문위원회와 미연방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로부터 자문을 받고, (2)해당 조치에 관하여 의회 의원회에게 보고를 마쳤으며, (3)60일 경과되고, 그리고 (4) 그 60일 기간동안 관련 의회 의원회와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본 법하에서의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명령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연방상사부(Department of Commerce)내에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부서에 임무를 위임하여 FTA 분쟁조정위원회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서 규정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에 따라, FTA 관련사항으로서 미국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연방정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H.R.3078

Latest Title: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10/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2

- 미국-콜롬비아 무역촉진협정 이행법

본 법은 2006년 11월 22일 콜롬비아 정부와 체결된 미국-콜롬비아 무역촉진협정(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을 2007년 6월 28일 양측 정부와 함께 개정된 바대로 승인하고 동시에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행정부 성명을 승인하고 있다(협정과 행정부 성명은 모두 2011년 10월 3일 미의회에 제출되었음). 또한 특정 조건이 만족됨과 동시에 2012년 1월 1일 이후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본 법은 무역촉진협정이 발효되는 날 동시에 발효되게 되는 본 법의 모든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및 연방정부의 유관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1)관련 자문위원회와 미연방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로부터 자문을 받고, (2)해당 조치에 관하여 의회 의원회에게 보고를 마쳤으며, (3)60일 경과되고, 그리고 (4) 그 60일 기간동안 관련 의회 의원회와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본 법하에서의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명령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연방상사부(Department of Commerce)내에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부서에 임무를 위임하여 무역촉진협정 분쟁조정위원회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촉진협정에서 규정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에 따라, 무역촉진협정 관련사항으로서 미국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연방정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H.R.3079

Latest Title: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10/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3

- 미-파나마 무역촉진협정 이행법

본 법은 2007년 6월 28일 파나마 정부와 체결된 미국-파나마 무역촉진협정(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을 승인하고 동시에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행정부 성명을 승인하고 있다(협정과 행정부 성명은 모두 2011년 10월 3일 미의회에 제출되었음). 또한 특정 조건이 만족됨과 동시에 2012년 1월 1일 이후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본 법은 무역촉진협정이 발효되는 날 동시에 발효되게 되는 본 법의 모든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 및 연방정부의 유관부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1)관련 자문위원회와 미연방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로부터 자문을 받고, (2)해당 조치에 관하여 의회 의원회에게 보고를 마쳤으며, (3)60일 경과되고, 그리고 (4) 그 60일 기간동안 관련 의회 의원회와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본 법하에서의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대통령 명령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연방상사부(Department of Commerce)내에 부서를 신설하거나 관련부서에 임무를 위임하여 무역촉진협정 분쟁조정위원회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촉진협정에서 규정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에 따라, 무역촉진협정 관련사항으로서 미국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연방정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H.R.2944

Latest Title: United States Parole Commission Extension Act of 2011

10/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4

- 미국 가석방 위원회 연장법

본 법은 미연방 가석방 위원회를 2년 추가 연장하여 운영함. 회계연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관할권을 가진 사건의 각 유형에 관하여 이하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1) 복역자 수, (2) 위원회가 실시한 심리(hearings), 기록검토(record reviews), 전미항소위원회 심의(consideration)의 건수, (3) 심리의 형태로서 위원회가 실시한 심리건수, (4) 심의의 형식으로 위원회가 실시한 기록검토의 건수, (5) 요청된 수에 비교하여 발급되고 집행된 영장의 수, (6) 위원회의 최소결정 건수, (7) 최초 위반 건의 분배, (8) 후발 위반 건의 분배, (9) 형기간 만료시까지 복역한 복역자의 비율과 비교하여 가석방 또는 재가석방된 복역자의 비율, (10) 주된 또는 2차 심사자가 사건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 (11) 복역자가 대리인을 동반한 심리의 취소 또는 비취소의 건수 (12) 행정항소 및 이와 관련한 전미항소위원회 조치의 수, (13) 복역자에 대한 위원회의 연간 지출 등

■ H.R.489

Latest Title: To clarify the jurisdiction of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ith respect to the C.C. Crain Dam and Reservoir, and for other purposes.

10/18/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5

- C.C. Crain 댐 및 저수지(Dam and Reservoir)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관할권을 분명히 함

대략 512 에이커 규모의 애리조나 주 댐 토지(약 300 피트 높이의 댐, 연결 방수로, 댐의 저수 용덩이, 및 댐 통로로 구성됨)를 이하의 모든 형태의 법적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킨다: (1) 공유지법상의 등록, 사유화 또는 처분, (2) 광산법상의 위치, 등록 및 특허, (3) 광물과 지열 임대 또는 광물자원에 관한 모든 법령하에서의 처분 등. 본 법은 또한 내무부 장관에게 댐부지 개간위원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애리조나 주 물 해결 법(Arizona Water Settlements Act)’에 따라 크레이진 사업(Craigin Project)을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크레이진 사업(Craigin Project)이라 함은 크레이진 댐, 그 저수지, Salt 강 사업 농업 진흥,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된 개간 구조물 및 시설의 전력지구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단, 내무부 장관은 본 사업상의 모든 활동이 관련 연방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월

■ H.R.765

Latest Title: Ski Area Recreational Opportunity Enhancement Act of 2011

11/8/2011 Became Public Law No: 112-46

- 2011년 스키장 지역 레크레이션 기회증진법

본 법률은 '1986년 국립산림스키지역허가법(National Forest Ski Area Permit Act of 1986)'을 개정하여 국립산림제도(National Forest System) 부지위의 스키지역 및 관련시설 운용 허가조건과 허가면적(현행법상 북유럽식 및 알파인 스키 지역과 시설에 대한 것임)이 해당 허가에 관한 법률과 관련적용법령 규정에 의해 규제되도록 한다. 본 법률에 따라 국립산림제도 내에서 허가된 스키행위, 기타 눈 관련 스포츠, 그리고 레크레이션 용도를 위하여 적정 부지의 사용 및 점유를 위한 허가(permit)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특히 스키활동 및 기타 눈-관련 스포츠를 제외한 기타 허가된 활동 및 시설들이 (1)야외 오락활동 및 자연활동을 고취시키고, (2) 국립산림제도 부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3) 스키지역의 기개발 영역 안에 위치해야 할 것, (4) 관련 토지 및 자원관리 계획 및 유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스키지역허가(a ski area permit)하에서 허락되거나 허락되지 않는 활동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H.R.368

Latest Title: Removal Clarification Act of 2011

11/9/2011 Became Public Law No: 112-51

- 2011년 사건이송설명법

연방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추가 법원에서 개시되고 그 소송이 연방정부 또는 연방행정기관이나 공무원 기타 특정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적합한 연방 1심(U.S. district court)으로 이송되도록 연방사법규정(federal judicial code)을 개정한다. 이송되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추는 (다른 소송절차에 부속된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증인소환장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명령이 청구되거나 이루어지는 모든 소송절차를 포함하게 된다. 사건이송을 위해서는 30일 사건이송 통지요건이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건이송을 원하는 자는 소송개시 통지를 소장송달을 통하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건이송통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H.R.674

Latest Title: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repeal the imposition of 3 percent withholding on certain payments made to vendors by government entities, to modify the calculation of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eligibility for certain healthcare-related programs, and for other purposes.

11/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56

- ‘3퍼센트 원천징수 폐지 및 직장창출법’(Three Percent Withholding Repeal and Job Creation Act) 및 ‘2011년 국가공로자 고용약속법’(VOW to Hire Heroes Act of 2011)

‘3퍼센트 원천징수 폐지 및 직장창출법(Three Percent Withholding Repeal and Job Creation Act)’은 ‘1986년 연방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을 개정하여 정부기관이 상인에게 지급금액의 3퍼센트 원천징수를 하는 것(여기서 정부기관이 상인에게 3퍼센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상인이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 정부기관에게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 등이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의 3퍼센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임)을 폐지하고, 변경된 조정총과세수익(adjusted gross income)의 계산법을 수정하여 특정 건강보험관련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011년 국가공로자 고용약속법(VOW to Hire Heroes Act of 2011)’은 연방국가보훈처 장관이 2012년 7월 1일까지 최소한 35세 및 60세 이하의 제대군인의 재교육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원사업의 대상군인은 불명예 이외의 사유로 현역을 마친 후 비고용상태에 있으며, 기타 제대군인 지원사업상의 교육지원 대상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또한 현역복무와 관련된 장애로 고용불능상태에 기한 보상지급 대상자는 본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S.1280

Latest Title: Kate Puzey Peace Corps Volunteer Protection Act of 2011

11/21/2011 Became Public Law No: 112-57

- 2011년 케이트 푸제이(Kate Puzey) 평화봉사단 자원자 보호법

케이트 푸제이(Kate Puzey) 평화봉사단 자원자 보호법은 ‘평화봉사단법(Peace Corps Act)’을 개정하여 봉사단 단장(the Director of the Peace Corps)이 이하의 내용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모든 자원자에게 제시되는 훈련의 일부로서 성폭행분야에서 최선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폭행 위험감소 및 대응훈련을 발전시키고 수행하도록 한다. (2) 일단 훈련생이 봉사대상 국가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훈련생에게 해당 국가에 맞추어진 훈련(이성 관계에 관한 문화훈련, 위험감소 전략, 성폭행시 안전계획, 각 국가별 이용가능한 치료, 폭행자에 대한 법적 기소절차 정보 등을 포함)을 받도록 할 것.

봉사단 단장은 또한 (1) 각 지원자에게 지원국가에서 지원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발생가능한 범죄나 위험에 대한 연별 분석자료, (2) 자원자로서 등록하기 이전 훈련생에게 봉사단의 조사담당관(Inspector General) 연락처 정보(봉사단의 성폭력 규칙위반이나 기타 형사적 행정적 잘못의 신고를 위한) 및 성폭행 발생시 대응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서면 안내서 등을 지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봉사단장은 자원자가 봉사할 모든 해당지역에 적용가능한 성폭력 예방 최선의 조치를 담은 종합적인 성폭력예방 규칙안내서를 개발, 수행, 및 배포하여야 하고, 국가별 책임자를 규칙과 안내서 내용에 대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 H.R.3321

Latest Title: America's Cup Act of 2011
11/29/2011 Became Public Law No: 112-61
• 2011년 아메리카 컵 법

오로지 2011년 미국에서 열리는 제34회 아메리카 컵을 준비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운항하는 자격을 갖춘 경기참여 선박이나 지원 선박(competing or supporting vessels)에게만 본 법률상의 자격을 부여함. 구체적으로 이들 선박이 경기를 위하여 미국 항구 안과 주위에 위치를 잡고, 개인, 장비, 및 공급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미연방교통부의 해양국 행정관(Administrator of the Maritime Administration)으로부터 자격증명서(Eligibility Certification)를 발급받지 못한 선박은 운항이 금지됨. 또한 일정한 과태료 등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양국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명서는 1) M/V GEYSIR, (2) OCEAN VERITAS, 및 (3) LUNA 등이다. 한편, LNG 탱커선에 대한 자격인정서는 1) LNG GEMINI, (2) LNG LEO, and (3) LNG VIRGO 등이다.

■ S.1637

Latest Title: Appeal Time Clarification Act of 2011
11/29/2011 Became Public Law No: 112-62
• 2011년 이의신청기간 설명법

연방사법법(federal judicial code)상 민사소송이나 절차로서 연방정부, 연방기관, 기타 연방공무원이 소송당사자인 경우, 모든 판결, 명령 또는 선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기한 규정을 개정한다. 본 법률은 판결, 명령, 기타 선언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1) 연방정부 근로자(employee)가 직무와 관련하여(in an official capacity) 피소된 경우, 또는 (2) 현재 또는 전직 연방정부 관료(officer) 또는 근로자(employee)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한 임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개인적 차원(in an individual capacity)에서 피소된 경우, 60일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함. 본 법은 또한 연방의회의 이하의 사실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1) 60일 제한은 연방사법부(Department of Justice)가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민사소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 연방 법무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상원과 하원의 위원, 공무원, 기타 근로자를 대리하는 모든 민사소송까지 적용된다.

— 유럽연합 —

1 월

2 월

■ 32011L0007

Directive 2011/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on combating late pay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2월 16일 상거래에서 지불 지연 근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7/EU

지침 2011/7/EU는 상업 거래(민간 및 공공 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규정한다. 지침은 이미 동일한 분야를 규정했던 지침 2000/35/EC를 폐지하며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불 지연에 관한 규정을 현대화 한다. 지침은 공공 기관의 지불 기간의 조화를 위해 30일의 지불 만기일을 규정한다. 병원 및 요양원과 같은 특정 공공 기관의 경우 60일까지 지불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지침은 invoice 지불에 대한 만기일 설정과 지불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권을 규정한다. 채권자의 경우 계약 의무를 완수했을 경우 지불 독촉장이 없더라도 지불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상 지불일이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invoice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invoice 수령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 수령일로부터 30일 후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 간의 상업 거래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명시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해당 지불 조항이 불리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상의 지불 기간은 60일 이내여야 한다. 기업은 자동적으로 지불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액으로 규정된 최소액 40 €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변호사나 추심 기관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침 2011/7/EU는 2011년 3월 15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늦어도 2013년 3월 16일 까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지침 규정보다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국내 규정을 유지 또는 제정할 수 있다.

■ 32011R0193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93/2011 of 28 February 2011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445/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system of quality control used for Purchasing Power Pariti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2월 28일 동등한 구매력을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445/2007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93/2011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445/2007은 동등한 구매력에 관한 기본 정보 규정과 계산 및 파급을 위한 공동 규정을 설정하면 이를 위해 회원국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 및 가격 조사 결과의 효력의 최소 품질 수준, 보고 및 평가 조건을 규정했다. 차후 공동 품질 범주와 품질 보고 구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상기 규정에 규정된 조치는 유럽통계시스템 위원회의 의견에 준거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규정 (EU) No 193/2011은 부칙에 규정 (EC) No 1445/2007 이 규정한 동등 구매력에 관한 공동 품질 범주 및 품질 보고서의 구조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다. 규정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유럽연합의 전 회원국에 효력을 발생한다.

■ 2011R0211

Regulation (EU) No 21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on the citizens' initiative

- 2011년 2월 16일 시민 발의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211/2011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조약 (TEU)은 유럽연합 시민 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 ECI)를 도입했다. 이 시민 발의권은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해 유럽연합의 사법적 행위를 제안하도록 요청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상기 규정은 유럽연합 시민 발의에 필요한 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며, 유럽연합 시민 발의는 상기 규정에 준거해 집행위원회가 부여된 권한 내에서 유럽연합이 체결한 조약의 시행을 위해 시민들이 유럽연합의 법률 행위가 요구된다고 간주하는 사항에 대해 적합한 제안을 하도록 발의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 중 최소 4분의 1의 국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적인 자격을 가진 최소 100 만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규정은 주창자 및 서명인의 조건, 발의안의 등록 절차, 온라인상에 제공된 관련 정보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규정은 집행위원회가 발의를 거부할 수 있는 토대를 설정했다.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효력을 발생하며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집행위원회는 2015년 4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규정 적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2011R0182

Regulation (EU) No 182/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laying down the rules and general principles concerning mechanisms for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Commission's exercise of implementing powers

- 2011년 2월 16일 집행위원회의 시행 권한 사용에 대한 회원국의 감독을 위한 구조에 관한 규정과 일반 원칙 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82/2011

규정 (EU) No 182/2011 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시행 행위 채택시 유럽연합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규정은 유럽연합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위가 시행 행위에 필요한 통일 조건 요구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용되는 적용 구조를 관리하는 규정과 일반 원칙을 제정한다. 기본적으로 시행 행위는 해당 시행 행위의 성격이나 효과를 고려해 자문 절차 또는 검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시행 권한의 행사는 이미 유럽 장관 회의 결정 1999/468/EC에 종속되어 왔으나 해당 결정은 상기 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또한 규정에는 유럽 의회, 유럽 장관 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첨부되었으며, 집행위원회는 당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리스트본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규정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채택된 모든 법령의 검사를 시행할 것을 언명했다.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181

Regulation (EU) No 18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February 2011 concerning the rights of passengers in bus and coach transport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2월 16일 버스 및 코치 운송에서 승객의 권리와 규정 (EC) No 2006/2004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81/2011

규정 (EU) No 181/2011 은 유럽연합 내에서 버스로 여행하는 승객들, 특히 지체장애자나 행동 능력이 감소된 승객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국내 책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 (EC) No 2006/2004 (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 을 개정한다. 규정은 모든 국내 및 국경을 넘는 장거리(250km 이상) 여행을 대상으로 한다. 규정은 운송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 조건에 있어서 승객 간의 차별 금지, 버스 탑승 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하는 사망, 부상, 화물 손실 및 손상 시 승객의 권리(승객 당 최소 220,000 € 및 화물 당 1,200 € 배상액), 지체장애자나 행동 능력이 감소된 승객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의무적인 지원, 운행 취소나 연기의 경우 승객의 권리(스낵, 식사 및 음료수 제공과 경우에 따라서는 1일당 최고 80 € 호텔 2일 숙박권 제공),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고객 불만 처리 및 시행에 관한 일반 규정을 규정한다. 규정은 2011년 3월 20일 효력을 발생하며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 32011R017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77/2011 of 24 February 2011 temporarily suspending customs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cereals for the 2010/2011 marketing year

- 2011년 2월 24일 2010/2011 마케팅 연도를 위한 특정 곡물 수입에 관한 관세의 한시적 연기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77/2011

규정 (EU) No 177/2011 은 농업 시장의 공동 조직 설립과 특정 농산물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제정한다. 2010/2011 마케팅 연도에 국제 곡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2010년 6월부터 밀 가격이 65% 증가)에 직면해 유럽연합은 시장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원활한 곡물 수입과 유통을 위해 수입 관세 부과의 한시적인 유예를 규정한다. 수송 중인 곡물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규정이 규정하는 조치는 농업 시장 공동 기구를 위한 관리 위원회의 의견에 준거한다. 규정은 유럽연합 공보에 공표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3 월

■ 32011R0305

Regulation (EU) No 305/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laying down harmonised conditions for the marketing of construction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9/106/EEC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9일 건축재의 시장 매매를 위한 합의 조건 제정과 유럽 장관 회의 지침 89/106/EEC 폐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305/2011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건축법은 건축 행위가 개인, 애완동물, 주거기 및 환경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며, 건출 자재에 대해 국내 기준, 기술 허가 및 기타 기술적인 분류 및 규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회원국마다 상이한 상기 조건들로 인해 유럽연합 내에서의 건축 자재 판매에 혼란을 야기했다. 유럽연합 장관 회의 지침 89/106/EEC 는 건축 자재용 기준의 통일을 규정했으며 이를 위한 유럽 기술 허가를 규정했다. 즉, 기준 체계를 단순화하고 명백한 과정을 설립했으며, 기준의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했다.

규정 (EU) No 305/2011(건축 자내 규정)은 상기 지침을 대체하여 건축 자재의 특성과 관련한 통일 규정을 설정하며 상기 건축 자재들의 유럽연합 내 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규정을 설립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일부 규정은 2013년 7월 1일까지 효력 발생을 유예한다. 상기 규정은 지침 89/106/EEC 을 폐지하지만 한시적인 규정들이 2013년 7월 1일까지 상기 지침에 부합하여 관련 건축자재의 시장 판매를 허용한다.

■ 32011R028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86/2011 of 10 March 2011 amending, for the purposes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10일 기술 및 과학 발전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식별 및 포장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272/2008 의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286/2011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272/2008 (분류, 식별 및 포장 규정 또는 CLP 규정) 유럽연합 내에서 물질, 혼합물 및 특정 물품의 분류와 식별을 위한 규정과 기준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주기적으로 검토되는 국제연합의 화학 물질의 분류와 식별에 관한 세계적 통일 시스템(GHS)를 고려한다.

국제 연합은 위험물질 운송과 화학물질의 분류와 식별에 대한 세계적인 통일 시스템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UNCETDG/GHS)에서 2008년 12월에 3차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위험 물질 명세서의 분배와 소형 포장물, 호흡 및 피부 민감성을 위한 새로운 하부 범주, 해양 환경에 장기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분류 범주 개정, 오존층을 위협하는 물질과 혼합물에 관한 새로운 위험물질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은 해당 변경 규정을 고려해 기술적인 규정과 범주에 적합한 개정을 부칙에 규정한다. 덧붙여, 최소 함량임에도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첨가 조건도 명시했다. 또한 관련 기업 및 관리 당국의 규정 시행을 용이하게 하고 법령의 일관성 개선과 명확성 강화를 위해 부칙에 명시된 기술적 용어 및 특정 기술 범주도 개정되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4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물질의 경우 2012년 12월 1일, 혼합물의 경우 2015년 6월 1일 부터 규정이 적용된다.

■ 32011R0253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53/2011 of 15 March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Annex XIII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15일 부칙 XIII 과 관련해 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907/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253/2011

규정 (EC) No 1907/2006(REACH 규정)은 영구적, bio 축적적이며 독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규정한다. 규정은 유럽연합의 해당 물질 생산 기업 또는 수입업체에 대해 부칙 I의 화학물질 안전 기준 평가 규정에 준거해 해당 물질의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은 또한 해당 화학 물질의 식별을 위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규정 (EC) No 1907/2006 의 부칙 XIII 을 대체한다. 개정된 부칙 조항은 2011년 3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234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34/2011 of 10 March 2011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31/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ommon authorisation procedure for food additives, food enzymes and food flavouring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10일 식품 첨가제, 식품 효소 및 식품 향료를 위한 공동 허가 절차 설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331/2008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234/2011

규정 (EU) No 234/2011 은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331/2008 의 시행을 규정한다. 규정 (EC) No 1331/2008 은 식품 첨가제, 식품 효소 및 식품 향료에 대한 허가 절차를 설정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시장 판매가 허가된 물질 리스트 갱신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제9조는 각 식품 법령 하에서 통일 리스트 갱신을 위한 신청서의 내용, 초안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시행 조치 채택을 집행위원회에 부과하며, 신청서의 효력과 유럽 식품 안전국(EFSA)의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형태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규정한다. 상기 규정은 식품 첨가제, 식품 효소 및 향료의 신청서에 관한 평가를 위한 데이터 조건에 관련한 유럽 식품 안전국이 채택한 과학 의견서를 참조하며, 식품 첨가제와 식품 효소의 사용은 항상 기술적으로 입증 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자는 또한 해당 첨가제가 다른 경제적 및 기술적 수단으로는 취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첨가제의 사용은 허가된다. 해당 규정은 현존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을 고려한다. 집행위원회는 관련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유럽 식품 안전국에 주도하에 개정 또는 추가 과학 지침서가 발간 되었을 경우 해당 규정의 개정을 규정한다. 해당 규정은 2011년 9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22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25/2011 of 7 March 2011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77/2005 laying down implementing rules for Regulation (EC) No 27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rug precursors and for Council Regulation (EC) No 111/2005 laying down rules for the monitoring of trade between the Community and third countries in drug precursors

- 2011년 3월 7일 시약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273/2004 과 시약품 분야에서 유럽 공동체와 제 3국 간의 무역 감시를 위한 규정 제정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11/2005 을 위한 시행 규정 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1277/2005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225/2011

규정 (EC) No 1277/2005 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시약품 수출에 관한 특정 감시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해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부칙 IV 은 규정 (EC) No 111/2005 의 부칙이 규정하는 범주 2와 3에 해당되는 예정된 각 물질과 선수출 통고가 필요한 국가를 분류한다. 이 분류에는 1988년 마약과 항정신 물질의 불법 무역 방지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의 제 12(10) 조에 준거해 선 수출 통고를 취득해야 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인 제 3 국 국가들이 포함된다. 마약에 관한 국제 연합 위원회는 2010년 3월 8일 회의에서 phenylacetic 산을 상기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상기 조항은 국제 연합의 상기 조약에 포함된 물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수입국의 관련 당국이 제공한 수출 위탁에 관한 정보통고 보장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 (EC) No 1277/2005 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모든 phenylacetic 산 수출에 필요한 선 수출 통고 발송 보장에 준거해 개정되었다. 또한 규정은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레일리아, 가나를 규정 1277/2005 의 부칙 IV 의 범주 2와 3의 특정 예정 물질에 필요한 선 수출 통고가 요구되는 국가 리스트에 추가 포함한다. 상기 규정의 부칙 IV 를 대체하는 규정 (EU) No 225/2011 은 2011년 3월 2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29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297/2011 of 25 March 2011 imposing special conditions governing the import of feed and food originating in or consigned from Japan following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station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25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이어 일본산 또는 일본으로부터 발송된 식품 및 식량 수입을 관리하는 특별 조건 부과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297/2011

규정 (EU) No 297/2011은 일본산 또는 일본에 수출 위탁된 사료 및 식품에 적용된다. 2011년 3월 28일 전에 일본에서 출발한 제품과 2011년 3월 11일 전에 수확 또는 가공된 제품은 상기 규정의 적용에서 면제된다. 한편 규정 (EC) No 178/2002은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과 식품법의 안전 조건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제53조는 공공 건강, 동물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긴급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1년 3월 11일 유럽 집행위원회는 우유와 시금치와 같은 일본산 특정 식품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량이 검출되었다는 통고를 받은 후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는 일본산 식품 및 사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채택했다. 특히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상기 조치에서 명시된 식품이 유럽연합 영토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국경 검사 포스트나 입국 지정 지점에서 관련 당국에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유럽연합 시장에서 해당 식품의 자유로운 판매를 위해서 수입업자는 관련 기관의 공식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무해하다는 증명서를 신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EU) No 297/2011은 2011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매월 재조사가 가능하다.

■ 32011L0037

Commission Directive 2011/37/EU of 30 March 2011 amending Annex II to Directive 2000/5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nd-of-life vehicl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3월 30일 차령 마감 자동차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0/53/EC의 부칙 II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2011/37/EU

차령 마감 자동차에 관한 지침 2000/53/EC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재료 및 부속에 납, 수은, 카드뮴 또는 hexavalent 크롬의 사용을 금지했다. 상기 지침은 정기적으로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부응해 개정되었다. 한편, 지침은 규정된 시일 이전에 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 언급된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해당 물질 사용에 대한 지침의 적용을 면제했다. 자동차 제조에서 해당 물질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직은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 지침은 해당 물질의 사용이 필요치 않을 시기까지 지침의 적용 면제를 연장한다. 개정된 지침은 2011년 12월 31일 전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 32011L0024

Directive 2011/2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1 on the application of patients' rights in cross-border healthcare

- 2011년 3월 9일 국경을 넘은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권리 적용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회의 지침 2011/24/EU

지침 2011/24/EU 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이 거주국 외의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료 시설에서 치료 행위를 받는 개인 환자에게 적용된다. 지침의 제 15 조는 건강 기술 평가(HTA :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와 관련해 해당 기관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협력 활동 지원을 규정한다. 회원국은 2013년 10월 25일 까지 공식 회원국 언어로 표시된 국내 법안, 규정 및 행정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 168(1) 조는 모든 유럽연합의 정책 및 활동의 시행에서 고단위의 개인 건강 보호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의 건강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사회 복지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공공 이익 서비스의 부분을 차지한다. 상기 지침은 언급된 유럽연합 조약의 규정에 준거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치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회원국 간의 건강 협력 체계 촉진을 규정한다. 환자의 권리 적용을 위한 규정 (EC) No 883/2004 에 준거한 사회 복지 시스템 간의 협력에 관한 기존 체계와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한다. 지침은 조직, 시행 및 재정지원된 치료에 상관없이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에 적용되지만,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치료,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 분배 및 접근, 전염병에 대한 공공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침은 2011년 4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국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관련 국내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 32011D0167

2011/167/EU : Council Decision of 10 March 2011 authoris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crea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

- 2011/167/EU : 2011년 3월 10일 단일 특허보호 창설분야에서의 강화된 협력허가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결정

유럽조약(TEU)의 제 3(3) 항에 준거해 유럽연합은 국내 시장을 설립하고 균형된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조건의 창설은 국경을 넘는 생산과 유통 활동을 가능케 하며 생산 기업들로 하여금 추구하는 경제 목적의 획득에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에 통일된 효력을 제공하는 단일 특허는 상기 법적 조건으로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 활동에 통일된 보호를 제공한다. 유럽 특허국(EPO)이 주관하는 단일 특허를 위해서 간단하고 가격 대비 효과적인 번역 조정이 필요하다. 2010년 6월 30일 집행위원회는 유럽 특허국에 필요한 번역 조정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규정에 필요한 초안을 제출했으며 2010년 11월 유럽 장관 회의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번역 조정으로 인해 유럽 특허국의 공식 지정어 외의 언어로 특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용 언어의 번역 비용의 상환이 보장된다. 단일 특허 보호 시스템의 창설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유럽연합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통일된 특허 보호와 이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절차의 단순화를 통해 특허 보호의 단계를 상승시킨다. 단일 특허 시스템은 유럽연합의 조약과 법안에 부합해야 하며, 국내 시장 또는 경제, 사회 또는 영토적인 유대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회원국 간의 무역과 경쟁에서의 장벽이나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다. 단일 특허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참여치 않는 기타 유럽연합 회원국의 권한, 권리 및 의무를 존중한다.

■ 32011D0149

2011/149/EU : Commission Decision of 7 March 2011 on historical aviation emissions pursuant to Article 3c(4)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notified under document C(2011) 1328)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149/EU : 2011년 3월 7일 공동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쿼터 무역을 위한 체계 설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3/87/EC 의 제 3c(4)조에 준거한 항공 분야의 역사적 배기 가스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지침 2003/87/EC 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the Emissions Trading Scheme or ETS) 체계를 규정 한다. 지침 제 3c 조는 항공사에 배당된 가스 배출 총 허가량을 규정한다. 해당 양은 특정 항공 활동을 이행한 항공기로부터 배출된 축적 가스량(2004, 2005 및 2006 년의 연간 배출 가스 평균량)의 퍼센트로 결정한다. 상기 결정은 기록된 항공 가스 배출량으로 이산화탄소 (CO₂) 219,476,343 톤으로 결정한다.

4 월

■ 32011R042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20/2011 of 29 April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setting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stuff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4월 29일 식품의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 기준 설정에 관한 규정 (EC) No 1881/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420/2011

규정(EU) No 420/2011 은 식품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의 최대 기준을 설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을 이행 한다. 갑각류인 게에 카드뮴 최대 기준 비교 분석, 조개류에 적용되는 최대 오염물질 기준은 기타 오염물질(납, 수은, 디옥신과 PCBs 및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의 경우 최대 기준의 수정, 녹색 흙합과 굴과 같은 쌍각류 조개에는 해초 가 포함하는 카드뮴의 양과 비슷한 양이 잔류할 수 있다는 사실의 고려, 잎이 달린 채소인 유채류에 적용되는 규정의 조정, 해초에 잔류하는 납과 카드뮴 기준에 대해 더 현실적인 최대 기준을 설정, ethylcarbamate, perfluoroalkylated 물질 및 acrylamide에 대한 최근 감독 권고안을 참고 등의 개정 내용을 수록한다. 또한 규정 1881/2006 이 식품 및 동식물 원료의 식재료에 포함된 살충제의 최대 잔류 기준에 관한 규정 (EC) No 396/2005 에서 열거한 제품 그룹을 언급한 이후, 열거된 제품명도 해당 규정에 규정된다. 규정 (EU) No 420/2011 은 2011년 5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L0038

Commission Implementing Directive 2011/38/EU of 11 April 2011 amending Annex V to Directive 2004/33/EC with regards to maximum pH values for platelets concentrates at the end of the shelf life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4월 11일 저장 기간이 종료된 밀집 혈소판용 최대 pH 가치에 관한 지침 2004/33/EC 의 부칙 V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지침 2011/38/EU

인간 혈액과 혈액 성분의 수집, 검사, 처리, 저장 및 배급을 위한 질과 안전 기준은 지침 2002/98/EC 이 규정한다. 상기 지침의 시행 규정인 지침 2004/33/EC 의 부칙 V 는 혈액과 혈액 성분을 위한 기술적 조건으로서 혈액 저장 기간의 종료에 따른 혈소판을 위해 최저 6.4, 최대 7.4 pH 기준을 규정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혈소판은 폐기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pH 7.4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저장된 혈소판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밀집 혈소판을 위한 최대 pH 기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지침 2011/38/EU 은 지침 2004/33/EC 의 부칙 V 를 개정해 최대 pH 기준 조건을 폐지한다. 지침은 2011년 4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국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를 시행해야 한다.

■ 32011L0035

Directive 2011/3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concerning mergers of 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4월 5일 유한 공공 유한 기업 합병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35/EU

지침 2011/35/EU 는 기업 인수, 신기업 설립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공공 유한 기업의 합병을 규정하며 1978년 10월 9일 제정된 유럽 장관 회의 제3차 지침 78/855/EEC 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지침은 합병 기업의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 유한기업의 합병에 관한 지침 78/855/EEC 는 7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지침 2011/35/EU 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폐지된다. 지침 78/855/EEC 는 새로운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련 기업에도 적용범위를 확장했으며, 2009년 9월 16일의 마지막 개정안은 기업의 합병이나 양도의 경우 보고서 및 자료에 관한 의무를 강화했다. 지침 2011/35/EU 은 지침 78/855/EU 의 대부분의 내용을 계승했는데, 적용 범위, 하나 또는 다수의 기업에 의한 기업의 흡수에 의한 합병 또는 신기업 설립에 의한 합병, 90% 이상의 주식 인수를 통한 합병, 기타 합병과 유사한 형태의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지침 2011/35/EU 은 2011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지침 78/855/EU는 동일부로 폐지된다.

■ 32011L0036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s,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2/629/JHA

- 2011년 4월 5일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박멸하며 피해자 보호 및 유럽 장관 회의 구조 결정 2002/629/JHA 대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36/EU

지침 2011/36/EU는 인신매매를 반대하는 유럽연합의 외부 활동 강화에 관한 “활동-방향 문서”에서 명시된 제3국을 포함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범세계적인 활동의 일부이다. 지침은 인신매매의 범죄성과 이에 대한 제재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포함한다. 또한 공동규정으로서 상기 범죄와 희생자 발생의 예방도 규정한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규정된 범죄 행위의 처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강제력, 납치, 사기, 허위, 권력남용 기타 형태의 강압, 대상인의 약점 이용, 지불 또는 대상인에 대한 이익 제공에 의한 인간의 모집, 운송, 선적 및 수령, 해당 인간의 교환 및 감독이 이에 해당된다. 회원국은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상기 지침은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결정 2002/629/JHA의 규정을 개정 및 확장한다. 지침은 2011년 4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국은 2013년 4월 6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 32011D0229

2011/229/EU : Commission Decision of 4 April 2011 concerning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interoperability relating to the subsystem 'rolling stock – noise' of the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notified under document C(2011) 658)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229/EU : 2011년 4월 4일 통상적인 범유럽 철도 시스템의 하부 시스템 ‘차량-소음’에 관련해 상호 운용성의 기술적 명세서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881/2004의 제12조는 유럽 철도국이 상호 운용성의 기술적 특성이 기술적 진보, 시장 트렌드, 사회적 요구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집행위원회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정 2011/229/EU에 의해 집행위원회는 관련 철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되지 않은 철도에 대한 검사를 허가하는 동시에 장래 상호 운용성 검사를 위한 비교 데이터의 수집과 등록을 보장하며 소량의 차량의 기준 준수 검사 비용 감축 및 ISO EN 3095 기준에 부합하는 최근 개발안을 포함한다. 소음 제한과 소음 범위에 대한 규정의 변화없이 결정은 단지 차량에 관한 전통적인 철도 상호 운용성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제한한다.

결정은 결정 2006/66/EC를 대체하지만, 신차량 프로젝트, 기존 차량의 개선 또는 향상 또는 현 결정이 고지되는 시기에 체결이 확실시 되는 계약이 진행중인 경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상호 운용성에 부합해 허가된 프로젝트의 유지에 관해 적용되던 규정의 효력은 지속된다.

■ 32011D0264

2011/264/EU : Commission Decision of 28 April 2011 on establishing the ecological criteria for the award of the EU Ecolabel for laundry detergents (notified under document C(2011) 2815)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264/EU : 2011년 4월 28일 세탁기 세제에 유럽연합 Ecolabel 수상을 위한 환경 범주 설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규정 (EC) No 66/2010 은 특정 유럽연합의 제품 그룹에 따른 특정 Ecolabel의 범주를 설정하며 해당 Ecolabel 이 해당 제품의 사용 기간동안 환경에 감소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부여된다고 규정한다. 집행위원회 결정 1999/476/EC 는 세탁기 세제를 위한 환경 표준과 관련 벌금 및 검증 조건을 설정한다. 상기 표준의 검사에 따라, 집행위원회 결정 2003/200/EC 는 2011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검사 표준을 설정했다. 상기 표준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재검토되어 결정 2011/264/EU 는 신 하부 제품 그룹을 포함하고 신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제품 그룹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다. 상기 신 표준과 관련 벌금 및 검증 조건은 새로운 결정의 채택일인 2011년 4월 28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현재 폐지된 결정 2003/200/EC 에 의해 규정된 표준에 부합한다고 표기된 제품을 기준으로 Ecolabel 이 부여되는 반면, Ecolabel 은 신 결정의 채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용될 수 있다.

5 월

■ 32011R044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440/2011 of 6 May 2011 on the authorisation and refusal of authorisation of certain health claims made on foods and referring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5월 6일 식품과 아동 개발에 관련해 주장되는 특정 건강상품 허가의 인정과 거부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440/2011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924/2006 은 허가를 받은 식품 건강 주장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상기 규정에 준거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허가하지 않은 식품에 관한 건강 주장을 금지한다. 식품의 건강 주장 허가 신청은 식품 사업자가 회원국의 국내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유럽 식품 안전국(EFSA)에 의견 확보를 위해 유효한 신청을 전송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규정은 아동 발전과 건강에 필수적인 지방산을 언급한 식품 건강 주장에 관한 신청을 기록한다. 상기 규정에 기록된 신청은 Mead Johnson & Company 와 Merck Selbstmedikation GmbH 사가 제출했다. 그 중 세 건의 주장은 거부되었으며 규정의 부칙 II 에 기록되었다. 2011년 5월 27일 규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해당 식품은 6 개월 간 건강 주장을 유지할 수 있다. 상기 세 건의 식품은 Docosahexaenoic 산(DHA) 과 관련되어 허가되었으며 부칙 I 에 기록된다.

■ 32011R0510

Regulation (EU) No 510/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1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light commercial vehicles as part of the Union'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e CO₂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5월 11일 소형차의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유럽연합 통합 접근방식의 일환으로서 신 경차용 배출가스 기준 설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510/2011

2007년 3월 유럽 장관 회의는 유럽 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 까지 1990년도 배출량의 최소 20%를 감축하고 만약 다른 선진국이 동량의 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경제적 선진국들이 각각의 능력에 따른 노력을 한다면 30%의 배기 가스 감축을 선언했다. 필요한 가스 감축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경제 부문에서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을 총족하기 위한 각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관한 결정 406/2009/EC는 유럽연합 배출 가스 무역 제도(ETS)가 담당하지 않는 분야에서 2005년 기준의 평균 10% 감축을 규정한다. 경상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도로 운송은 유럽연합에서 온실가스 배출 분야에서 2 위를 차지하며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상기 규정은 자동차 기술과 혁신적 기술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경상업용 자동차를 위한 CO₂ 배출 성능 조건을 평균 CO₂ 배출량을 175g CO₂/km으로 규정한다. 2020년부터 유럽연합내에서 등록되는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규정은 147g CO₂/km 조건을 목표로 한다.

규정은 2011년 6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총량 2610 kg을 초과하지 않는 N1급 자동차와 규정 (EC) No 715/2007 (경상업용 자동차) 제 2(2) 조에 준거해 유럽연합 내에서 처음으로 등록되고 유럽연합 외에서도 이미 등록되지 않은 N1급 자동차에 적용된다.

■ 32011R0513

Regulation (EU) No 513/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060/2009 on credit rating agenci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5월 11일 신용평가 기관에 관한 규정 (EC) No 1060/2009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513/2011

상기 규정은 경기적인 신용 평가를 시행하는 등록된 신용 평가 기관의 등록과 진행 중인 감독에 관련해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060/2009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화된 관리 기술 기준을 설정하고 유럽연합의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고도로 전문화된 평가기관으로서 유럽 감독원(유럽 증권 및 시장 감독원 : ESMA)이 기술적인 조정 기준의 초안을 담당한다.

상기 기관은 등록 신청시 신용 평가 기관의 정보 제공, 평가 기관이 재정 안정 또는 건전한 금융 시장의 보증과 주요 평가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규정 1060/2009 이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신용 평가 방법에 대해 평가 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보고서의 구조, 형식,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정보, ESMA가 진행하는 감독을 위해 평가 기관에 요구되는 주기적 평가 데이터 보고의 내용 및 형식과 같은 기준에 관한 유럽 감독원의 초안이 집행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평가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ESMA는 단순 요청이나 결정을 통해 신용 평가 기관, 평가 작업에 종사하는 개인, 평가된 기관과 관련된 제3자, 신용 평가 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제3자 및 신용 평가 기관 또는 평가 행위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타 인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32011R0511

Regulation (EU) No 51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1 implementing the bilateral safeguard claus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2011년 유럽연합 및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상호 긴급 수입 제한조치 조항 시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규정 (EU) No 511/2011

상기 규정은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자유 무역 협정에 규정한 상호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항의 적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규정은 특정 제품의 유럽연합으로의 수입이 증가되어 유럽연합의 생산자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쟁 제품에 심각한 손해나 위협을 야기할 경우, 상기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심각한 손해’란 유럽연합의 생산자의 입장에서 주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심각한 손해 위협’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주장, 추측 또는 먼 장래의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은 진정한 사실에 기초해 심각한 손해의 임박이 명백할 경우를 의미한다. 2년 간에 걸친 협상 끝에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2010년 10월 1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은 농산품과 산업 제품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유럽의 생산자에게 연간 16 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 32011L0051

Directive 2011/5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11 amending Council Directive 2003/109/EC to extend its scope to beneficiarie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5월 11일 국제 보호 혜택자의 범위 확장을 위한 유럽 장관회의 지침 003/109/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11/51/EU

장기 체류자인 제3국 국민의 지위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3/109/EC는 국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제3국 국민이나 피난민인 무국적자 또는 기타 개인의 자격과 지위를 위한 최소 기준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4/83/EC 이 규정하는 국제 보호 혜택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후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장기 체류 지위 획득 가능성은 국제 보호 혜택자가 회원국에 완전히 융합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상기 지침은 국제 보호 혜택자가 국제 보호를 부여한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 2003/109/EC는 국제 보호 혜택자의 장기 체류 획득 조건을 규정하고 장기 체류 지위를 획득한 모든 제3국 국민에게 적용되었던 동일한 조건을 국제 보호 혜택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는 상기 지침의 채택에 참여치 않으며 상기 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 외 회원국은 2013년 5월 20일까지 국내법 조항에 상기 지침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 32011D0308

2011/308/EU : Council Decision of 19 May 2011 on guidelines for the employment policies of the Member States

- 2011/308/EU : 2011년 5월 19일 유럽연합 회원국의 고용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유럽장관회의 결정

결정 2010/707/EU 의 부칙에 규정된 회원국의 고용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11년도에 유지되며, 회원국의 고용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국내 개혁 프로그램 결정과 개혁 시행에 관해 정확한 유도를 제공하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 간의 상호 의존성을 반영한다.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우선권을 두는데 : 고용 시장 참여 증대, 구조적인 실업 감축, 고용 시장의 필요에 호응하는 숙련 노동자 양성, 직업의 질 및 평생 교육 향상, 모든 수준에서 교육과 직업 훈련 시스템의 효율 개선, 3 차 교육에의 참여 증가, 사회 참여 증가 및 빈곤 퇴치 노력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회원국은 고용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해 유럽 사회 기금 (ESF) 을 사용해야 한다. 2014년 말까지 상기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엄격한 제한 하에 지속되어야 한다.

6 월

■ 32011R056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566/2011 of 8 June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715/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92/2008 as regards access to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information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8일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정보접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 장관회의 규정 (EC) No 715/2007 과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692/2008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566/2011

경상용차(Euro 5 and Euro 6)가 배출하는 배기 가스에 관한 자동차 형식 승인과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정보 접근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715/2007 은 배기 가스에 관련된 자동차 및 교환 부품의 형식 승인에 필요한 공동 기술 조건을 규정하며 운행 일치성, 공해 통제 장비의 항구성, 운행 진단 시스템, 연료 소비 측정 및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정보 접근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상기 규정 (EC) No 715/2007 을 시행, 개정한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692/2008 은 집행위원회가 경상용차가 배출하는 입자의 양과 수치 측정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절차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상기 두 규정은 자동차의 주간 운행 중에 발생하는 공해 물질과 이산화 탄소 배출, 디젤 입자 여과 장치 감시, 위조 방지 배기 가스 감독 컴퓨터 보호, 규정 715/2007 의 제 6 조가 규정한 작업 유닛의 정화 및 규정 715/2007 과 692/2008 에 상응하는 국제 연합 유럽 위원회의 관련 규정 인정을 포함하는 변화를 고려해 개정되었다. 규정 (EU) No 566/2011 은 2011년 6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유럽 기준화 위원회(CEN)가 자동차 제조사와 독립 사업사 간의 자동차 부품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공동 체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한다.

■ 32011R0559

Commission Regulation (EU) No 559/2011 of 7 June 2011 amending Annexes II and III to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maximum residue levels for captan, carbendazim, cyromazine, ethephon, fenamiphos, thiophanate-methyl, triasulfuron and triticonazole in or on certain product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7일 특정 제품에 captan, carbendazim, cyromazine, ethephon, fenamiphos, thiophanate-methyl, triasulfuron 및 triticonazole의 최대 잔류 기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396/2005의 부칙 II 와 III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559/2011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규정 (EC) No 396/2005는 식물 및 동물 원료 식품 및 사료에 잔류하는 살충제의 최고 잔류치를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부칙 II 와 부칙 III 의 Part B 는 captan, carbendazim, cyromazine, ethephon, fenamiphos, thiophanate-methyl, triasulfuron 및 triticonazole의 최대 잔류치를 규정한다. 유럽연합의 무역 파트너는 국제 무역 기구를 통해 상기 규정이 규정한 새로운 잔류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원국과 관련 당사자 국가들이 개정된 최대 잔류치 적용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상기 규정의 부칙 II 와 부칙 III 의 Part B 는 규정 (EU) No 559/2011에 의해 개정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32011R055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550/2011 of 7 June 2011 on determining,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ertain restrictions applicable to the use of international credits from projects involving industrial gase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7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3/87/EC에 준거해 산업용 배기 가스를 포함하는 계획으로부터 국제 대출 사용에 적용 가능한 특정 제한 규정 결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550/2011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3/87/EC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무역 시스템을 규정한다. 상기 지침 제11a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아디핀산으로부터 배출되는 trifluoromethane (HFC-23) 와 nitrous oxide (N₂O) 를 파괴하는 산업 계획에 대한 국제 대출을 금지한다. 단 2012년도에 발생한 유럽연합 배출가스 무역 제도에서 사용되는 배출 가스를 이용하는 동일한 형태의 계획이 2013년 전에 배출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제 대출이 2013년 4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2012년에 발생한 준수 의무에 필요한 산업용 가스 대출은 규정 (EU) No 550/2011의 적용에서 제외되면 해당 규정은 2011년 6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53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537/2011 of 1 June 2011 on the mechanism for the allocation of quantities of controlled substances allowed for laboratory and analytical uses in the Union under Regulation (EC) No 100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2011년 6월 1일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005/2009에 준거해 유럽연합 내에서 연구소와 분석을 위해 허용된 관리 물질량 분배를 위한 체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537/2011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005/2009은 연구소 및 분석을 위해 허용된 감독 하의 물질의 분배 제도는 개인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허가된 면허에 의해 연간 허용량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연구 및 분석용을 위해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허가된 감독 하의 물질의 산정된 기준의 연간 평균치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된 연간 총량은 110 오존 감소 가능(ODP) 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분배 제도는 새로운 쿼터량을 요구하는 모든 사업에 적합한 할당량을 분배해야 한다. 규정 (EU) No 537/2011의 부칙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연구 및 분석용 감독 하 물질 쿼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적합한 분배 제도를 규정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상기 분배 제도를 시행한다.

■ 32011L0065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8일 전자 및 전기 기기 내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금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65/EU

전자 및 전기 기기 내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금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2/95/EU에 다수의 실질적인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지침 2011/65/EU에 의한 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전자 및 전기 기기 내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금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65/EU은 인간 건강과 건전한 환경 회복 및 전기, 전자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하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위험 물질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회원국은 시장 판매되는 케이블 및 수리, 재생, 기능 개선에 필요한 부품을 포함하는 전기 및 전자 기기에 지침의 부칙 II이 열거한 위험 물질인 납,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및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가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결정 2005/618/EC, 2005/717/EC, 2005/747/EC, 2006/310/EC, 2006/690/EC, 2006/691/EC, 2006/692/EC, 2008/385/EC, 2009/428/EC, 2009/443/EC, 2010/122/EU 및 2010/571/EU와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8/35/EC에 의해 개정되었던 지침 2002/95/EC는 2013년 1월 3일부터 폐지되며 상기 지침 2011/65/EU 이 대체한다.

■ 32011L0063

Commission Directive 2011/63/EU of 1 June 2011 amending, for the purpose of its 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 Directive 98/7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 2011년 6월 1일 석유와 디젤 연료의 질에 관련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98/70/EC 를 기술 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2011/63/EU

석유와 디젤 연료의 질에 관련한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98/70/EC 는 시장 판매되는 석유 및 디젤 연료에 대한 분석 방법 및 환경 내역을 규정한다. 상기 분석 방법은 유럽 기준화 위원회 (CEN) 가 설정한 특정 기준을 참고한다. 최근, 유럽 기준화 위원회가 기술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침 98/70/EC 의 부칙 I 과 II 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개정된 지침 2011/63/EU 은 또한 상기 지침의 부칙 III 의 개정을 고려해 석유를 포함하는 바이오에탄올에 허용된 증기 압력 웨이버를 명기한다. 회원국은 2012년 6월 2일까지 지침 2011/63/EU 규정을 국내법에 시행해야 한다.

■ 32011L0062

Directive 2011/6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s regards the prevention of the entry into the legal supply chain of falsified medicinal product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8일 위조 제조된 의약품의 합법적 공급망 가입 방지에 관련해 인간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공동체 법에 관한 지침 2001/83/EC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62/EU

유럽의회 및 유럽장관회의 지침 2001/83/EC 는 유럽연합 내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 시장 판매 및 도매 판매와 활성 물질에 관해 규정한다. 상기 지침을 개정한 지침 2011/62/EU 는 일체성, 역사 및 공급자를 위조한 의약품이 시장에 판매되는 현상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되었다. 하부-구조 또는 위조된 원료를 함유하는 상기 의약품을 불법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공급망을 통해 유통되어 왔다. “위조된 의약품”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개정 추가되었으며 장래에 의약품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의약품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조건이 강화되었다. 공공 건강 보호의 최고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자는 적합한 선의의 제조 절차를 바탕으로 의약품 결합제가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개정 지침 2011/62/EU 는 의약품 국내 시장의 순기능을 보장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제공한다. 의약품 제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기 지침은 회원국의 관할 기관의 검사를 규정한 유럽연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매 유통업자의 리스트를 제공하며, 유럽연합 차원으로 설정된 데이터 베이스를 공표한다. 회원국은 2013년 1월 2일까지 해당 지침의 규정을 국내법에 시행해야 한다.

■ 32011L0061

Directive 2011/6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and amending Directives 2003/41/EC and 2009/65/EC and Regulations (EC) No 1060/2009 and (EU) No 1095/2010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6월 8일 대체 투자 펀드 매니저와 지침 2003/41/EC 및 2009/65/EC 와 규정 (EC) No 1060/2009 및 (EU) No 1095/2010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61/EU

대체투자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유럽연합 내에서 투자된 자산 관리, 재무 시장에서의 거래에 책임을 지며, 투자한 시장 및 기업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침 2011/61/EU는 대체투자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위한 국내 시장과 유럽연합 또는 제3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개설한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모든 펀드 매니저의 활동에 엄격한 공동 감독 체제를 규정한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대체투자펀드의 투자 방식이 개방형 또는 폐쇄형이냐에 관계없이 일정한 투자 정책에 따라 이익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증식하는 정규 투자 사업으로서의 대체투자펀드 관리 기구에 제한한다.

상기 지침은 국내 차원에서 감독되는 대체투자펀드를 규정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대체투자펀드를 관리하는 대체투자펀드 펀드 매니저의 허가, 투자 활동 및 투명성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회원국은 2013년 6월 22일 전까지 국내법에 상기 지침의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 32011R0666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66/2011 of 11 July 2011 refusing to authorise certain health claims made on foods, other than those referring to the reduction of disease risk and to children's development and health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7월 11일 질병 감소와 아동 개발 및 건강에 대한 언급을 제외한 식품에 관한 특정 건강 주장 허가 거부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66/2011

규정 (EC) No 1924/2006 은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주장에 대해 규정한다. 상기 규정에 준거해, 식품에 대한 건강 주장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되며 허가된 주장이 목록에 열거된다.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66/2011 은 두 제품에 대한 건강 주장을 하는 제조업자에게 적용된다. Synbiotec S.r.l. 은 'Synbio 가 자연적인 정기적 장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인간 장의 웰빙을 유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MILTE ITALIA SpA 는 '수유 기간동안 생리학적 인 모유 생산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상기 주장에 대한 검사 후 주장의 인증을 거부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66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65/2011 of 11 July 2011 on the authorisation and refusal of authorisation of certain health claims made on foods and referring to the reduction of disease risk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7월 11일 식품에 대한 특정 건강 주장과 질병 위험 감소에 대한 언급의 허가 및 허가 거부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65/2011

규정 (EC) No 1924/2006 은 식품에 대한 영양 및 건강 주장에 대해 규정한다. 상기 규정에 준거해, 식품에 대한 건강 주장은 유럽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되며 허가된 주장이 목록에 열거된다.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65/2011 은 특정 제품이 질병의 위험을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상기 규정은 Wrigley GmbH 가 '치아 충치의 위험을 감소하는 치아 에나멜에 미네랄을 재공급해주고 치태산을 중화시키는 무설탕 검'이라는 두가지 건강 주장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이 두 주장은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상기 규정은 GP International Holding BV 의 '미크로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만성 정맥 기능부전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OPC Plus' 라는 주장을 금지한다. 본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0664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64/2011 of 11 July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hipments of waste to include certain mixtures of wastes in Annex IIIA thereto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7월 11일 부칙 IIIA 에 특정 폐기물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폐기물의 선적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013/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64/2011

규정 (EC) No 1013/2006 은 폐기물 원산지, 목적지, 선적 운송로, 선적된 폐기물의 형태 및 목적지에서 폐기물에 적용되는 처리 형태에 따른 폐기물 선적을 위한 절차와 감독 제도를 설정한다. 상기 제도는 유럽연합내에서 또는 제3국을 통한 운송, 제3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의 수입, 유럽연합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수출, 유럽연합을 통하는 운송의 경우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의 폐기물 선적에 적용된다. 다수의 회원국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상기 규정은 규정 664/2011 의 부칙 IIIA 를 개정해 위험 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운송 감독에 관한 바젤 협약이 분류한 폐기물을 추가한다. 개정된 규정 664/2011 은 2011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OECD 의 결정 C(2001) 107/Final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폐기물 수출의 경우, 상기 규정의 부칙 IIIA 조의 3 항이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8 월

■ 32011D0502

2011/502/EU : Commission Decision of 10 August 2011 on setting up the Group of Experts on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repealing Decision 2007/675/EC

- 2011/502/EU : 2011년 8월 10일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 구성과 결정 2007/675/EC 폐지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상기 결정은 인신매매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정을 규정한다. 결정이 규정한 전문가 그룹의 임무는 인신매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자문 의견 제공, 기고문을 통한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 국내, 유럽연합 및 국제 차원에서 집행위원회의 반 인간 무역 정책 결정 지원, 인신매매에 관한 토론회 및 포럼 개최 및 획득한 경험 교환이다. 그룹은 연임이 가능한 4년 임기의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기 결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결정 2007/675/EC 을 폐지한다.

9 월

■ 32011R0954

Regulation (EU) No 954/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2006/2004 o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consumer protection law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9월 14일 소비자 보호법 강화를 위한 국내 책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규정 (EC) No 2006/2004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954/2011

규정 (EC) No 2006/2004 는 소비자 이익 보호법의 시행 책임 기관으로 지정된 회원국의 관할 기관의 주도하에 관련 법과의 부합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의 협력 조건을 규정한다. 상기 규정의 효력 발생 이후, 부칙에 열거된 다수의 입법안이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법안이 채택되었다. 부칙은 이에 따라 개정되었다.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014년 말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추가 법안을 부칙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의해 새로이 부칙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오도된 내용과 비교 광고에 관한 지침 2006/114/EC, 소비자를 위한 대출 계약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8/48/EC,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0/13/EU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 및 시간표, 장기 휴가 제품, 재판매 및 교환 계약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8/122/EC 이다.

■ 32011L0075

Commission Directive 2011/75/EU of 2 September 2011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98/EC on marine equipment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9월 2일 해양 장비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지침 96/98/EC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2011/75/EU

해양 장비에 관한 지침 96/98/EC에 최근 개정 후에 국제 조약과 적용 가능한 시험 표준에 대수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다. 동 기간에 국제 해양 기구 (IMO) 와 유럽 표준화 기구 또한 상기 지침의 부칙 A.2에 열거되었거나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상기 지침의 목적에 부응한다고 간주되는 다 수의 장비를 위한 세부 시험 표준을 포함하는 표준들을 채택한다. 따라서 부칙 A.1에 포함되거나 또는 부칙 A.2에서 A.1으로 이전된 장비들은 변화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상기 지침의 부칙에 의해 대체된다. 회원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간 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한 형태-허가를 위한 절차에 부합하여 2012년 10월 5일 전에 제조된 A.1에 열거되고 A.2로부터 이전된 장비의 시장 판매는 가능하며 2014년 10월 5일까지 공동체 소속의 선박에 장치 사용될 수 있다. 회원국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상기 지침의 개정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 32011D0940

Decision No 940/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11 on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9월 14일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유럽 연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결정 No 940/2011/EU

상기 결정은 2012년을 “활동적 노화와 세대 간의 연대를 위한 유럽 연도”로 지정한다. 상기 유럽 연도의 목적은 모든 연령 층을 위한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에서의 활동적인 노화 문화 창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유럽 연도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내 지방 기관, 사회적 파트너, 민간 회사 및 중소 기업을 포함하는 사업 공동체에 활동적인 노화를 독려하고 50대를 넘어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 층의 가능성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성과 성별 간의 평등을 감안한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활동적인 노화를 독려함은 더 나은 기회를 창설하는 것으로 노년의 여성과 남성이 고용 시장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음으로 특히 여성, 사회적 배제인의 빈곤을 타파하고 가족 생활과 사회에서의 해당 연령 층의 활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존엄에 근거한 건강한 노화를 격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근로 조건 채택, 연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연령에 따른 차별 철폐,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개선, 노년 근로 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종신 교육 시스템 채택, 사회 보장 시스템 보장 및 정당한 보수 정착이 필요하다. 유럽 연도에의 참여는 모든 회원국, 예비 회원국, 서발칸 국가 및 아이스랜드, 리히텐슈타인과 노르웨이(유럽 경제 지역의 일부인 유럽 자유 무역 협회 회원국)에 개방된다. 배정된 예산은 500만 유로이며 상기 결정은 2011년 9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D0636

2011/636/EU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of 21 September 2011 determining the date from which the Visa Information System (VIS) is to start operations in a first region

- 2011/636/EU : 2011년 9월 21일 비자 정보 시스템 (VIS) 이 첫번째 지역에서 시행되는 일시 결정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시행 결정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767/2008 (the VIS Regulation) 은 비자 정보 시스템(VIS) 과 단기 체류 비자에 관한 회원국 간의 정보 교환을 규정한다. 상기 결정은 집행위원회가 VIS 의 활동 개시일을 2011년 10월 11일로 선택한 것을 허가한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상기 결정 및 적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는 본 결정의 시행에 구속된다. 첫번째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알제리, 에집트,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및 튜니지이다

10 월

■ 32011R108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87/2011 of 27 Octo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U) No 185/2010 laying down detaile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on basic standards on aviation security in respect of explosive detection system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0월 27일 폭발물 탐지 시스템에 관련한 항공 안전에 관한 공동 기본 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 제정에 관한 규정 (EU) No 185/2010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087/2011

항공 안전에 관한 공동 기본 기준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제정한 규정 (EU) No 185/2010 는 폭발물 탐지 시스템을 규정한다. 하지만, 폭발물 탐지 방법 및 기술은 계속 발전을 거듭해 왔다. 민간 항공에 대한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위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및 운용 방법도 유럽 연합을 비롯한 세계적인 수준에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기술 및 운용 방법의 발전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폭발물 탐지 시스템에 관한 기술적 측면 및 운용 방법을 규정한 법체제의 정비를 시행한다. 폭발물 탐지 시스템의 기준 엄수를 규정한 규정 185/2010 의 부칙은 규정 (EU) No 1087/2011 의 부칙에 부합해 개정되며 상기 신 규정은 2011년 11월 18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03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34/2011 of 17 October 2011 on safety oversight in air traffic management and air navigation services and amending Regulation (EU) No 691/2010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0월 17일 항공 교통 운영에서의 안전 감독과 항공 관제 서비스와 규정 (EU) No 691/2010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034/2011

규정 (EU) No 1034/2011은 항공 관제 서비스, 항공 교통 유동 관리(ATFM) 및 일반 항공 교통을 위한 영공 관리(ASM)와 기타 기능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관할 기관이 행사하는 안전 감시 행사에 적용되는 조건을 규정한다. 상기 규정은 관할 기관 및 항공 관제 서비스, 항공 교통 유동 관리(ATFM) 및 일반 항공 교통을 위한 영공 관리(ASM)와 기타 기능 네트워크의 안전 감시 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의 활동에 적용된다. 관할 기관은 효과적이며 밀접한 감시에 적합한 상기 규정의 안전감시 접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관할 기관의 연간 안전 감시 보고서는 안전감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는 집행위원회, 유럽 항공 안전국 및 지정된 회원국 또는 관할 기관을 창설한 회원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공 관제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능을 위한 실행 체계를 규정하고 규정 (EC) No 2096/2005을 개정하는 집행 위원회 규정 (EU) No 691/2010은 상기 규정을 위해 개정된다. 항공 교통 관리의 안전 감시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1315/2007은 폐지된다. 규정(EU) No 1034/2011은 2011년 1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077

Regulation (EU) No 1077/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establishing a European Agency for the operational management of large-scale IT systems in the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 2011년 10월 25일 자유, 안전 및 정의 분야의 대규모 IT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유럽 기구 창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077/2011

상기 규정은 자유, 안전 및 정의 분야의 대규모 IT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유럽 기구 창설을 목적으로 한다. 에스토니아 탈린에 주재하는 해당 기구는 2 세대 웹엔 정보 시스템(SIS II), 비자 정보 시스템(VIS) 및 Eurodac 지문 자료의 운영 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자유, 안전 및 정의에 관한 기타 대규모 IT 시스템의 준비, 개발 및 운영 관리를 담당한다. 규정은 기구의 책임, 구조 및 조직, 예산 및 기타 규정으로 구성된 세부 규정을 설정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11월 2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해당 기구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 32011L0082

Directive 2011/82/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exchange of information on road safety related traffic offences

- 2011년 10월 25일 교통 위반에 관련한 도로 안전에 관한 국경을 넘는 정보 교환 용이화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82/EU

상기 지침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차량이 다른 회원국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교통 위반과 관련한 도로 안전에 관한 국경을 넘는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모든 운전자에 최고의 보호와 징벌 강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속도 위반, 안전 벨트 미착용, 빨간불에서 정지 신호 무시, 음주 운전, 마약 흡입 상태에서의 운전, 안전 헬멧 비착용, 금지 차선 주행, 운전 중 휴대폰이나 기타 통신 장비 이용의 불법 행위를 규제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회원국은 차량 소유자 또는 교통 안전 위반이 의심되는 당사자에게 국내법에 준거한 규제 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회원국은 2013년 11월 7일까지 상기 지침을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덴마크, 아일랜드 및 영국은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배제한다.

■ 32011D1105

Decision No 1105/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list of travel documents which entitle the holder to cross the external borders and which may be endorsed with a visa and on setting up a mechanism for establishing this list

- 2011년 10월 25일 소지자의 외부 국경 통과를 인정하고 비자 발급을 요하는 여행 문서 리스트와 리스트 작성을 위한 제도 설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결정 No 1105/2011/EU

결정 No 1105/2011/EU은 소지자의 외부 국경 통과를 인정하고 비자 발급(여행 문서 리스트)과 상기 비자 신청 제도를 요하는 여행 문서 리스트를 설정한다. 상기 결정은 여행 문서를 국내 여권(보통, 외교관, 서비스/공공 또는 특별 여권), 긴급 여행 문서, 난민 또는 무국적자의 여행 문서, 국제 기구 여행 문서나 통행증과 같은 여행 문서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기 여행 문서 인정에 대한 회원국의 관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영국은 상기 결정 채택에 참여하지 않으며 상기 결정이나 그 적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32011D0695

2011/695/EU :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f 13 October 2011 on the func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hearing officer in certain competition proceeding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695/EU : 2011년 10월 13일 특정 경쟁 절차 심사관의 기능과 기준 조건에 관한 집행위원회 위원장 결정

유럽 연합 기능화에 관한 조약(TFEU)에 준거해 제정된 경쟁법 강화 시스템에 준거해, 집행위원회는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의 사법적 검사 대상인 행정 결정 안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을 행한다. 집행위원회는 경쟁 절차를 공정, 공평 및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당 법안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 절차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 절차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기 권리 준수의 보호 책임은 경쟁 분야 경험을 소유하며 해당 절차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효율성 기여에 필요한 청렴성을 지닌 독립적인 개인에게 일임되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집행위원회는 1982년에 상기 요건을 지닌 심사관 제도를 설립했다. 유럽 연합 경쟁법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결정 2011/695/ 는 심사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하며 직위 기준을 채택한다. 집행위원회는 1인 또는 다수의 경쟁 절차 심사관을 임명하고 경쟁 정책 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사관을 배속한다. 심사관은 유럽 연합 기능화 조약의 제 101 및 102 조와 규정 (EC) No 139/2004 에 준거해 집행위원회에서의 경쟁 절차를 통해 절차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상기 결정은 운용 방법, 절차권, 적용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며 2011년 10월 2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결정 2001/462/EC, ECSC 은 폐지된다. 결정 2001/462/EC, ECSC 에 준거해 경쟁 절차를 개시한 경우 해당 절차 종료 시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32011D1104

Decision No 1104/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rules for access to the public regulated service provided by the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stablished under the Galileo programme

- 2011년 10월 25일 갈릴레오 프로그램 하에 설립된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공 규제 서비스 접근을 위한 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결정 No 1104/2011/EU

결정 No 1104/2011/EU 는 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장관 회의, 집행위원회, 유럽 외부 활동 서비스(EEAS), 유럽 연합 기구, 비회원국인 제 3 국 및 국제 기구의 갈릴레오 프로그램이 설정한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이 제공하는 공공 규제 서비스(PRS)에의 접근을 가능케 한다. 유럽 연합 회원국, 유럽 장관 회의, 집행위원회와 유럽 외부 활동 서비스(EEAS)는 전 세계적인 공공 규제 서비스(PRS)에 대한 무제한적이며 중단되지 않는 접근권을 갖는다. 각 회원국, 유럽 장관 회의, 집행위원회 및 유럽 외부 활동 서비스(EEAS)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공공 규제 서비스(PRS) 이용 결정권을 갖는다. 공공 규제 서비스(PRS)를 사용하는 각 회원국은 2013년 11월 6일까지 관할권을 소유하는 공공 규제 서비스(PRS) 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 32011D0722

2011/722/EU : Council Decision of 27 October 2011 on the position to be taken by the European Union within the Trade Committee set up by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ther part, as regards the adoption of the rules of procedure of the Trade Committee and the establishment of a list of 15 arbitrators

- 2011/722/EU : 2011년 10월 27일 무역 위원회 절차 규정 채택과 15 인의 중재인 리스트 설정에 관한 유럽 연합과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 설정한 무역 위원회 내에서의 유럽 연합이 채택할 입장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결정

결정 2011/722/ 는 구성 및 위원장, 회의일정 및 회의록, 대표단, 옵서버, 비서국, 결정 및 권고, 공표 및 비밀 유지 의무, 소위원회 및 특별 전문가 그룹의 구성 등에 관한 무역 위원회의 내부 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상기 결정은 5인의 대한민국 추천 중재 위원, 5인의 유럽 연합 추천 중재 위원 및 미국, 태국, 노르웨이 및 필리핀 국적의 5인의 중재 위원회 위원장 리스트를 첨부한다.

11 월

■ 32011R125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51/2011 of 30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s 2004/17/ EC, 2004/18/EC and 2009/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in respect of their application thresholds for the procedures for the awards of contract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30일 계약 수락에 대한 통고 절차를 위한 입찰 최저가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4/17/EC, 2004/18/EC and 2009/81/EC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251/2011

규정 (EU) No 1251/2011 은 유럽 연합의 다양한 공공 조달밥에서 적용되는 입찰 최저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다. 수자원, 에너지, 운송 및 우편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달 절차를 조율하는 지침 2004/17/EC 는 특별히 과거 387,000 유로의 최저가를 400,000 유로로 인상하며 또한 484만 5천 유로의 최저가도 500 만 유로로 인상한다. 공공 사업의 재공급과 서비스 계약에 관한 지침 2004/18/EC 은 125,000 유로, 193,000 유로 및 485만 5천 유로의 최저가를 각각 130,000 유로, 200,000 유로 및 500 만 유로로 인상한다. 국방 및 안전 관련 계약에 관한 지침 2009/81/EC 는 387,000 유로 및 485만 5천 유로의 최저가를 각각 400,000 유로 및 500 만 유로로 인상한다. 상기 개정된 조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상기 지침들이 규정했던 입찰 최저가가 적용되었던 분야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21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16/2011 of 24 November 2011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91/2010 laying down a performance scheme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nd network function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4일 항공 관제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능을 위한 성능 계획 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91/2010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216/2011

항공 관제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능을 위한 성능 계획 제정과 항공 관제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위한 단일 조건 제정에 관한 규정 (EC) No 2096/2005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691/2010 은 주요 업적 평가 지표 (KPIs) 를 규정하고 안전, 환경, 능력 및 비용 효과의 주요 업적 분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규정한다. 성능 계획의 점진적인 이행으로부터 획득된 경험은 성능 계획의 구체적인 평가에 의해 야기된 작업량을 위해 그리고 국내 감독 기관과의 필요한 대화를 수행하고 해당 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당화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된 성능 목표의 평가를 위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배정된 시간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규정 (EU) No 1216/2011 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규정 691/2010 을 개정한다.

■ 32011R1210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10/2011 of 23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U) No 1031/2010 in particular to determine the volume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o be auctioned prior to 2013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3일 2013년 이전에 경매되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특별히 결정하는 규정 (EU) No 1031/2010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210/2011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3/87/EC 는 유럽 연합 내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 할당량 무역을 위한 계획을 설정했다. 집행위원회 규정 1031/2010 은 온실가스 할당량 경매에 시간, 관리 및 기타 측면을 규정하며 동 규정의 채택 이후 2011년 및 2012년에 경매되는 할당량을 규정한다. 따라서 제 3 경매 기간에 유효한 할당량은 2011년에 경매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12년도 할당량의 경매 일정 2차 시장 기능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충분한 경매 참여를 보장한다. 예견 가능하고 시기 적절한 경매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 (EU) No 1210/2011 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20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07/2011 of 22 November 2011 laying down requirements for the performance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urveillance for the single European sky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2일 단일 유럽 영공을 위한 감시 효율과 상호 운영성을 위한 조건 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207/2011

유럽 항공 교통 관리 네트워크 (EATMN) 내에서의 감시 체계의 효율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조건 개발을 위해 단일 유럽 영공 (SES) 창설을 위한 체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549/2004 의 제 8(1) 조에 준거해 집행위원회는 Eurocontrol 에 상기 체계 관리를 위임했다. 2010년 7월 9일의 위임 보고서를 근거한 규정 (EU) No 1207/2011 는 EATMN 내에서의 상기 시스템의 성능, 상호 운용성 및 효율성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감시 데이터, 구성 요소 및 협력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과 민군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조건을 규정한다. 상기 규정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20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06/2011 of 22 November 2011 laying down requirements on aircraft identification for surveillance for the single European sky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2일 단일 유럽 영공을 위한 감시용 항공기 식별 조건 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206/2011

유럽 항공 교통 관리 네트워크 (EATMN) 내에서의 감시 체계의 효율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조건 개발을 위해 단일 유럽 영공 (SES) 창설을 위한 체계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549/2004 의 제 8(1) 조에 준거해 집행 위원회는 Eurocontrol 에 상기 체계 관리를 위임했다. 규정 (EU) No 1206/2011 은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 교통 서비스가 항공기에 제공하기 이전에 국제 민간 항공 기구 (ICAO) 에 부합해 설립된 개별 항공기 식별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다. 상기 규정은 유럽 항공 교통 관리 네트워크 내에서의 명백하고 지속적인 개별 항공기 식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2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19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197/2011 of 21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474/2006 establishing the Community list of air carriers which are subject to an operating ban within the Community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1일 공동체 내에서 운항 금지에 해당되는 수송기의 공동체 리스트 설정에 관한 규정 (EC) No 474/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197/2011

규정 (EU) No 1197/2011 은 유럽 연합 영공에서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 리스트에 대한 18 차 갱신에 관해 규정한다. 집행 위원회는 알바니아와 러시아의 항공 당국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상기 양국이 유럽 연합 영공을 운항하는 보유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험도 통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채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상기 양국의 항공 기 운항 면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조치는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앙골라의 TAAG 항공사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 요르단 항공기의 일부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혼두라스의 Rollins Air 의 모든 항공기는 계속되는 다수의 안전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금지된다. 콩고 (Equatorial Congo), 콩고 민주 공화국 (Stellar Airways) 및 필리핀 (Aeromajestic and Interisland Airlines) 는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문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 운항 금지 리스트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카자흐스탄의 Air Astana, 북한의 Air Koryo, 가나의 Airlift International, Air Service Comores, Afrijet, 가봉의 Gabon Airlines 및 SN2AG, Iran Air, TAAG Angolan Airlines, Air Madagascar 및 Jordan Aviation11 개의 항공사가 엄격한 제한과 조건 하에서 운항 허가를 받았다.

■ 32011R1189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189/2011 of 18 November 2011 laying down detailed rules in relation to certain provisions of Council Directive 2010/24/EU concerning mutual assistance for the recovery of claims relating to taxes, duties and other measures

- 2011년 11월 18일 세금, 관세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청구 회복을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지침의 특정 조항에 관련된 세부 규정 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 (EU) No 1189/2011

유럽장관회의 지침 2010/24/EU는 세금, 관세 및 기타 조치에 관련한 청구 회복을 위한 상호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했다. 관할 기관 간의 신속한 의견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 당사자와 관한 기관 간의 의견 교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기간에 관한 세부 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다. 규정 (EC) No 1179/2008 을 폐지하는 규정 (EU) No 1189/2011은 상기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인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 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한다. 상기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14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147/2011 of 11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U) No 185/2010 implementing the common basic standards on civil aviation security as regards the use of security scanners at EU airports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11일 유럽 연합 공항의 안전 스캐너 사용에 관련해 민간 항공 안전에 관한 공통 기본 기준 시행에 관한 규정 (EU) No 185/2010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147/2011

민간 항공 안전 분야의 공동 규정을 제정하는 규정 (EC) No 300/2008 의 제 4(2) 조에 부합해, 집행위원회는 상기 규정의 부칙이 규정한 공동 기본 표준의 기본질적 요소 개정을 위한 일반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민간 항공 안전에 관한 공동 기본 표준을 보충하는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272/2009 는 부칙의 A 파트가 규정한 승객용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일반 조치를 규정한다. 승객용 스크리닝 방법으로서 안전 스캐너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상기 규정은 최소 탐지 성능 기준과 최소 운용 조건을 규정한다. 안전 스캐너 사용에 관한 특별 운용 조건의 제정과 스크리닝 방법의 대체 가능성을 승객에게 제공함으로서, 상기 규정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유럽 연합 기본적인 권리 현장이 인정한 원칙을 준수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1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23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36/2011 of 29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828/2006 as regards investments through financial engineering instruments

- 2011년 11월 29일 금융 공학적 기기를 통한 투자에 관한 규정 (EC) No 1828/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236/2011

유럽장관회의 규정 (EC) No 1083/2006 은 유럽 지방 개발 기금(ERDF), 유럽 사회 기금(ESF) 및 사회적 결속 기금에 관한 일반 조항을 규정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런 지원 노력은 규정 1828/2006 의 제 43(1) 조가 규정하는 금융 공학적 기기를 통한 투자를 가능케 한다. 이런 형태의 투자는 금융 분야가 제공하는 현금 부족으로 인해 생존 가능한 상태의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상황에만 적용된다. 상기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규정 (EC) No 1083/2006 은 규정 1828/2006 의 제 45 조를 개정한다. 규정 (EC) No 1083/2006 은 201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일시 이전에 체결된 펀딩 협약은 상기 규정에 준거해 반제가 가능한 신투자 또는 반제가능한 투자를 위한 신 보증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32011R1214

Regulation (EU) No 1214/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the professional cross-border transport of euro cash by road between euro-area Member States

- 2011년 11월 16일 유로 존의 회원국 간에 도로를 통한 국경을 넘는 전문가에 의한 유로화 운송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214/2011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 존의 은행, 대규모 도매업 및 기타 전문업종에서의 현금 담당자들이 현금 수송 전문 기업에 유로화 수송을 의뢰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금 수송 전문 기업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가격과 서비스, 다른 회원국에 존재하는 타국의 중앙 은행 지점 또는 현금 수송 전문 기업의 현금 센터의 장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더욱이, 다수의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 회폐 및 동전 발행을 타국에 의뢰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에 국경을 넘는 현금 수송에 관한 상이한 국내법에 따라 회원국 간에 도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전문적인 현금 수송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다. 규정 (EU) No 1214/2011 은 도로를 통한 현금 수송을 관리하는 공동 규정을 설정한다. 상기 규정은 유로 현금의 국경을 넘는 수송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해 해당 위원회는 상기 규정의 이행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1년에 최소 한번 이상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규정한다. 상기 규정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16년 12월 1일부터 매 5년마다 유럽 집행 위원회가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에 상기 규정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32011R1177

Council Regulation (EU) No 1177/2011 of 8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467/97 on speeding up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 2011년 11월 8일 신속하고 명확한 초과 재정 적자 회복 절차에 관한 규정 (EC) No 1467/97 개정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7/2011

규정 (EU) No 1177/2011 은 신속하고 명확한 초과 재정 적자 회복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규정 (EC) No 1467/97 을 개정한다. 초과 재정 적자 회복 절차는 과도한 정부의 재정적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도한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재정 지출 수정을 위해 정부 예산 정책의 재정 적자와 채무 범주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에 대한 검토가 이행한다. 상기 규정은 유로존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1년 12월 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규정은 경제 위기에 처한 유럽 연합 회원국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EU) No 1173/2011, (EU) No 1174/2011, (EU) No 1175/2011 및 (EU) No 1176/2011 과 더불어 제정된다. 상기 규정의 적용 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는 관련 회원국의 경제와 예산 상황 및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32011R1176

Regulation (EU) No 1176/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the prevention and correction of macroeconomic imbalances

- 2011년 11월 16일 거시 경제 불균형 예방과 수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6/2011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은 유럽 연합 회원국의 경제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 정책과 고용 가이드라인의 틀내에서 협조를 이루어야 하며, 안정된 가격 정책, 건전하고 항구적인 공공 재정, 통화 및 균형 예산 원칙의 준수를 규정한다. 규정 (EU) No 1176/2011 은 강력한 국가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구축된 유럽 연합의 개선된 경제 정책을 위해 지난 10 년 간의 유럽 연합의 경제 및 통화 연합 (EMU) 운용을 통해 획득된 교훈의 필요성을 인지한다. 상기 규정은 거시 경제 상의 불균형한 재정의 탐지와 유럽 연합 내에서의 지나친 거시 경제 상의 불균형 제정 상태의 예방과 수정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제정 한다. 상기 규정은 예산 감시 강화와 경제 정책 감시 및 협조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466/97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5/2011 에 준거해 적용되며, 2011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규정은 규정 (EU) No 1173/2011, (EU) No 1174/2011, (EU) No 1175/2011 및 (EU) No 1177/2011 과 더불어 제정된다.

■ 32011R1175

Regulation (EU) No 1175/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466/97 on the strengthening of the surveillance of budgetary positions and the surveillance and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 2011년 11월 16일 예산 입장 감시 강화와 경제 정책 감시 및 협조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466/97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5/2011

규정 (EU) No 1175/2011은 회원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럽 장관 회의와 집행위원회의 다각적 감시 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제 안정화 경제 정책의 수렴 및 프로그램의 내용, 검사 및 감독, 초기 단계에 과도한 일반 정부 재정 적자 예방 및 경제 정책의 감독과 협조 촉진을 규정해 유럽 연합의 경제 및 고용 성장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규정 (EU) No 1173/2011, (EU) No 1174/2011, (EU) No 1176/2011 및 (EU) No 1177/2011과 더불어 제정된다.

■ 32011R1174

Regulation (EU) No 1174/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enforcement measures to correct excessive macroeconomic imbalances in the euro area

- 2011년 11월 16일 유로 존의 초과 거시 경제 불균형 수정을 위한 강화 조치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4/2011

규정 (EU) No 1174/2011은 유로 존 내에서의 과도한 거시 경제 불균형의 효과적인 수정을 위한 제재 시스템을 규정하며 유로화를 통화로 채택한 회원국에만 적용된다. 거시 경제 수정 정책이 유럽 장관 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자 예금 설정을 통한 거시 경제 불균형의 예방과 수정 강화에 관한 규정 (EU) No 1176/2011 이행에 대해, 규정 (EU) No 1174/2011은 상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정한다. 회원국의 동일한 불균형 수정 절차가 과도한 거시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장관 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기 예금은 연례 벌금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유럽 장관 회의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수정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경우, 해당 수정 정책은 유럽 장관 회의가 해당 회원국이 권고를 충분히 이행하는 수정 정책을 시행했다고 인정할때까지 매년 벌금 부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규정 (EU) No 1174/2011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규정 (EU) No 1173/2011, (EU) No 1175/2011, (EU) No 1176/2011 및 (EU) No 1177/2011과 더불어 제정된다.

■ 32011R1173

Regulation (EU) No 1173/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on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budgetary surveillance in the euro area

- 2011년 11월 16일 유로 존의 예산 감시의 효율적인 강화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1173/2011

지난 10 여년 간의 경제 및 통화 연합 정책의 시행에 따라 획득된 경험과 실패의 교훈은 유럽 연합 내에서의 개선된 경제 정책 관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해당 관리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 공동으로 동의한 규정과 정책을 이행하는 국내 주권 행사에 대한 더욱 강력한 감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EU) No 1173/2011은 유로 존에서의 안정과 성장 협정의 예방 및 수정 조항의 강화를 위한 징계 시스템을 설정하며 유로화를 통화로 채택한 회원국에만 적용된다. 상기 규정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규정 (EU) No 1174/2011, (EU) No 1175/2011, (EU) No 1176/2011 및 (EU) No 1177/2011과 더불어 제정된다.

■ 32011R1205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205/2011 of 22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126/2008 adopting certa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1606/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IFRS) 7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년 11월 22일 국제 재정 보고 기준(IFRS) 7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C) No 1606/2002에 부합하는 특정 국제 회계 기준 채택에 관한 규정 (EC) No 1126/2008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규정 (EU) No 1205/2011

규정 (EC) No 1606/2002는 국제 회계 기준 채택을 규정한다. 2008년 10월 15일에 존재했던 특정 국제 기준과 해석 기준에 집행위원회 규정 (EC) No 1126/2008에 의해 채택되었다. 2010년 10월에 국제 회계 기준원 (IASB)이 공개와 금융 자산의 양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기 개정안은 재무 제표 사용자가 금융 금융 자산 양도에 관련한 위험 노출도와 기업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상기 위험도의 영향에 대한 더 나은 평가를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특히 금융 자산의 안정화를 포함하는 자산 양도 보고의 투명성을 촉진한다. 이에 부응해 규정 (EU) No 1205/2011은 규정 (EC) No 1126/2008을 개정하며, 2011년 11월 2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련 기업은 2011년 6월 30일 이후 제 1 차 회계 연도 개시일부터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 32011R1179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179/2011 of 17 November 2011 laying down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online systems pursuant to Regulation (EU) No 211/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itizens' initiative

- 2011년 11월 17일 시민 이니시어티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규정 (EU) No 211/2011에 준거한 온라인 수집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사양 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이행 규정 (EU) No 1179/2011

시민 이니시어티브에 관한 규정 (EU) No 211/2011은 지원요청문이 온라인상으로 수집되는 경우, 상기 목적을 위해 사용된 시스템은 특정 안전 및 기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관련 회원국의 관할 기관의 증명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상기 규정은 증명에 필요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온라인 수집 시스템의 조건을 설정하며, 집행위원회는 상기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사양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 (EU) No 1179/2011의 부칙은 관련 기술적 사양에 대한 개정안을 규정하며 온 2011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R121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212/2011 of 23 November 2011 amending Regulation (EC) No 1416/2006 laying down specifi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7(2)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trade in wine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US names of origin in the Community

- 2011년 11월 23일 공동체내에서의 US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와인 무역에 관한 유럽 공동체와 미합중국 간의 협정 제 7(2) 조 이행에 관한 특별 규정 제정에 관한 규정 (EC) No 1416/2006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EU) No 1212/2011

규정 (EC) No 1416/2006은 미국 와인 생산에 관한 미국식 명칭 보호를 규정한다. 와인 무역에 관한 유럽 공동체와 미합중국 간의 협정 제 11(5) 조에 부합해 협정 당사자는 협정의 부칙 V 조가 미국에서 최근 개정된 규정, 특히 와인 생산 분야에서의 규정 개정을 반영한 갱신에 합의했다. 개정된 조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동일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상기 규정은 규칙 1416/2006을 개정한다.

■ 32011L0094

Commission Directive 2011/94/EU of 28 November 2011 amending Directive 2006/1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driving licences

- 2011년 11월 28일 운전 면허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06/126/EC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2011/94/EU

지침 2006/126/EC의 부칙 I은 회원국이 국내 운전 면허증 발급 시 상기 지침이 제시하는 모델을 준수할 것을 규정한다. 2009년 12월 1일里斯본 조약의 발효에 따라 과거 유럽 공동체의 운전 면허증은 유럽 연합의 새로운 운전 면허증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기 지침이 제시하는 운전 면허증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유럽 연합 가입을 고려한다. 개정된 다른 조항은 새로운 면허증 소지자에게 허가된 자동차의 등급을 표기하고, AM 등급 (mopeds)과 A2 등급 (모터 사이클)에 관한 지침 2006/126/EC이 도입한 새로운 자동차 등급을 반영한 유럽 연합 모델 운전 면허증으로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회원국은 2013년 1월 19일까지 지침 2006/126/EC의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해야 한다.

■ 32011L0085

Council Directive 2011/85/EU of 8 November 2011 on requirements for budgetary frameworks of the Member States

- 2011년 11월 8일 회원국의 예산 프레임 워크를 위한 조건에 관한 유럽 장관 회의 지침 2011/85/EU

지침 2011/85/EU 은 조약에 대한 회원국의 준수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의 예산 프레임워크의 특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한다. 특히, 상기 지침은 국내 정부가 유럽 연합 조약 (TEU) 과 유럽 기능에 관한 조약 (TFEU) 에 첨부된 초과 재정 적자 회복 절차에 관한 의정서 (No 12)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상기 지침은 2011년 12 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회원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 월 31일까지 국제 공공 분야 회계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서를 회원국에 제출해야 하며 2018년 12월 14일까지 상기 지침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32011D1194

Decision No 1194/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European Union action for the European Heritage Label

- 2011년 11월 16일 유럽의 유산 라벨을 위한 유럽 연합 활동 설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결정 No 1194/2011/EU

2006년 4월 정부 간 유럽의 유산 라벨 발의가 스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11월 유럽 장관 회의는 상기 발의를 유럽 연합의 안건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해,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유산 라벨 창설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제의했다. 유럽의 유산 라벨로 명명된 유럽 연합의 활동을 설정한 집행위원회 결정은 유럽 역사 및 문화 유산의 공유된 가치와 요소 및 국가 및 지역적인 다양성에 바탕을 둔 유럽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유럽 연합에의 소속 의식을 강화하고, 다문화 간의 대화를 강화하는 두가지 목적을 규정했다. 상기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상징적 가치 강화와 유럽 역사와 문화 및 유럽 연합 건설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장소를 부각하고, 유럽 역사와 유럽 연합 건설 및 유럽 통합 절차를 지탱했던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에 관련된 공동적이며 다양한 문화 유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가시킨다.

결정은 "유산 장소"로서 문화재, 천연, 수중, 고고학, 산업 또는 도시의 장소, 문화적 경치, 추념 장소, 문화 상품 및 현대적인 유산을 포함하는 장소와 관련된 무형 유산을 규정한다. 유산 라벨을 위해 선정된 장소는 유럽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공동 문화 유산에 대한 유럽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의식을 고양시키며, 유럽 연합에 존재하는 경험 공유와 최고의 관습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모든 유럽 시민의 접근을 증가시키며, 예술, 문화 및 역사 교육을 통한 문화 간 대화를 증가시키며, 문화 유산, 현대 예술 창작물 및 창조성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육성하고, 문화적 관광을 통한 항구적인 경제 및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국은 자발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상기 활동에 참여 제안을 받는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기 발의에 650,000 유로의 기금이 배정될 것이다. 상기 결정은 2011년 1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011D0745

2011/745/EU : Commission Decision of 11 November 2011 amending Decisions 2010/2/EU and 2011/278/EU as regards the sectors and subsectors which are deem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notified under document C(2011) 8017)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745/EU : 2011년 11월 11일 중요한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 및 하부 분야에 관한 결정 2010/2/EU 와 2011/278/EU 개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지침 2003/87/EC 는 공동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배당 무역 체제를 설정했다. 상기 지침에 준거해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 2010/2/EU 는 심각한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된 분야와 하부 분야 리스트를 결정한다. 동일하게 채택된 집행위원회 결정 2011/278/EU 는 배출 가스 배당 허가를 위한 범 유럽 연합 규정을 결정한다. 지침 2003/87/EC 는 집행위원회가 매년 심각한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된 리스트에 분야 및 하부 분야의 추가를 허용한다. 상기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결정은 결정 2010/2/EU 와 2011/278/EU 를 개정하며, "벽돌, 타일 및 건설 자재 제조"(NACE code 2640), "소금 생산"(NACE code 1440) 및 "코코아 반죽, 버터, 지방 및 오일" 과 "첨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코코아 분말" 분야를 리스트에 추가한다.

■ 32011D0741

2011/741/EU : Commission Decision of 14 November 2011 in application of Article 7 of Directive 94/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 regards a prohibition measure adopted by the German authorities in respect of a mobile phone Expert XP-Ex-1 ATEX DE-01-11 (notified under document C(2011) 8046) Text with EEA relevance

- 2011/741/EU : 2011년 11월 14일 Expert XP-Ex-1 ATEX DE-01-11 휴대폰에 관해 독일 정부가 채택한 금지 조치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장관 회의 지침의 제 7 조 적용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지침 94/9/EC 은 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 시스템에 관한 회원국 입법안의 근사치를 규정한다. 상기 지침 제 2(1) 조는 회원국이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장비, 보호 시스템 및 장치가 적절하게 설치, 유지 및 고유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소비자 및 애완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에만 시장 판매 및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다. 회원국이 CE 준수 마크를 부착한 장비, 보호 시스템 또는 장치 소비자 및 애완동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회원국은 시장에서 상기 제품의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상기 조치를 집행위원회에 통고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상기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선언하고 회원국에 이를 통보해 회원국이 적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기 규정에 준거해, 2011년 3월 17일 독일 정부는 네덜란드의 Experts Intrinsic Safety Specialists 가 제조한 XP-Ex-1 휴대폰의 시장 도입과 철수에 관한 조치를 집행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

독일 정부는 상기 조치가 주요 건강 및 안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2011년 4월, 제조사와 EC-Type 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검증 기관에 독일 정부가 채택한 조치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위원회는 'Expert XP-Ex-1' 휴대폰이 지침 94/9/EC 의 제 3 조와 부칙 II 이 규정한 주요한 건강 및 안전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독일 정부가 채택한 시장 철수 조치는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 영 국 —

1 월

■ Forth Crossing Act 2011 asp 2

- 스코틀랜드 다리 및 도로 건축법

동 법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스코틀랜드 포스만(Firth of Forth)을 가로질러 Forth Road Bridge의 서쪽으로 새로운 가교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신도로들과 연결을 위한 가교 건설과 또 다른 신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되어 운용 중인 기존 도로의 재정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법은 Forth Road Bridge의 주변 도로 관리 책임 소재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

■ 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asp 1

- 아동권리보호법 (스코틀랜드)

동 법은 스코틀랜드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동 법의 기본 취지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량행위를 한 아동이나 보호가 요망되는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은 경찰이나, 교육기관 등의 부탁 또는 회부에 의해서 법적인 관리와 보호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의 입법 취지는 아동에 대한 관리와 보호체계가 유럽인권 협약과 규범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도 있다.

동 법은 기존의 관련 법률들을 참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던 아동법(the Children Act 1995)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존의 아동패널권고위원회(Children's Panel Advisory Committees)를 대체한 스코틀랜드 아동권리보호위원회(Children's Hearings Scotland)를 설치하였으며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조직의 강화 및 아동 관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스코틀랜드 정부 차원의 효율적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난립했던 패널을 하나의 단일기구로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아동 관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hearing system(청문 혹은 청원 절차)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이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정부 차원의 재정적 및 법률적 원조를 시행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2 월

■ Historic Environment (Amendment) (Scotland) Act 2011 asp 3

- 역사 유적지 보호법 (개정) (스코틀랜드)

본 법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고대 유적지 관리와 지정 건축물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다. 기존의 관련법들을 보다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입법되었다. 고대 유적지와 지정 건축물과 관련된 작업에 있어 작업 권한에 대한 위임이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으며, 지정건물의 긴급한 보수작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또한 역사적 및 고고학적 작업과 유적지 개발에 대한 지원금 및 대출 관련 규정을 두었다.

■ Construction Contracts (Amendment)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4

- 건설/건축계약법 (개정) (북아일랜드)

1996년 제정되었던 건설법은 원래의 입법 취지가 건설 또는 건축사업과 관련된 계약 분쟁을 신속히 재판절차에 의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건설법은 그 동안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기능해왔으나 건설 혹은 건축계약과 관련된 대금의 신속한 지급문제와 분쟁 발생시 신속한 재판에 의한 해결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었다. 본 법은 기존의 건설법을 부분 개정한 것으로 건설/건축계약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그 개정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건축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으며 대금 지급 시기를 분명히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당사자의 약용가능성을 막았다. 또한 건설/건축계약서상 계약분쟁으로 인한 재판회부시 재판관이 계약서상에서 판단되는 오탏 등을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Waste and Contaminated Land (Amendment)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5

- 환경오염지역 관리법 (개정) (북아일랜드)

본 법은 1997년의 환경오염지역 관리령의 제2부 규정을 참고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2006년부터 강조된 북아일랜드의 신폐기물 처리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법제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 환경청과 지역기관들 간의 불법적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본 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토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험 사례를 참고한 부분이다. 본 법은 이른바 환경오염으로 손상된 토지의 개념규정을 새롭게 두었고, 수질 부분과 지하수 부분 관련 규정에서 오염의 ‘심각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은 관할 관청의 조사권한과 관련하여 생산자책임(producer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에 수정을 가하였다.

■ Energy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6

- 에너지법 (북아일랜드)

본 법은 전력/가스 공급회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전력이나 가스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운영체제(special administration regime)를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받은 전력/가스공급업체의 전력/가스 공급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가스공급회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 올 수 있는 가스공급회사의 횡포나 전횡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가스공급 영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규정을 두었다. 가스공급계약은 공급업체와 소비자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현재의 법령체제에서는 가스공급업체가 가스공급 서비스를 받는 장소로 출입하는 것이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어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령 가스 누출 등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스공급업체가 가스공급 서비스를 받는 문제의 장소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있었다. 전력공급업체의 경우 가스공급업체 보다는 진입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여 반드시 생명과 재산상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어도 전력공급 서비스를 받는 문제의 장소(premises)에로 진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법은 가스공급업체에도 전력공급업체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장소에의 진입의 자유를 보다 넓혔다.

■ Safeguarding Board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7

- 안전보호협회법 (북아일랜드)

1990년대 초에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CPCs)가 건강사회복지협회 산하에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보호서비스가 얼마나 원활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하는 책임이 부여되었다. 2006년에는 북아일랜드 지역의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제안들 중 하나가 이른바 북아일랜드지역을 위한 안전 보호협회 설립을 통한 기구협조 성격의 아동보호협력체계의 구축이었다. 이것은 북아일랜드 정부기구 차원에서 관련 부서들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성격을 본질적으로 띠고 있으나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조도 이끌어내려는 의도였다.

본 법에 의해서 새롭게 설립된 이른바 북아일랜드지역을 통한 안전보호협회(Safeguarding Board for Northern Ireland (SBNI))는 2009년 이래 활동해왔던 기존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위원회(Regional Child Protection Committee) 대체한 것이다. 또한 본 법은 안전보호협회 산하에 다섯 개의 패널을 설치하여 아동보호의 실질화를 꾀하고 있다.

3 월

■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CHAPTER 4: 22/03/2011

- 예산책임 및 회계감사법

본 법은 예산책임현장을 구체화한 규정과 예산명세 및 예산보고서의 공표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책임실(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감독 및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관(Comptroller)과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웨일즈 지역의 예산 감사관 활동과 관련된 2006 웨일즈 통지법의 일정(schedules) 5-7을 개정하였다.

■ Dogs (Amendment)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9: 08/03/2011

- 맹견 관리법 (개정) (북아일랜드)

본 법은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에 떠돌이 맹견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심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물론 본 법의 제정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몇 개의 시행령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떠돌이 맹견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심각성이 노정되었다. 물론 기존의 관련 시행령들은 개를 소유할 수 있는 소유허가 등록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방식으로 맹견 문제를 규율하고 있었다.

2001년 Dogs (Amendment) Act (Northern Ireland) 2001 법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맹견에 대해 법원이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적 판단이 내려지면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규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본 법은 이를 시정하여 법원이 명령을 내릴 때 만일 살처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그러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후 2개월 내에는 계속적으로 ‘위험한 맹견’ 즉,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맹견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10: 16/03/2011

- 지방정부 재정법 (북아일랜드)

본 법은 북아일랜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재정문제를 자율적으로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해 이전과 다른 상당한 자율성을 허용하였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추가적인 하부법령을 근거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또한 본 법은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환경부처만 북아일랜드 지방의회에 부여할 수 있었던 수여금을 다른 부처도 관련 사항에 따라 수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본 법은 북아일랜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통합하였다.

■ Welfare of Animals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16: 29/03/2011

- 동물복지법 (북아일랜드)

본 법은 1972년 북아일랜드 동물복지법을 대체한 법으로서 척추동물의 복지 향상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즉, 척추동물의 보호를 위한 책임자의 합리적 조치의 실패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였고, 16세 이하 연령의 자연인에 의한 동물 매매 이전을 금지하였으며, 동물의 무단 방치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였다. 검사관이나 경찰관이 고통의 개연성이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동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과 함께,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한 동물의 소유주로부터 동물에 대한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동물에 대한 관리 태만과 부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의 동물 소유 주는 그와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일체의 동물 관련 행위에 대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4 월

■ Private Rented Housing (Scotland) Act 2011 asp 14: 20/04/2011

- 주택 임대법 (스코틀랜드)

본 법의 목적은 불법적인 주택 임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인의 등록 운영체계의 변화를 꾀했으며 여러 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동거하는 주택의 경우의 임대 허가도 보다 엄격히 하였다. 본 법은 사적 주택 임대에 있어 임대인의 자격 기준 심사를 강화하였다. 지역 관할 당국에게 임대인의 과거 범죄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임대인은 주택을 주거 임대 목적으로 광고할 때 자신의 임대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대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은 5년 동안 주택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였다. 지역 관할 당국은 한 주택에 많은 동거인이 있을 경우, 보건 및 복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 이에 대한 주의 통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Forced Marriage etc. (Protection and Jurisdiction) (Scotland) Act 2011 asp 15: 27/04/2011

- 강요한 의한 혼인 대책법 (스코틀랜드)

본 법은 자유로운 동의 없이 또는 강요에 의해 혼인을 하게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대방의 온전한 동의가 없는 혼인 또는 강요에 의한 혼인과 관련하여 혼인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권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주무 장관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강제적인 혼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속적인, 또 필요에 따른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Certification of Death (Scotland) Act 2011 asp 11: 20/04/2011

- 사망확인법 (스코틀랜드)

본 법은 사망증명과 사산증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검안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그 기능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본 법은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증명을 위한 새로운 검안 체계를 도입하였다. 의학적 검안담당관(medical reviewer) 및 선임 검안담당관(senior medical reviewer)이라는 직책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망증명서에는 사망원인을 분명히 적시하여 시신을 화장하는 것인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산한 경우의 사망증명서에도 관련 의학 정보를 부기함으로써 공중 보건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 밖에서 사망한 시신을 스코틀랜드 안에서 화장하려고 할 경우, 담당검안관이 그 안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Local Electoral Administration (Scotland) Act 2011 asp 10: 20/04/2011

- 지방선거관리법 (스코틀랜드)

본 법은 스코틀랜드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관리협회를 새롭게 설립하고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협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동시에 기존의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Section 16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코틀랜드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해서 소요된 비용은 스코틀랜드의 관련 부처 장관이 설정한 최대 액수 한도 안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부담해주는 규정을 두었다. 동시에 Section 18은 스코틀랜드 공공 옴브즈만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 Reservoirs (Scotland) Act 2011 asp 9: 12/04/2011

- 저수지 관리법

본 법은 저수지 건설, 변경 및 운영을 특히 홍수 위험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도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저수지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 체계를 구축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2009 홍수대책법 관련 규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본 법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 범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저수지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등록된 저수지로부터의 물의 방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SEPA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적인 저수지 검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 월

6 월

■ Damages (Asbestos-related Conditions)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28: 21/06/2011

- 석면 관련 손해배상법 (북아일랜드)

본 법의 제정 배경에는 이른바 석면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흉막판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른바 자각증상이 없는 흉막판(asymptomatic pleural plaques (an asbestos-related condition))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심각한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2007년의 이른바 Johnston v. NEI International Combustion Ltd 사건이 있다. 이 판결에 대해 영국 전역에서 찬반양론이 갈렸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입법이 지역마다 탄생하였다.

본 법은 북아일랜드 경우로 위에서 언급한 판결의 효과를 ‘입법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즉, 본 법의 목적은 자각증상 없는 흉막판의 경우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또한 본 법은 늑막비후(pleural thickening)와 자각증상 없는 석면증(asymptomatic asbestosis)의 경우, 그것이 과실에 의한 석면에의 노출일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됨을 규정하였다. 물론 본 법은 불법행위법에 관한 일반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Postal Services Act 2011 CHAPTER 5: 13/06/2011

- 2011 우편법

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우편 업무에 관한 일반법으로 우편서비스법 2000(the Postal Service Act 2000)이 있었고 이 법은 우편서비스위원회(Postal Services Commission, Postcomm)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권한과 업무가 규정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우편서비스법 2000은 우편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운영허가권 제도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우편업무 분야는 최근 이른바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 의해 근원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즉, 전통적인 우편 방식이 아닌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등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런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어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

본 법은 특히 기존의 Royal Mail(영국 체신 공사)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Royal Mail이 다른 유럽의 유사한 기구와 대비할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Royal Mail이 운용하는 연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우편서비스 가격 구조가 격변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따른 시장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경영진과 체신업무 노동자단체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편서비스 운영자 규율 문제도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법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Royal Mail 운용에 있어 사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Royal” Mail의 연금 운영상의 난점을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이른바 특별체제를 만들어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여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법의 특징은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바 첫째, 영국 Royal Mail(체신 공사)의 주식 매각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였고 둘째, Royal Mail의 연금 운용 적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우편 업무와 관련하여 규제책임 부서를 Postcomm에서 OFCOM으로 이관시켰다. 마지막으로는 보편적인 우편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령 민간 자본 참여 부분에 따른 재정위기, 파산 등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우편 업무의 연속성 보장 등) 특별 행정 체계를 구축하였다.

7 월

■ Budget (No. 2)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29: 27/07/2011

- 예산법 (No.2) (북아일랜드)

동 예산법은 북아일랜드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재정 지출에 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기능한다. 동 예산법은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재정적 관리 및 재정 집행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예산법은 이른바 북아일랜드 통합기금(Northern Ireland Consolidated Fund) 운용에 관한 전반적 권한 규정 또한 담고 있다. 동 예산법은 재정비용 지출을 가능케 하는 재원을 두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바 하나는 누적재원(accruing resources)이고 다른 하나는 비운영재원(non-operating resources)이다. 누적재원은 총지출에서 차감된 재정 소득을 의미하며 비운영 재원은 자산의 매각 등으로 인한 것으로 총자본에서 차감된 자본 소득을 의미한다. 동 예산법에 따른 각종의 구체적인 법령은 추가로 제정이 예정되어 있다.

■ Police (Detention and Bail) Act 2011 CHAPTER 9: 12/07/2011

- 경찰법

1984 경찰법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과 관련하여 구속 기간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바, 그 중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기소나 석방이 있기 전까지 최대 96시간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84 경찰법은 또한 추가적인 경찰 조사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을 경우 범죄 혐의자가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1984년 경찰법이 1986년 1월1일부로 발효한 이래로 경찰은 인식 구속 상태 유지 조항의 경우 보석 관련해서는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이른바 구속 할 수 있는 시간 계산이 정지된 상태로 이해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즉, 보석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구속 가능 기간 계산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른바 Mr. Hookway 사건에서 법원의 도전을 받았다. 즉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구속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혐의자에 대한 구속 유지 기간은 이미 이 사건의 혐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이 났을 때 종료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러한 판결과 대비되는 내용을 담은, 즉 기존의 경찰 관행을 계속적으로 인정한 동법을 제정한 것이다. 주의할 것은 동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8 월

■ Justice Act (Northern Ireland) 2011 Chapter 24: 01/08/2011

- 북아일랜드 사법 개혁법

북아일랜드 사법제도의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여러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용’이라는 측면과 법적 원조(aid) 절차에서의 비용 절감 문제 및 일반 대중의 사법 절차에의 접근의 용이성 확보 등 여러 차원에서 제기된 사안이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및 증인의 실효적인 보호 문제도 심각한 사항이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북아일랜드 사법 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은 사법 시스템의 신속한 운용 확보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법률 분쟁의 경우 법원 심사가 필요 없게끔 하였고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법률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의 모든 형사문제에 대해 법적 원조비용을 절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문제에 관련해서 동 법은 피해자 기금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였다.

■ Wreck Removal Convention Act 2011 Chapter 8: 01/08/2011

- 선박잔해제거 나이로비 협약 2011 국내 이행법

선박잔해제거 나이로비(케냐의 수도) 협약은 2007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되었다. 국제해사기구는 UN 전문 기구로서 해양의 안전 유지와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그 주요한 임무로 하고 있다. 동 협약의 내용은 동 법에 함께 첨부되어 있다. 선박잔해제거 나이로비 협약은 ‘유보’(reservation) 없이 10개의 협약 참가국이 비준하고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면 발효하게 되는데 동 협약은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발생한 선박 잔해 관련 사건에만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동 법은 언급한 선박잔해제거 나이로비 협약이 발효한 이후에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진다. 동 법은 위의 협약이 영국에 적용되기 위한 국내법을 의미하여 동 협약의 국내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Estates of Deceased Persons (Forfeiture Rule and Law of Succession) Act 2011 Chapter 7: 01/08/2011
 - 2011 상속법 (상속권 박탈 관련)

동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상속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속인 자격이 있는 자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상속자의 지위가 박탈된 경우를 규정하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도 개정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을 언급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출산한 자녀가 문제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18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문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

9 월

-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CHAPTER 14: 15/09/2011
 - 여론조사 시행법

동 법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지정일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여론조사일은 매 5년 단위로 5월 첫째 목요일에 시행된다. 2015년 5월7일 첫 번째 여론조사가 실시 예정이다. 총리는 법규명령을 통해 원래 예정인 여론조사 일에서 두 달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론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동 법은 또한 조기 총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모든 국회의원의 2/3가 지지하면 그러한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 국왕은 동 법에 따른 의회 해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잔여적인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다.

-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CHAPTER 13: 15/09/2011
 - 경찰개혁법

동 법은 기존의 경찰당국(policing authorities) 기구를 폐지하고 대신 직접적인 선출방식에 의한 치안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기구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치안감(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이라는 성격은 경찰 권한의 ‘주요’책임을 부담하는 기구로 인정되었다. 동 기구를 자문하고 업무의 감사를 위해 치안 문제 패널(Police and Crime Panel)이란 기구를 새롭게 발족시켰다. 런던 치안 관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시경찰국(Metropolitan Police Authority)의 기구를 시장 직속 산하의 치안국(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으로 대체시켰으며 이 기구는 런던시청이 직접 관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10 월

■ Energy Act 2011 CHAPTER 16: 18/10/2011

- 에너지법

동 법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첫째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 장벽의 제거이고, 둘째는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저탄소에너지(low carbon energy)를 위한 투자 촉진이다. 저탄소에너지 문제는 영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영국의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의 의지를 갖는다. 동 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가정과 회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전략의 실천(이른바 Green Deal)을 위한 다양한 시설투자에 관한 규정들이다.

동 법의 규정은 에너지효율성 제고 규정,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규정(시장 유인책 및 에너지 공급에 따른 감독규정 포함), 탄소에너지 방출에 따른 대책 규정, 기타의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Sovereign Grant Act 2011CHAPTER 15: 18/10/2011

- 왕실 재정지원법

동 법은 왕실의 권위 유지와 의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법으로서 기존의 특정적 형태로 규정했던 왕실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경시켰다. 동시에 의회의 왕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한 변경 시도 시 이에 대한 왕실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왕실의 권위 유지와 임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grant) 지급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서 인정되어 왔다. 왕실의 기본적인 공식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이른바 'civil list', 왕실의 항공 및 철도 이용에 따른 'grant-in-aid for the Royal Household', 왕실 궁전 보수를 위한 'grant-in-aid for the maintenance of the Royal Palaces', 그 밖의 통신과 정보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금(separate grant) 등이었다. 동 법은 이러한 지원금을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왕실의 사적인 비용은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에 따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른바 왕실 영지(Crown Estate)에서 나오는 순수입으로 일부가 (약 15%) 왕실 지원의 대가로 영국정부 재무성에 귀속된다. 또한 동 법에 의한 왕실 지원금은 의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그 회계 사항이 공공에 공표되며 차후에 의회의 감사대상이 된다.

11 월

■ Education Act 2011 CHAPTER 21: 15/11/2011

- 2011 교육법

교육법은 2010년 교육부 백서에서 제안된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학생들에게 대한 교사들의 훈육권 강화를 대폭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여 훈육적 순기능의 측면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서 동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즉, 대학의 운영뿐만 아니라 대학의 해산 관련 규정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권한을 대학 측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보조금 지급을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 Pensions Act 2011 CHAPTER 19: 03/11/2011

- 연금법 2011

동법은 연금 수혜 도래 기간을 단축하여 남성 및 여성 모두 2018년 12월 65세가 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의 연령별 기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동법은 사업체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자동적’ 연금 가입에 대한 의무적 이행에 관한 규정과 연금 납입 관련 공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이른바 연금보호기금(Pension Protection Fund)에 의한 직업연금(occupation pension) 지급에 대한 평가 규정도 두고 있다.

■ Armed Forces Act 2011 CHAPTER 18: 03/11/2011

- 군대법 2011

군대법 군 조직의 충원과 유지에 관한 법으로서 2006년 군대법 의해 모든 군인들에게 대해 적용되는 단일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한 아래 계속적으로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군대법’은 세계 어느 곳에 파견되던 동일하게 모든 영국 군인들에게 적용된다. 동 법은 2006년 군대법의 개정법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군경찰 및 군지휘관의 명령체계, 군대규율 체계, 군재판소 관할권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대법은 매5년마다 개정되어야 한다. 즉, 동법은 5년 후에 개정되어야 한다.

— 프랑스 —

1 월

■ LOI n° 2011-13 du 5 janvier 201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et à l'exercice des pouvoirs de police de l'Etat en mer

- 해적 방지와 국가 해양경찰 권력행사에 관한 2011년 1월 5일 제2011-13호 법률

바다에서 범죄를 범하고 있는 해적들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公海)에서의 프랑스의 예방조치와 단속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방어법전은 해양경찰의 권력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법률의 범주 안에 규명하고 있다. 즉, 해양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프랑스의 감독 및 강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Montego Bay협약”이라 불리는 1982년 12월 10일 체결된 해양법상의 국가연합협약은 1996년 5월 11일 프랑스에 시행되었으나, 해적 단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사법제도가 오늘날까지 프랑스 국내법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법률은 해양경찰의 권력행사에 관한 1994년 7월 15일 제94-589호 법률, 형사법전, 형사소송법전 및 방어법전의 다양한 규정들을 협약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본 법률은 제1장 해양경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국가가 행하는 방법에 관한 1994년 7월 15일 제94-589호 법률 개정 규정, 제2장 형법전 및 형사소송법전 개정 규정, 제3장 방어법전 개정 규정, 제4장 해적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자녀들에 관한 규정, 제5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14 du 5 janvier 2011 relative à la reconversion des militaires

- 군의 직업전환에 관한 2011년 1월 5일 제2011-14호 법률

군의 직업전환에 관한 정책 개혁은 군대 및 군 병합 기관에서 다소 긴 경력이 끝난 후에, 군인들의 민간 취업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개혁은 관련자의 개인적 기대에 알맞게 부응하고 군의 직업전환 네트워크 운행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또한 관련자에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로서 국방부 및 군인이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업들 간 공동 개발이 주요한데, 특히, 퇴역하고자 하는 군인의 직업적 활동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법적·신분적 도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법률은 신분상 두 조치에 관한 규정을 구성하고 있다. 즉, 제1조는 직업전환 휴가 규칙을 완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제2조는 활동에 관한 새로운 신분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치는 군인의 기업의 인수 또는 창설을 장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LOI n° 2011-94 du 25 janvier 2011 portant réforme de la représentation devant les cours d'appel
 - 항소법원에서의 소송대리제도 개정에 관한 2011년 1월 25일 제2011-94호 법률

정부는 사법 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개혁, 특히 재판 과정을 단순화 하고 항소절차의 비용감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항소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제기를 더 이상 의무로 하지 않고 소송대리인 및 변호사의 직업을 병합하는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제1장은 소송대리인과 변호사 직업의 병합의 결과로 사법·재판 관련 직업의 개혁에 관한 1971년 12월 31일 제71-1130호 법률 중 변호사 직의 구성원, 소송대리인 사무실, 항소법원 소송 대리 행위, 변호사 직의 조직 편성에 관련된 규정들을 개정한다. 제2장은 항소법원 소송 대리인의 보상금과 소송대리인의 근로자에 대한 실업 보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사법·재판 관련 직업의 접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본 법률의 시행에 관한 임시 규정이다. 제5장은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103 du 27 janvier 2011 relative à la représentation équilibrée des femmes et des hommes au sein des conseils d'administration et de surveillance et à l'égalité professionnelle
 - 행정·감독 위원회에서의 남·녀의 균형 잡힌 대표 및 직업평등에 관한 2011년 1월 27일 제2011-103호 법률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직위에서는 부대표에 머물고 있음이 현실임을 지적하며, 본 법률의 목적은 직업적 남·녀 평등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5년에 걸쳐 행정위원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행정위원들의 자격 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본 법률은 이상과 실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행정위원회의 개방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에 관한 더 명확한 의식을 가져올 것이고, 앞으로 표본인 행정위원회가 봉급의 평등 또는 직업교육의 접근에 관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사회·문화적 모델이 여성들에게 그들의 개인적 삶과 직업생활을 더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월

■ LOI n° 2011-140 du 3 février 2011 tendant à renforcer les moyens du Parlement en matière de contrôle de l'action du Gouvernement et d'évaluation des politiques publiques

- 정부행위감독과 공공정책평가 분야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2011년 2월 3일 제2011-140호 법률

본 법률은 정부행위감독 분야 특히, 공공정책평가 분야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법률은 의회 규정을 개정한 2009년 봄에 채택된 법률(2009년 4월 15일 제2009-403호 조직법률 및 2009년 6월 15일 제2009-689호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① 청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소환을 위한 공공정책의 감독 및 평가 분야에서의 의회기관에 관한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② 조사위원회가 청문서에 건내진 회계계정의 검토 및 피청문자의 견해 전달 방법을 규정하고, ③ 의회는 공공정책평가를 위한 회계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의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1-156 du 7 février 2011 relative à la solidarité dans les domaines de l'alimentation en eau et de l'assainissement

- 물의 공급과 정화 분야에서의 연대성에 관한 2011년 2월 7일 제2011-156호 법률

본 법률은 직·간접적으로 상·하수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이용자들 간에 차별 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자를 고려하여 물·정화 분야의 상호연대를 강조하고, 서민들이 지역사회연대센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서민들의 물 분야의 선택에 관한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보조금은 물·정화 청구금액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자에게 그들의 사회활동을 위한 시(市) 센터 또는 시(市)연합센터가 직접적으로 충당하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금액으로 청구되고 물접근에 관한 최저생활에 부합하는 소비수준을 보조한다. 또한 본 법률은 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위한 적합한 보조에 관하여 서민들에게 또는 음료수 공급체계 및 정화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연합 협조 공공기관에게 자발적 기반에서 재정적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3 월

■ LOI n° 2011-266 du 14 mars 201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rolifération des armes de destruction massive et de leurs vecteurs

- 대량살상무기 및 그 매개체의 확산방지에 관한 2011년 3월 14일 제2011-266호 법률

UN 안전보장이사회的大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본 결의안은 모든 채택 국가에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모든 사법적 장치의 마련을 의무화 하였고, 특히 국제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면 무기 확산 행위의 예방 및 단속과 관련하여, 프랑스 실정법들은 현행 병기고에 대하여 복잡함과 동시에, 대량살상무기확산에 관한 특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본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대한 유효성, 일관성, 억제성을 강화하여 국립 병기고를 개선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법률은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계되며, 현행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 행위로 고려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제2편은 대량살상무기 매개체의 확산방지에 관련된다. 특히 방어법전 제2부의 제3권 제3편(허가를 필요로 하는 전쟁 장비, 무기 및 탄약) 제9장 중 “대량살상무기 매개체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제8절을 신설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편은 민간 및 군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에 관련된다. 제4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매개체의 확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5편은 테러행위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매개체 확산 관련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제6편은 기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LOI n° 2011-267 du 14 mars 2011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performanc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 국내 안전보장 성과를 위한 지침 및 계획에 관한 2011년 3월 14일 제2011-267호 법률

2002년 LOPSI(국내 안전보장 성과를 위한 지침 및 계획 법률) 시행 이후, 프랑스의 안전보장 분야의 결과는 2002년 ~ 2007년, (1981~2001년 간 지속적으로 악화된 사회 불안정 대비) 5년간의 범죄 및 피해자의 수가 감소되었다. 앞으로의 국내 안전보장을 위하여, 본 법률은 프랑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제도, 국가 연대성, 공공질서, 인명 및 재산, 시설과 일반 이익에 관한 자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협과 위험에 대한 예측, 보호, 방지, 예방에서의 내무부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9-2013년을 위한 최우선 실제적 목적은 ① 프랑스 공화국의 주요 기본 재산, 국가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보다 중요한 이익에 침해되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②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반유대인주의의 운동 및 행위 또는 도시 지역 치안 및 주거 치안을 위협하는 도시 폭력에 대한 적절하고 다양한 조치, ③ 조직 범죄, 특히 기술 개발에 의한 범죄(사이버 범죄)와 전략 지정학적 범죄(불법 이민 및 불법 노동자, 지하 경제 유통)에 대한 조치, ④ 가정 내 폭력, ⑤ 도로교통법 위반, ⑥ 공중보건 또는 환경적 위기에 대한 조치 등이다.

■ LOI n° 2011-302 du 22 mars 2011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de la législation au droit de l'Union européenne en matière de santé, de travail et de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보건, 노동, 전자 통신 분야 유럽연합법제의 적용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정하는 2011년 3월 22일 제2011-302호 법률

EU 법 존중은 EU 회원국에 대한 절대적 요청인 가운데, EU 위원회는 EU 지침의 국내 법률 전환에 대한 지연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금(필요한 경우, 일일 연체료) 등을 부과할 것을 공지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지침, 특히 국내 시장에 관한 분야에서의 법률 전환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무(국내 시장의 건축 관련 지침의 법률 전환에 대한 지연)에 직면하였고, 더 나아가 지침의 법률 전환 지연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유럽지침의 법률 전환 지연은 프랑스 공공 재정에 중요한 영향이 있음이 지적되었고, 따라서 본 법률은 유럽지침의 법률 전환의 시급함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법률은 총 4개의 장, 즉 제1장 보건에 관한 규정, 제2장 보건 이외 업계와 규제적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장 전자 통신에 관한 규정 및 제4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331 du 28 mars 2011 de modernisation des professions judiciaires ou juridiques et certaines professions réglementées

- 사법(司法) 또는 법 관련 직업 및 행정규제 관련 특정 직업의 현대화에 관한 2011년 3월 28일 제2011-331호 법률

본 법률은 법(또는 司法) 관련 분야에서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직업을 현대화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의 구성은 제1장 변호사직에 관한 규정, 제2장 토지 공시에 관한 규정, 제3장 공증인직에 관한 규정, 제4장 법원 집행관직에 관한 규정, 제5장 사법 행정관 및 사법 대리인직에 관한 규정, 제6장 사법(司法) 또는 법 관련 직의 협력과 테러에 관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규정, 제7장 민사 분야로 구성된 사법 또는 법 관련 직의 대표를 부담하는 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 제8장 법규에 의한 자유직 또는 법규에 의해 자격이 보호되는 자유직의 수행 구조의 개혁에 관한 규정, 제9장 자유직 재정 협력 회사에 관한 규정, 제10장 공인회계사에 관한 규정, 제11장 민·상 합동 법원의 기록보관소 및 상사 법원 전국 서기 의회에 관한 규정 및 제12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334 du 29 mars 2011 relative au Défenseur des droits

- 권리수호국(Défenseur des droits)에 관한 2011년 3월 29일 제2011-334호 법률

'제5공화국' 제도의 현대화에 관한 2008년 7월 23일 제2008-724호 헌법률은 권리수호국의 기능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본 권리수호국에 관한 법률은 권리수호국의 법적 자격, 임무, 권한 및 재량권 행사의 방법을 명확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인종차별방지와 평등을 위한 고등권력기관단의 회원과 국가 정보·자유위원회 회원의 지위를 권리수호국과 그 대리인에게 인정하며, 권리수호국에 할당된 예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법률은 형사규정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수호국의 지위에 관한 월권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및 권리수호국의 심문, 자료의 전달신청 및 현장 감사에 관한 권한 행사시, 억압적인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형벌규정에서는 자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가적 형벌,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가적 형벌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월

■ LOI n° 2011-392 du 14 avril 2011 relative à la garde à vue

- 감치(監置)에 관한 2011년 4월 14일 제2011-392호 법률

헌법위원회는 감치에 관련된 현재의 규정들 중 감치에서의 구금(placement) 요건과 구금 연장 요건들이 매우 명확하지 않고, 또한 방어권 행사 특히 변호사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는 등, 범법자의 수사 또는 공공질서 침해의 예방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행사 간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감치 제도의 개혁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법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감치 수의 감소 둘째, 피감치자의 권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명확한 보장.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본 법률은 피의자(suspect)에 대한 자유로운 심문, 감치의 정의, 요건 및 일반적 방법을 주요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가 자유롭게 심문을 명시적으로 승낙한 경우, 추측되는 사실에 대한 필요적 심문에서의 구금은 강요되지 않고, 감치에서의 구금 조치를 실행할 수 없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감치자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기본적 원칙들 또한 규정하고 있다(피감치자의 권리를 명확히 고지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 LOI organique n° 2011-410 du 14 avril 2011 relative à l'élection des députés et sénateurs

- 하원 · 상원 선거에 관한 2011년 4월 14일 제2011-410호 조직법률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은 여러 법률규정들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헌법 제25조의 적용에 의한 조직 법률과 관련된 피선거 자격 요건과 피선거권 없음 및 겸직 금지 제도에 관련된 조항 및 헌법 제59조와 제63조에 의한 헌법 위원회에 위임된 선거 소송 관련 조항들이 그것이다. 이에 일환으로, 본 조직법률의 목적은 프랑스 영역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관련한 규정들을 입법화 하는 것이다.

주 내용으로는 첫째, 피선거권 자격 결함에 관한 규정, 둘째,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제도에 관한 규정, 셋째,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규칙들과 선거 일반법에 관한 규칙들과의 연관성에 관한 배려, 넷째, 프랑스 영역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분쟁 규정은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 내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된 일반법 규정들과 조화, 다섯째,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에 관련된 규칙들이다.

- LOI n° 2011-411 du 14 avril 2011 ratifiant l'ordonnance n° 2009-936 du 29 juillet 2009 relative à l'élection de députés par l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2009년 7월 29일 제2009-936호 오르도낭스를 승인하는 2011년 4월 14일 제2011-411호 법률

헌법 제24조는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1월 13일(제2009-39호) 법률은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들에 의해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정하고, 적절한 합법적 선거구획에 관한 규정 및 이외의 기타 국회의원 선거에 필요한 규정들을 오르도낭스에 규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오르도낭스(2009년 7월 29일(제2009-935호))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의석 및 선거구획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 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프랑스 영토 외에서 당선된 경우(일반 선거 제도와 구별되는 상황), 그 국회의원 역시 다른 국회의원처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명을 갖게 되고, 이들에 관한 선거 제도 역시 일반법에 저촉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오르도낭스는 유권자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 선거기간의 통지, 선거자금 및 선거 비용의 상한 설정, 투표 방법 및 투표 방식의 실행(후보자 신고, 선거 선전활동, 투표의 실행 등)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본 국회의원 선거의 특별함을 고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들 역시 채택되었다(외국에서 구성된 다른 투표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고려하고, 후보의 품행, 영사의 선거 목록 수정, 선거 장소의 구성, 후보자의 공식적 선전활동의 방영 등 새로운 규정).

- LOI n° 2011-412 du 14 avril 2011 portant simplification de dispositions du code électoral et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 선거법 규정을 단순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2011년 4월 14일 제2011-412호 법률

의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을 위한 자금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 임무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 규정 및 국회의원 선거 전체를 위한 일반 규정에 관하여 전체적 개정 작업을 가졌다. 본 법률은 총 3개의 장으로서, 제1장 선거 운동 조직, 제2장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제88-227호 법률의 개정, 제3장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으로 제1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 운동을 위한 자금조달 개혁에 관한 숙고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특히 선거투표에서 1% 미만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 운동 경비 장부를 더 이상 기탁할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자신의 임기 또는 업무 기간 동안 당선자가 얻은 소득 금액은 이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을 고려하여, 정치자금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을 현대화 하였다.

5 월

- LOI n° 2011-525 du 17 mai 2011 de simplification et d'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u droit
 - 법의 질을 개선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2011년 5월 17일 제2011-525호 법률

본 법률은 통용되지 않는 대다수의 법 규정들의 폐지, 프랑스 법률의 명확화, 법률안 작성에서의 오류 수정 및 국민에게 부담되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규범의 질 및 국민과 행정 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6개의 절(① 개인 및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 ② 자연인의 신원 보호 및 증명에 관한 규정, ③ 강제 수용소에서의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에 관한 규정, ④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규정, ⑤ 기업 관할권에 관한 규정, ⑥ 지역 단체와 국가 행정의 기능 개선에 관한 규정)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공익단체의 법 제도를 명확히하고 단순화를 목적으로 하여 총 5개의 절(① 공익단체의 창설, ② 공익단체의 조직, ③ 공익단체의 기능, ④ 공익단체의 해산, ⑤ 기타규정)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도시계획 분야의 단순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입법 규정에 의한 시행 법규의 적용 결합의 중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형사 법규의 단순화 및 명확화를 규정하고 있다. 제6장 및 제7장은 법의 형식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프랑스 국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에 관련된 선거 규정과 법의 질의 개선 및 보건 사회 사회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규범의 단순화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장은 헌법 제40조에 따라 법률안의 수리적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제7장은 기타 규정으로 되어 있다.

- LOI n° 2011-575 du 26 mai 2011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 유럽의회 대표 선거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제2011-575호 법률

본 법률은 리스본 조약(유럽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공동체를 창설하는 조약을 개정하는 조약(2007년 12월 13일 리스본에서 체결)에 의해 규정된 유럽의회의 2명의 추가 프랑스 대표의 선거 방법을 정하고,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프랑스 국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의 내용은 우선 2명의 추가 프랑스 대표의 선거 방법으로서, 국민 의회 선거 시, 직접 · 보통 선거의 모든 용인을 얻은 간접선거를 규정하고 있다(이는 유럽의회 대표 선거에 관련된 1977년 7월 7일 제77-729호 법률의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내용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 프랑스 국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참여(유럽의회 의원 선거를 위하여 프랑스 국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는 2003년 이래로 여러 법률안들의 목적이 되고 있다)를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 디지털 책 가격에 관한 2011년 5월 26일 제2011-590호 법률

디지털 혁명은 서적 분야에 있어서도 빠지지 않는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책에 관하여 많은 보고서 및 법률안들이 제안되었고, 본 법률은 그 중 디지털 책 가격, 특히 가격 규제의 유연한 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법률은 유럽의 전자 시장을 고려하여, 2006/123/CE 지침(국내 시장에서의 서비스에 관한 지침)과 2000/31/CE 지침(국내 시장에서의 정보(특히 전자 상품 거래) 회사 서비스의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고 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본 법률의 영역으로서, 지적 내용을 소개하거나 전환 가능성 원칙에 응하고 있는 디지털 형태하의 출판된 책을 대상으로 한다(기술의 계속적 발전으로, 디지털 책의 명확한 정의는 법규명령에 유보한다). 둘째, 디지털 책의 적정한 판매 가격을 정하는 출판사의 의무 및 본 가격을 존중하여 디지털 책을 판매하는 모든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책의 장려를 위한 판매 독점권. 넷째, 출판사와 소매상 간의 상업적 관계의 규정 및 마지막으로 본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형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6 월

■ LOI n° 2011-606 du 31 mai 2011 relative au maintien en fonctions au-delà de la limite d'âge de fonctionnaires nommés dans des emplois à la décision du Gouvernement

- 정부의 결정방식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정년 이상 직무 유지에 관한 2011년 5월 31일 제2011-606호 법률

본 법률 이전에 정부 결정 방식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정년 이상의 현직 유지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였다(①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3개월 내에 공무원 퇴직 정년에 이르는 공무원은 현직 대통령의 동의하에 다음 대통령의 직무 시작일 이후 최대 3개월을 만기로 직무를 유지할 수 있고, ② 직무 청산 기간이 민·군 퇴직연금법 제L.13조에 규정된 기간 보다 짧은 공무원은 그의 신청으로 같은 법 제L.13조에 규정된 업무 청산 기간까지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구제도의 이해가능성 및 일관성의 부재로 인하여, 본 법률은 이러한 특례 규정을 법률에 의해 보다 정확한 범위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이와 같은 특례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직무 및 직무 유지의 이익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최대 2년), 둘째, 직무 유지는 관련자의 동의와 함께 이전의 임명과 같은 형태로 취해진 결정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셋째, 정부는 관련자의 직무를 완수하도록 할 권한을 갖는다.

■ LOI n° 2011-617 du 1er juin 2011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championnat d'Europe de football de l'UEFA en 2016

- 2016년 UEFA 유럽축구 주최에 관한 6월 1일 제2011-617호 법률

본 법률은 적절한 출자에 의하여 프랑스의 스포츠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2016 UEFA EURO를 위하여 건축되거나 개장되는 스포츠 시설들에 대하여 행해지는 실행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한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들은 스포츠 시설의 건축 및 개장 계획에 대하여 원조를 다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1-672 du 16 juin 2011 relative à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à la nationalité

- 이주, 통합, 국적에 관한 2011년 6월 16일 제2011-672호 법률

이주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이주의 제어와 이주민의 효과적 통합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정당하고 확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법률은 첫째, 통합정책을 강화, 둘째, 불법 이주 및 불법 외국인 고용 방지 등 직업 이주의 증진에 관한 새로운 도구를 창설, 셋째,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본국 소환시키는 소송 및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 이주 방지에 관한 유효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적에 대한 내용으로는 ① 본 법률은 민법이 규정하는 외국인의 동화(assimilation) 조건을 명백하게 충족한 외국 거류민을 위하여 프랑스 국적에 빠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② 3개의 유럽 지침("귀국조치" 지침 ; directive 2008/115/CE, "유럽 블루 카드" 지침 ; directive 2009/50/CE, "제재" 지침 ; directive 2009/52/CE)을 국내법에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이주 정책의 목적 이행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③ 불법 체류 외국인의 본국 소환조치에 관한 행정행위와 소송행위 규정(불법 체류자의 추방하기까지의 행정적 유치의 최대 기간 연장 ; 외국인 격리 소송분야에서의 2명의 관할 판사의 규정 있는 개입 방법 규정 ; 불법적 상황에 있는 외국인 유입에 적용될 수 있는 긴급 규정 ; 불법적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긴급 인도주의적 원조에 관한 규정 중 형사 면제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

■ LOI n° 2011-702 du 22 juin 2011 relative au contrôle des importations et des exportations de matériels de guerre et de matériels assimilés, à la simplification des transferts des produits liés à la défense dans l'Union européenne et aux marchés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 전쟁물자 · 준전쟁물자의 수입 및 수출 감독, 유럽연합 내에서 국방에 관한 물품 이동의 단순화 및 국방 · 안전 시장에 관한 2011년 6월 22일 제2011-702호 법률

유럽지침(directive 2009/43/CE ; directive 2009/81/CE)은 국방에 관한 유럽 시장 내에서 식료품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 지침들의 국내법 전환 기간은 각각 2011년 6월 30일, 2011년 8월 20일이다. 따라서 본 법률은 이 2개의 유럽 지침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내용은 첫째, 전쟁물자 및 준전쟁물자의 수입 및 수출 감독과 유럽내에서의 이러한 물건 이동의 단순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유럽 영역 외의 수입 및 수출 감독 조치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이는 간소화(이전 이중의 허가 제도(계약 교섭 및 체결을 위한 사전 승인과 수출 허가)를 통합시킨 하나의 허가로 대체)되었다. 둘째, 방어 및 안전 시장은 복잡 · 민감하여, 특별히 조심성이 필요한 공적 거래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한 공적 거래의 특수성에 적합한 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1-725 du 23 juin 2011 portant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aux quartiers d'habitat informel et à la lutte contre l'habitat indigne dans les départements et régions d'outre-mer
 - 비전형적 주거 지역과 해외 도(道) 및 지방에서의 불법 주거 방지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는 2011년 6 월 23일 제2011-725호 법률

본 법률은 2009년 9월 국회에서 연기하였던 해외 도 및 지방에서 불법 거주의 해소 절차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고 있다. 본 법률은 비전형적 주거의 요건을 정하고 사법 계획에 이를 적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비전형 주거 지역 내에 공권을 효과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 분야의 해외 도 및 지방에의 특별 규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 법률의 구성을 제1절 해외 도 및 지방과 Saint-Martin에 있는 비전형적 주거 지역에 관한 규정, 제2절 해외 도 및 지방과 Saint-Martin에서의 비전형적 주거 방지에 관한 특별 규정, 제3절 기타 규정으로 되어 있다.

7 월

- 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
 - 정신병원 치료대상자의 권리와 보호 및 책임 방법에 관한 2011년 7월 5일 제2011-803호 법률

정신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된 자의 권리와 보호 및 입원 조건에 관한 1990년 6월 27일 제90-527호 법률은 다양한 부(사회복지부, 사법부, 내무부)가 시행하는 감독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 법률은 정신병원 접근에 관한 어려움의 개선과 정신병 치료 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정신병 치료에 접근하기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치료 계속의 보장 ② 통상 병원에의 입원 치료방법과 달리, 오늘날 치료 시술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정신병 관련 치료 및 치료법의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 ③ 병원 밖에서의 치료 시술을 인정함으로써 요구되는 환자의 감독 및 안전 그리고 제3자의 안전의 고려 ④ 환자의 권리, 환자 개인의 자유 존중 보장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서, 정신병 치료에 용이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제안된 주요 조치는 ① 조치의 간소화(일반 절차와 응급 절차(진단서상에 조건 완화)를 통합하여 보다 용이한 조치의 시행, ② 병원에 연락함으로써 치료 신청자가 되는 제3자의 역할의 명확화, ③ 매우 위급한 긴급 상황의 경우, 제3자의 형식적 신청이 없이 치료에 접근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정신치료 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환자의 권리 특히 상소에 관한 권리 및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환자에게 규칙적인 고지, ② 환자에 관련된 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견해를 수용, ③ 매우 민감한 상황(1년 이상의 모든 조치, 제3자의 부재의 경우의 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정신병원의 도(道)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비함 등이다.

■ LOI n° 2011-814 du 7 juillet 2011 relative à la bioéthique

- 생명윤리에 관한 2011년 7월 7일 제2011-814호 법률

본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체의 상품화 및 생물학적 이용에 관한 모든 형태의 거부의 원칙하에 공중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법률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의학 목적 유전자 특성 검사’라는 표제 하에 인간 유전자의 유전자 특성 검사와 그의 유전자 배열상 식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장은 ‘기관과 세포’로서, 혈액, 기관, 조직 및 세포에 적용되는 공중보건법 규정들을 개정한다. 제3장은 출생전 진단, 낙착상 이전의 진단과 산과의 초음파 진단과 태아를 규정한다. 제4장은 의학적(건강상) 이유로 실행되는 임신 중절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5장은 익명 생식세포 기증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6장은 인공수경에 관한 장으로서 그 절차 및 인공수경에 관한 의료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7장은 배(胚) 및 배(胚) 주(株) 세포에 관한 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장은 신경과학 및 뇌의 특수 촬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9장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평가를, 제10장은 회외 영토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제11장은 기타 규정으로 본 법률이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851 du 20 juillet 2011 relative à l'engagement des sapeurs-pompiers volontaires et à son cadre juridique

- 소방구조대원의 자발적 지원과 그의 법적 범위에 관한 2011년 7월 20일 제2011-851호 법률

본 법률은 2009년 창설된 “자원자의 열망” 위원회의 평결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즉 이 위원회는 자원 소방구조대원의 문제제기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고, 자원 소방구조대원에 대한 전반적 사회학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작업적 문제들에 대하여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법률의 목적은 자원 소방구조대원의 새로운 신분 보장과 법적으로 강화된 자원 소방구조대원에 관한 계약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있다.

본 법률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자원 소방구조대원으로서 시민 계약의 법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자원 소방구조대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 제3장은 자원 소방구조대원의 사회적 비호에 관한 규정, 제4장은 자원자 확대에 관한 규정 및 제5장은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852 du 20 juillet 2011 relative à la régulation du système de distribution de la presse

- 출판물의 배급 시스템 규제에 관한 2011년 7월 20일 제2011-852호 법률

본 법률은 “Bichet” 법률이라 불리는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분류와 배급 회사의 지위에 관한 1947년 4월 2일 제47-585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출판물 배급의 협동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본 법률은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었고 실제적 결정 권한이 없었던 출판물 배송 고등위원회에 대하여 法의 법인격 부여와 함께 전문 기관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 전 의무적 조정(調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은 제2의 전문 기관으로서 독립된 ‘출판물 배급 규제국’을 창설하였다. 출판물 배급 규제국의 권한 영역은 분쟁에 관한 규율과 마찬가지로 출판물 배급 고등 위원회가 규정한 표준에도 미치게 된다.

■ LOI n° 2011-867 du 20 juillet 2011 relative à l'organisation de la médecine du travail

- 산업체 촉탁의(囑託醫) 기구에 관한 2011년 7월 20일 제2011-867호 법률

프랑스 정부는 산업체 촉탁의의 업무 규정에 관한 1946년 10월 11일 법률에 의해 확정된 산업체 촉탁의의 임무가 있는 촉탁의는 경제변화와 함께 그의 역할 역시 변화하였고, 이 역할은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현대에, 촉탁의의 행위능력은 의료 종사자들의 구조에 밀접하게 종속되는 반면, 실제 의료종사자 인원은 촉탁의에 유리하지 않는 실정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근로사고, 특히 신체적 직업병(근육-골격의 장애) 또는 정신적 직업병(우울증 등)의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산업체 촉탁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법률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의 신뢰성을 얻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사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체 촉탁의, 전문의 및 의료 기술자 연합으로 조직된 다양한 전공 분야 팀을 일반화, 모든 근로자, 특히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혜택의 부여, 산업체 촉탁의 75%가 50세 이상인 의료 종사자 수의 고려, 직업적 불능의 예방 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산업체 촉탁의의 독립성 강화 및 근로 건강에 관한 업무 관할권의 향상과 근로자 대표에 의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 LOI n° 2011-892 du 28 juillet 2011 tendant à faciliter l'utilisation des réserves militaires et civiles en cas de crise majeure

- 중대한 위기의 경우 예비역(민·군)을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한 2011년 7월 28일 제2011-892호 법률

본 법률은 중대한 위기 사건에서 군·민 예비역의 협력을 추산하기 위함이다. 즉, 국가의 임무 수행의 계속성, 국민의 안전 또는 국가의 존속력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의 경우에 군·민 예비역이 더욱더 자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 부처에 능력 부여를 제안하고 있다. 법률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특별 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민·군 예비역을 동원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명령(décret)으로 수상(Premier ministre)이 발한다. 본 법률은 구성은 제1장 국가 안전 예비역에 관한 규정과 제2장 국가 안전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893 du 28 juillet 2011 pour le développement de l'alternance et la sé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 직업 교육 코스의 순환과 안정감의 개발을 위한 2011년 7월 28일 제2011-893호 법률

본 법률의 목적은 우선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상황과 사회 편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순환교육의 개발을 조장하고자 한다. 특히 본 법률은 실습생에게 학생과 같은 이익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업 학생”카드를 마련하거나 그와 같은 표식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목적은 불안정한 신분을 갖는 자에게 파트타임 및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 단체의 고용 개발을 통하여, 그리고 직업 안정 계약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삶에서의 직업 코스의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본 법률은 제1장 직업순환교육 개발, 제2장 실습 환경, 제3장 고용주 단체의 일자리 개발, 제4장 직업 안정화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894 du 28 juillet 2011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 2011년 사회보장에 관한 예산에 관한 2011년 7월 28일 제2011-894호 법률

정부는 수정사회보장예산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본 법률은 제1부 2011년 징수와 일반 균형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분배 프리미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 납입금 또는 분담금의 사정액의 면제, 할인 또는 문제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상쇄하기 위하여 2011년 첫 예산안 법률로 개시된 예산액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부는 2011년 비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질병, 출산, 사상 분야, 의료보험 비용, 근로사고 분야(직업적 사고), 가족 분야 비용,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 비용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LOI n° 2011-900 du 29 juillet 2011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1
 - 2011년 수정 예산에 관한 2011년 7월 29일 제2011-900호 법률

2011년 수정예산안 법률은 2목적을 갖는다 ; 재산세 개혁과 고용 및 순환직업교육의 지원이다. 재산세 개혁은 재산세의 간소화와 재산세 계산의 적응을 통하여, 세금상한제(bouclier fiscal) 폐지와 부유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에 관하여 구성되었다. 이 개혁은 많은 재산의 증여 및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세로 조달된다. 두 번째 목적은 실습추가분담금(CSA)의 수정과 함께 순환직업교육의 증진을 통하여 고용과 순환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비상업분야에서의 원조계약에 귀속되는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즉, 구직자의 직업교육을 위한 활동 및 새로운 직업안정화계약(CSP)의 시행. 또한 본 법률은 사적활동안전에 관한 국가위원회(CNAPS)의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 역시 포함하고 있다.

- LOI n° 2011-901 du 28 juillet 2011 tendant à améliorer le fonctionnement des maisons dé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politique du handicap
 - 도립(道立) 장애인의 집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규정에 관한 2011년 7월 28일 제2011-901호 법률

본 법률의 첫 목적은 도립 장애인의 집(MDPH)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즉, 장애인의 지위의 보장, 장애인의 개인적 지위의 적응, 목적과 방법에 관한 다년 계약의 마련과 장애인의 경쟁 완화에 대하여 규정한다. 법률은 또한 장애인 정책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편입을 위한 지역 계획에 법적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다. 젊은 장애인에게 건강 보호와 근무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조치의 실행을 이해시키고, 실습생인 장애 노동자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인정하기. 그리고 일시적 또는 계절 시즌에 마련된 숙박시설에 접근가능성 요구 마련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제1장 도립 장애인의 집의 기능 향상과 제2장 장애인 정책에 관한 다양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월

■ LOI organique n° 2011-918 du 1er août 2011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institution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 Polynésie française의 기관 운영에 관한 2011년 8월 1일 제2011-918호 조치법률

본 법률은 Polynésie française 의회의 다수당과 Polynésie française의 지역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구성하기 위한 규정을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법률은 제1편 Polynésie française의 의회 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 제2편 Polynésie française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939 du 10 août 2011 sur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au fonctionnement de la justice pénale et le jugement des mineurs

- 형사재판에서의 시민 참여 및 미성년자 재판에 관한 2011년 8월 10일 제2011-839호 법률

본 법률은 형사재판 수행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향상시키고,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형사재판 수행에 있어서 시민 참여에 관해서는 중죄법원 공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죄법원이 피의자의 유죄 선고에 대한 주요 이유에 관하여 미리 규정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 절차의 개선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미성년자의 인적 특성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적 방책 마련과 미성년자의 형사 재판 내내 관련되는 부모 및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법률 제1편은 형사재판 수행에 있어서 시민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장 시민 배심원에 관한 규정, 제2장 범죄 판단에서의 시민 배심원의 참여, 제3장 범죄에 관한 재판에서의 시민 참여와 중죄법원의 재판 절차의 개선, 제4장 형벌 집행에 관한 결정에서의 시민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은 미성년자 재판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장 총칙, 제2장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의 인적 특성의 참작, 미성년자의 재범 방지의 강화, 미성년자의 범죄 증가에 대한 형사적 해결 방안 및 부모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편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940 du 10 août 2011 modifiant certaines dispositions de la loi n° 2009-879 du 21 juillet 2009 portant réforme de l'hôpital et relative aux patients, à la santé et aux territoires

- 병원을 혁신하고 환자, 건강 및 지역 자치단체에 관한 2009년 7월 21일 2009-879호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2011년 8월 10일 2011년 8월 10일 제2011-940호 법률

본 법률은 공중보건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법률 규정의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환자, 건강, 지역자치단체 관련 병원 (HPST)의 혁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더 나아가 법률의 시행을 더욱 실질적,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몇몇 규정들을 신설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다양한 전공에 의한 건강 전문의로 편성된 통원치료 상호 관련 전문 기관(SISA ; société interprofessionnelle de soins ambulatoire)인 새로운 민간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 또한, 요양원의 법적 지위의 강화, 건강 연대 계약의 강제적 성질의 폐지 및 국가의료보험국이 정한 형태의 계약의 이행, 의료기관의 회계 증명에 관한 국가 회계원의 회계감사위원의 권한 범위를 정하기, 그리고 조류독감(grippe A)의 실험에 의거한 위생예비역 시행 조건의 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9 월

■ LOI n° 2011-1117 du 19 septembre 2011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1

- 2011년 수정 재정에 관한 2011년 9월 19일 제2011-1117호 법률

유로(EURO)를 화폐로 사용하는 유럽 회원국은 유럽 금융의 안전을 목적으로 유럽 재정 보조제도의 메카니즘의 재정립을 요구하였고, 국제협약에 따라 FESF(유럽금융안전기금 ; Fonds européen de stabilité financière)가 마련되었다. FESF는 유로를 화폐로 사용하는 회원국에게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 지원 금액은 회원국 전체가 보증하게 된다. 유로화 지역의 금융 억압의 지속은 유로를 화폐로 사용하는 국가 원수 및 수반들로 하여금, FESF 개입 범위에 대하여 2단계로 강화시켰다. 즉, 제1차 시장에서의 효과적 재정 보조 금액의 인상과 개입 권한, 그리고 FESF 개입 형태를 유동화하고 FESF 재정 보조 요건의 지속적 향상이다. 본 법률은 이러한 국제상호협약의 내용에 따라 프랑스 2011년 재정 법률의 수정(국가의 예산 및 재무 대차금액의 계산,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의 적자의 예측과 공채에의 영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재정의 규형에 관한 일반 요건이라는 표제하에 제1편 자원에 관한 규정과 제2편 자원과 세금 부담의 균형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공공정책의 수단과 특별 규정이라는 표제하에 제1편 2011년 예산액의 승인, 제2편 퍼머넌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월

11 월

12 월

■ LOI n° 2011-1749 du 5 décembre 2011 relative au plan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e Corse

- Corse의 정비와 지속적 발전 계획에 관한 2011년 12월 5일 제2011-1749호 법률

본 법률안은 다음 3개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도시정비 분야에서 Corse의 구성 자료를 강화하여 이 계획의 사명을 명확히 하기, 둘째, 환경그린 규정들을 통합하고, 도시계획 분야 표준 단계에 등록된 계획 방법을 명확히 하기. 마지막으로 특히 Corse 국민의회 내부의 기본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만들어 계획의 구상 절차를 개선하고 단순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법, 환경법, 도시계획법 등을 개정한다.

■ LOI n° 2011-1843 du 8 décembre 2011 relative aux certificats d'obtention végétale

- 식물취득자격증에 관한 2011년 12월 8일 제2011-1843호 법률

본 법률의 목적은 첫째, 식물취득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를 규정하여, 오늘날 이 분야에서 인정되는 현실 상황에 프랑스 법을 조화롭게 맞추고, 둘째, 식물획득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프랑스에 비준하기 위하여, 프랑스 법과 유럽법·국제법을 조화시키기. 마지막으로 농장의 종자에 관한 법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은 지적소유권법과 농업·농업법을 개정 및 보충하고, 이미 교부된 식물획득자격증(COV)에 새로운 식물획득제도를 적용한다. 법률 구성은 제1장 지적소유권법을 개정·보충하는 규정, 제2장 농업·식품을 위한 프랑스 식물유전자 자원의 보전, 제3장 다양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1862 du 13 décembre 2011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s contentieux et à l'allègement de certaines procédures juridictionnelles

- 소송 분배와 특정 재판절차의 완화에 관한 2011년 12월 13일 제2011-1862호 법률

본 법률은 인접 관할권의 강조하고 특정 소송에서 특별 관할권을 설정하여 사법 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파리에 인류에 대한 범죄를 담당할 특수 사법기관을 설치, 둘째, 합의 이혼 절차는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지 않는 부부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변호사는 재판절차 초기에 의뢰인과 변호사 선임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법무장관(Garde des Sceaux)이 발하는 금액 이상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총 14개의 장으로, 제1장 인접 관할권의 폐지와 인접 판사의 유지, 제2장 급료 압류절차의 간소화 규정, 제3장 지불명령 절차의 지방법원에의 확대와 지불명령 유럽 소송 및 소액사건 해결에 관한 유럽 소송제도, 제4장 재결권을 가지는 판사의 전문화, 제5장 지적소유권법 분야 지방법원의 전문화, 제6장 지방법원과 구()법원 간의 관할권 이전, 제7장 가족 분야 소송을 규제하는 규정의 수정, 제8장 특수 재판권 중 형사 분야에서 특정 재판의 재편성, 제9장 간소화된 형사 소송의 전개, 제10장 군사 재판 관할권의 수정, 제11장 사법전문가에 관한 규정, 제12장 금융 재판권에 관한 규정, 제13장 행정 재판권에 관한 규정, 제14장 다양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LOI n° 2011-1898 du 20 décembre 2011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pour copie privée

- 사적 복제에 대한 보수에 관한 2011년 12월 20일 제2011-1898호 법률

이전 법률은 저작물의 재생산권에 관하여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자에게 인정되며, 이에 따른 예외 규정들 역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등 기술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 등 권리소지자와 소비자 간의 이익은 불균형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입법자는 1985년 7월 3일 제85-660호 법률이 저작자와 저작 인접권 소지자가 저작물의 재생산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그들이 입은 피해만을 금전보상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데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적소유권법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본 법률은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법률의 내용은 첫째,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 소지자의 사전 허락 없이 실행된 저작물 복제에 의한 저작자 등을 위한 보수를 규정한 위 법률(제85-660호 법률)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명확성 원칙'을 지적소유권법에 규정하는 것이고, 둘째, 저작권자 및 저작 인접권 소지자의 보수의 보장과 창작에 대한 보조 활동, 실황 연극 방영에 대한 보조 활동 및 사적복제에 대한 보수를 통하여 재정을 보조 받은 예술가의 직업연수에 대한 보조 활동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의 구성은 제1장 지적소유권법을 개정하는 규정과 제2장 임시 규정을 두고 있다.

■ LOI n° 2011-1906 du 21 décembre 201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2

- 2012년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2011년 12월 21일 제2011-1906호 법률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법률은 매해 사회 계정 안정에 관한 일반조건들을 확정하고 있다. 본 법률은 2011년 사회보장관련 제도의 의료, 노후, 가족, 노동 등 각 분야의 회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2012년 조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조처의 내용으로는 ① 알코올에 관한 세금 인상, ② 제약회사에서 징수되는 분담금의 인상, ③ 특정 건강상품의 가격 인하, ④ 휴업수당 계산의 조화, ⑤ 약사 보수 형식의 개혁, ⑥ 편부모 또는 장애 부모를 위한 어린이 보호 보조금의 인상, ⑦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 LOI n° 2011-1940 du 26 décembre 2011 visant à instaurer un service citoyen pour les mineurs délinquants

- 비행 미성년자를 위한 시민 서비스 설치에 관한 2011년 12월 26일 제2011-1940호 법률

본 법률은 비행 미성년자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고, 법률 내용은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복귀와 그들이 처해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주요 목적과 함께 현행 시스템에 대하여 16세의 비행 청소년을 위한 시민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방어국의 사회동화기관 서비스 계약을 신설함으로써 비행 소년에 관한 1945년 2월 2일 오르도낭스를 개정하고 있다.

■ LOI n° 2011-1977 du 28 décembre 2011 de finances pour 2012

- 2012년 재정에 관한 2011년 12월 28일 제2011-1977호 법률

2012년 재정에 관한 법률은 공공적자 감소를 최우선하는 과제로 뽑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법률은 공공적작의 3% 이하까지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소득에 대한 예외적 세금을 신설하고, 지역투자와 에너지 성능 향상 분야 특정 원조를 합리화 한다. 그리고 설탕 첨가 음료수에 관한 세금, 고도의 임대료에 관한 세금 등 행위 목적 과세 개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LOI n° 2011-2012 du 29 décembre 2011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sécurité sanitaire du médicament et des produits de santé

- 약품 및 건강 상품에 관한 위생안전 강화에 관한 2011년 12월 29일 제2011-2012호 법률

본 법률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진행에 노력하는 건강상품의 위생안전시스템을 강화할 목적을 가지고, 공중위생법과 사회보장법을 개정한다. 본 법률의 내용은 첫째, 이해의 대립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사회보장을 담당하는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소속된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 본 전문가는 이해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해관계의 개념은 가족관계를 뜻한다). 둘째, 프랑스건강상품위생안전국(AFSSAPS ; Agence française de la sécurité sanitaire des produits de santé)을 대체하기 위하여 국립제약품·건강상품안전국(ANSM ; 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u médicament)을 창설한다. 본 기관은 강화된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며, 약물의 부작용 감시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셋째, 약의 시판 승인 후 추적 검사를 강화한다. 본 법률은 제1편 이해관계의 투명성, 제2편 건강상품 거버넌스(Gouvernance), 제3편 인간에 사용되는 약품, 제4편 의학 관련 조처, 제5편 기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독일 —

1 월

- Gesetz zur Modernisierung der Regelungen über Teilzeit-Wohnrechteverträge, Verträge über langfristige Urlaubsprodukte sowie Vermittlungsverträge und Tauschsystemverträge
 - 일시거주권계약, 장기휴가에 관련된 상품에 관한 계약, 중계계약 및 상호교환계약에 관련된 규율의 재정비를 위한 법률

본 법률은 일시거주권계약, 장기간 휴가제품에 관련된 계약, 재판매계약 및 교환계약의 특정한 측면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 2008/122/EG(2009.01.14)의 적용을 위한 것이다. 일시거주권계약은 독일 휴가여행자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위한 주거시설이나 호텔을 매년 사용하는 권리가 언급될 수 있다. 유럽연합 지침을 통하여 각 회원국들은 규정들을 지침에 조화시킬 것과 그를 통하여 소비자들을 부당한 공급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근거로 민법 제481조부터 제486조의 규정들은 민법 제481조부터 486a조의 규정들로 대체된다.

- Gesetz zur Aufhebung des Freihafens Hamburg
 - 함부르크 지역의 자유항구 지정 폐지를 위한 법률

함부르크 자유항구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필요성이 경제참여자 및 관세행정의 행정적·개인적 비용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관세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자유항구로 지정되지 않은 기타 항구와 동일한 지위가 함부르크 자유항구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회는 함부르크 자유항구의 폐지를 의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자유항구에 속하였던 영역이 경제적으로 더 잘 이용될 수 있으며, 현재 도로교통에서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월

-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Fahrzeugen zum Straßenverkehr (Fahrzeug-Zulassungsverordnung – FZV)
 - 도로교통에서의 자동차 운행 허가에 관한 시행규칙

본 규정을 통하여 도로교통허가에 관한 규정(StVZO)의 일부규정과 이제까지의 자동차등록규정이 순차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전 연방적인 요건규정의 개정이 이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이 개정들은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허가규정과, 터널에 관한 규정 그리고 타국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특별규정들과 관련된다.

- Er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über meldepflichtige Tierkrankheiten
 - 보고의무가 있는 동물질병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첫 번째 시행규칙

보고의무 있는 동물질병에 관한 시행규칙을 통하여 검역기관의 진단결과가 행정청에 보고되어야만 하는 동물질병이 결정된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공시되지 않은 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의 관찰을 위한 것이다. 보고의무 있는 동물질병의 목록에서는 또한 과거의 경험상 혹은 그것의 생태적 의미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도 포함된다. 보고의무 있는 동물질병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유럽공동체 위원회나 국제기구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없는 질병도 포함된다.

3 월

- Siebtes Gesetz zur Änderung des Zweiten Buches Sozialgesetzbuch
 - 제2 사회법전 개정을 위한 일곱 번째 법률

본 법률에 따라 연방정부는 25.1% 범위에서 Hartz-IV 대상자의 주거 및 난방을 위한 생활지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하여 매년 총 2.5 백만 유로의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해소된다. 하지만 바덴뷔템베르크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 적용 되는데, 바덴뷔템베르크 주에 대하여 28.5%, 라인란트팔츠주에 대하여는 34.5%의 연방정부 분담이 책정된다.

■ Gesetz zur Ermittlung von Regelbedarfen und zur Änderung des Zweiten und Zwölften Buches Sozialgesetzbuch • 통상필요비 조사와 제2 및 제12 사회법전 개정을 위한 법률

연방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9일 판결을 통하여 입법자에게 제2사회법전과 제12사회법전에 따라 책정되는 통상비를 헌법에 합치하도록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 통상비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의 수입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제2사회법전의 산정기준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집중적 후원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보충되어진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된다.

- 아동 및 청소년의 후원
- 제2사회법전 및 제12사회법전에 따른 통상비의 헌법합치적 조사 및 산정
- 제2사회법전에서의 주거 및 난방비용의 적정한 산정
- 제2사회법전에서의 처벌구성요건의 현실화 및 간소화

■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steuer- und des Stromsteuergesetzes • 에너지세 및 전기세법 개정을 위한 법률

에너지세법은 2006년도 8월 1일 발령되었다. 연방정부 기후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본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용이한 법적용과 시민과 기업을 위한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법률은 명확한 규정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 본 법률은 에너지생산에 관련된 지속적인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유럽연합구성국들 간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상이한 조세부과에 대처하고 선박에 대한 친환경적 전기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개정 사항을 포함한다.

- 친환경적 천연가스의 확대공급은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세금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내륙에서의 선박으로의 전기공급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세금감면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체연료사용에 있어서의 세금부과는 에너지함량을 기준을 통하여 단일화된다.
-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공제금액의 한도 없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Gesetz zur Umsetzung der Zweiten E-Geld-Richtlinie • 두 번째 전자화폐지침의 적용을 위한 법률

유럽연합의 두 번째 전자화폐지침상 감독법적 규정들은 전자화폐제도의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 특별한 허가절차와 기타규정들을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의 두 번째 전자화폐지침의 적용을 통하여 특히 금융업무감독법, 자금세탁방지법, 상법과 금지청구소송법이 개정된다. 특히 지침 도입 후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독일국민경제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율이 수정되어진다.

- Gesetz zur Stärkung des Anlegerschutzes und Verbesserung der Funktionsfähigkeit des Kapitalmarkts (Anlegerschutz- und Funktionsverbesserungsgesetz)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개선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금융위기 후에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본 법률은 투자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자문인 확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산투자운용기관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투자설계사, 경영 대리인 그리고 준법감독관은 등록 의무에 따라 금융감시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고 투자자를 위한 자문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상품정보안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획득 가능성도 향상되어진다. 이외에 투자보호강화법률은 투자자 보호와 아울러 금융시장 기능의 향상을 위한 규율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개방형 부동산펀드에서 최단기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 Gesetz zur Neuregelung des Post- und Telekommunikationssicherstellungsrechts und zur Änderung telekommunikationsrechtlicher Vorschriften
 - 우편 및 통신업무안정화를 위한 법률의 새로운 규율과 통신업무안정화법상의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국가 및 정부의 기능 유지, 효율적 행정업무, 재난 극복 그리고 국가방위를 위한 기초적 우편 및 통신업무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은 특히 기존의 기반시설과 업무수행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자연재해, 테러공격, 사보 타지행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4 월

- Gesetz zur erbrechtlichen Gleichstellung nichtehelicher Kinder, zur Änderung der Zivilprozessordnung und der Abgabenordnung
 - 혼외자의 상속법상 동등한 지위와 민사소송법 및 조세기본법 개정을 위한 법률

혼외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69.08.19)에서 1949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혼외자에 대하여 법적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혼외자와 적출자는 상속법상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인권에 관한 유럽재판소는 2009년 5월 28일에 현행 독일법에서의 혼외자의 상속법상 권리에 관한 위의 특별규정이 유럽연합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본 법률은 유럽재판소 결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율을 포함한다.

- 장래에는 1949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모든 혼외자는 적출자와 상속법상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1949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혼외자는 법적인 상속자로서 상속한다.
- 본 법은 인권에 관한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 후에 발생한 피상속인 사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2009년 5월 29일 이전에 이미 부가 사망한 혼외자에 대하여는 확고한 소급금지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혼외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69.08.19)에서의 특별규정에 따른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국가가 상속재산을 스스로 상속한 사례에 대하여는 예외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에 국가는 국가에 귀속된 상속재산을 반환한다.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kämpfung der Geldwäsche und Steuerhinterziehung
(Schwarzgeldbekämpfungsgesetz)

- 자금세탁 및 세금포탈 대책 향상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자진신고에 의한 처벌감면 제도가 세금포탈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일 국민경제영역에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모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법률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강구한다.

장래에는 자발적 신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모든 세금유형의 조세근거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만 처벌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처벌면제 효과 발생에 대한 예외 규정이 강화되어진다. 처벌면제 효과가 제외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세무소 직원이 납부 세금 심사를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에 자발적 신고 기회가 상실되었지만, 앞으로는 심사통지가 이루어지만 자발적 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Bundesfreiwilligendienstes

- 대체복무형태로서 연방자원봉사근무 도입을 위한 법률

새로운 연방봉사활동을 통하여 35,000 명이 사회적, 생태 문화적 영역이나 사회통합 그리고 재해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활동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8개월 동안 지속되나,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24개월 까지 연장될 수 있다. 봉사업무는 모든 연령에서 가능하다. 연방봉사활동업무는 국방의무의 사회대체복무로 인정된다. 연방봉사활동업무는 또한 종래의 사회적대체복무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 Verhinderung von Missbrauch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첫 번째 법률

본 법률은 정기근무근로자가 해고되고 그 직후 혹은 짧은 기간 후에 시간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사업장 혹은 동일한 그룹의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전문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또한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2008/104/EG를 독일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회전문조항과 함께 본 법은 유럽연합의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의 수용으로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율을 포함한다.

- 근로자파견 대한 허가의무가 장래에는 단지 영업상 파견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을 경제적 활동의 일부로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간제근로자는 투입사업장에서 향상된 권리를 갖는다.

사용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장래에 인원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예컨대 영업장내 유치원이나 구내식당과 같은 공동편의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만 한다.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28/EG zur Förderung der Nutzung von Energie aus erneuerbaren Quellen (Europarechtsanpassungsgesetz Erneuerbare Energien – EAG EE)
 -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2009/28/EG의 적용을 위한 법률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지침 2009/28/EG에 따라 독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더욱 확대하여야만 한다. 2020년까지 적어도 18%의 에너지 소비자에 대하여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럽연합지침은 지금까지 독일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수단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에 대하여 그 생산증명을 위한 전자식 기록기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또한 2012년부터 공공시설은 난방에 있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에 대하여 모범적 시설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지침 2009/28/EG에 따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독일 국내법, 특히 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된다. 또한 유럽지침의 적용을 통하여 에너지 생산증명을 위한 전자식 등록기 설치에 관한 근거가 규정되고, 또한 2012년부터 근본적으로 개조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의무가 규정된다.

5 월

- Gesetz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G) Nr. 4/2009 und zur Neuordnung bestehender Aus- und Durchführungsbestimmungen auf dem Gebiet des internationalen Unterhaltsverfahrensrechts
 - 유럽연합규정 4/2009호 시행과 국제 부자관계인지소송법상 기존 시행규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유럽연합의회는 2008년 12월 19일 부자관계인지소송에서의 관할, 적용법률, 판결의 승인과 집행 그리고 협력에 관한 유럽연합규정 4/2009호를 의결하였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본 법률을 통해 이 규정상의 의무를 완전히 국내법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 시행규정들이 제정되어진다. 또한 법률 간의 상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정들이 변경되어진다. 자와 가족구성원의 부자관계인지청구권의 국제적 주장에 관한 해외송달절차 또한 본 법률에 통합되어지고 이를 위하여 기타 보충적 시행규정들이 제정된다.

-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VL-Gesetzes

-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연방관청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첫번째 법률

가축과 동물성 물질을 원료로 하는 생산물 그리고 사료제품들의 제3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의한 감독제도와 제3국에 의한 개별적 영업감독제도의 심사에 있어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연방행정청의 전문인력을 통한 준비, 시행 및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업무는 동물성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식품과 사료제품의 수출문제에 대하여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가축과 동물성 원료로부터의 생산물 그리고 사료제품들의 제3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에 관한 연방행정청의 조언과 협력이 특히 필수적이다 할 것이다. 본 법률은 이러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6 월

■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versorgungs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 연방원호법과 기타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

연방원호법과 기타 사회보상법상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을 통하여 이제 사회보상법과 장인법에 따른 의료적 감정활동에 관한 준거가 마련된다. 본 법에 규정된 준거를 기초로 보상되는 건강상 손상이 판단되어진다. 또한 기존에 법에서 사용된 “수입능력의 감소”라는 용어는 “손상결과의 정도”로 대체되어진다. 왜냐하면 “손상결과의 정도”라는 용어가 손상의 원인과 보상될 건강상 결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und anderer Gesetze

- 도로교통법과 기타 법률 개정을 위한 세 번째 법률

화재방지, 재난방지 및 구조활동에 관한 중앙 통제소는 소방대원에 의한 사고차량 탑승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플랜스부르그 자동차 관리국의 차량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65/EG zur Koordinier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betreffend bestimmte Organismen für gemeinsame Anlagen in Wertpapieren (OGAW-IV-Umsetzungsgesetz – OGAW-IV-UmsG)

- 유가증권 공동투자를 위한 특정 기구와 관련된 법규정 및 행정규정의 조화를 위한 유럽연합지침 2009/65/EG의 적용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새롭게 규정된 투자기금지침 2009/65/EG가 독일법에 적용된다. 본 지침은 투자기금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펀드상품의 제공자에서 경쟁력 있는 시장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의 적용을 통하여 펀드투자자에 대하여 EU 전역에서 통일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표준이 제공된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지침을 통하여 규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조세법상 조치 또한 강구한다.

■ Gesetz zur Koordinierung der Systeme der sozialen Sicherheit in Europa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 유럽 사회보장연금제도의 조화와 기타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사회보장연금제도의 조화와 이 시행규칙 시행방법 결정을 위한 유럽연합규정 도입을 규정한다. 유럽연합규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된 연금수령자는 장래에 그의 해외 연금을 고려하여 연금지급액이 결정된다.

■ Sieb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일곱 번째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주정부는 자원 소방대, 구조대, 기술적 지원단체와 그 밖에 재해방지를 위한 단체의 구성원에게 앞으로 7.5톤까지의 지원차량운행을 위한 특별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에 운전자가 이미 2년 이상 B등급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지원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험에서 그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요건이 된다. 업무수행과 시험을 공인운전면허교육관이나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Gesetz zur Bekämpfung der Zwangsheirat und zum besseren Schutz der Opfer von Zwangsheirat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aufenthalts- und asylrechtlicher Vorschriften

- 강제결혼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기타 체류법 및 망명법상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

강제결혼은 이미 독일에서도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강제결혼에 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어야 하며 모든 강제결혼의 불법성에 대한 공공의 자각이 생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제결혼의 불법성에 대한 자각은 개개인 그리고 사회적 부문에서 생겨야 하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강제결혼에 관한 사회적 대응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현행법상 피해자를 강제결혼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제결혼으로부터 형성되는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해외국적자인 피해자에서 발생하는 체류허가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혼인관계해소의 자유라는 법익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은 좀 더 효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와 아울러 본 법률은 체류허가법과 망명법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또한 목표로 한다. 외국인이 통합프로그램 참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법에 따를 때 체류허가 연장에 관한 결정에서 고려되어진다. 기존 법률의 적용을 실무에 있어 개선하기 위하여 법 규정의 보충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본 법률은 형법상 강제결혼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구성요건 창설을 예정하고 있다.

혼인에 관한 강요나 피해자에게 혼인관계 성립을 강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체류와 관련된 사실적이며 법적인 보호로부터 방치한 사례가 포함된다.

체류허가 연장 전에 당해 외국인이 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외국인행정청의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아울러 통합프로그램시행규칙에 규정 되어있는 정보이전에 관한 규정들이 이제 체류허가법률에서 규율된다. 체류허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관 상 혼인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혼인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기존 2년).

■ Gesetz zur Änderung des Vormundschafts- und Betreuungsrechts

- 후견인법과 부조법 개정을 위한 법률

중상해에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사건들의 제도적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서 관청후견인제도 실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연방법무부에 의하여 선임된 실무기관이 “아동생활의 위태화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조치(독일민법 제1666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아동학대 및 유기 사례의 수가 많기 때문에 관청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개인적 접촉은 다만 후견권의 인수 시에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무상의 관행은 단지 재산에 관한 후견뿐 아니라 인격적 후견에 대하여 책임지는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다. 부조법에서도 역시 특히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부조자와 피부조자 사이의 개별적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법원 또한 이를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법률의 목적은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개인적 접촉을 통한 인격적 후견·부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장래에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개인적 접촉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이에 대한 법원의 철저한 감독 등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7 월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Umwandlungsgesetzes

- 사업재편법 개정을 위한 세 번째 법률

본 법률은 유럽연합지침 2009/109/EG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된 유럽연합지침은 주식회사가 관련된 합병·분할 및 합자회사와 유한회사가 관련된 합병·분할에 관하여 규율한다. 개정된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은 사업재편조치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에 속하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보고의무와 정보제공의무에 적용되며 동시에 사업재편과 관련되어 이익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Steinkohlefinanzierungsgesetzes

- 석탄광산업 재정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된 석탄광산업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조항”을 삭제할 것을 규정하였다. 2007년 석탄광 산업 재정지원 법률은 2018년 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석탄광산업의 사업을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석탄광산업 재정지원 법률은 연방정부의 보고를 근거로 2012년에 독일의회의 위원회를 통한 사업종료 여부의 심사를 정하고 있는 개정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 법률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을 바탕으로 하는 석탄광산업의 계속적 사업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 Gesetz gegen den Handel mit illegal eingeschlagenem Holz (Holzhandels-Sicherungs-Gesetz – HolzSiG)

- 불법벌채 목재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본 법률은 유럽연합과 불법적 벌목 방지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가나, 콩고, 카메룬,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로부터의 목재 수입에 관한 국가적 통제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 협정의 취지에 따라 협정체결국은 오직 허가된 벌목에 의하여 생산된 목재만을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 및 인가제도를 도입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협정체결국은 산림업 부문 및 불법벌목 금지 방지를 위한 규정의 개선된 법집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벌목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 수입창출 정책이 지원된다.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grundlagen für die Fortentwicklung des Emissionshandels

- 배출거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근거 정비를 위한 법률

유럽연합의 배출거래제도는 기후보호정책의 핵심적 제도이다. 본 법률을 통하여 이 제도의 장래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국가적 법적근거가 창출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항공운항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이 배출거래제도에 포함되며, 각 국내법적 배출거래제도의 조화로운 규율의 근거가 마련되고, 전체배출량의 감축정도가 설정되며, 기타의 온실가스와 산업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의 배출거래제도로의 포함이 예정된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es und des Schwarzarbeitsbekämpfungsgesetzes

- 불법노동방지법률과 노동자파견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은 파견노동자와 그에 유사한 정규직노동자 사이에 임금에 있어서 평등처우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이제 관세행정청이 법으로 정해진 파견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또한 파견노동자 사용기업과 파견기업은 최저임금규정의 준수 여부 사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인 노동기간을 기준으로 독일어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Gesetz zur Förderung des Klimaschutzes bei der Entwicklung in den Städten und Gemeinden

- 도시 및 지방단체의 발전에서 기후보호 장려를 위한 법률

기후보호에 관한 일반조항이 건축법과 계획법에 규정된다. 이에 따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선택가능성이 확대되고 풍력발전에너지의 사용 가능성이 확대되며, 무엇보다도 태양광발전 시설의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해진다.

■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09/4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6. Mai 2009 zur Vereinfachung der Bedingungen für die innergemeinschaftliche Verbringung von Verteidigungsgütern

- 군수물품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운송에 관한 요건 간소화를 위한 유럽연합지침 2009/43/EG(2009.05.06) 적용을 위한 법률

이 유럽연합지침의 목적은 제1편 A장에서 명시된 유럽연합 내에서의 군수물품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지침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유럽연합의 가입국가들이 제1편 A장에서 명시된 군수물품의 특정한 운송을 용이하게 하는 일반적 허가를 발령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rahmens für die Förderung der Strom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n

-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의 전기생산 장려에 관한 법 적용 영역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연방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에너지정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생산량의 비율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증가한다.

- 2020년 까지 35%
- 2030년 까지 50%
- 2040년 까지 65%
- 2050년 까지 80%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에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은 전기생산부분에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전기생산이 향후 10년 내에 35% 내지 4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된다.

■ Gesetz über Maßnahmen zur Beschleunigung des Netzausbau Elektrizitätsnetze

- 송전로 확충 가속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최초로 전국적 범위에서 고압전류 송전로 확충 계획이 통일적으로 수립된다. 이것은 각 송전로 사업자의 개별적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법은 또한 적극적인 공공의 참여로 인하여 가능한한 포괄적으로 투명성을 재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연방정부는 본 법률을 통하여 전 독일 연방에서의 고압송전망의 신속한 구축을 목표한다.

■ 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tomgesetzes

-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열세번째 법률

본 법률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독일 원자력발전소의 점진적이며 차등적인 폐지를 규율한다. 본 법률을 통하여 핵발전소의 발전가동이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8 월

9 월

■ Gesetz zur Umsetzung der Meeresstrategie-Rahmenrichtlinie sowie zur Änderung des Bundeswasserstraßengesetzes und des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gesetzes

- 유럽연합 해양전략기본지침의 적용과 연방수로법 및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을 통하여 유럽연합지침 2008/56/EG(2008.06.17)이 독일법에 적용된다. MSRL(Meerestrategie-Rahmenrichtlinie, 유럽연합 해양전략기본지침)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본 지침의 목적은 구성국가들이 2020년까지 양질의 해양수 상태에 도달하고 또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MSRL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국가간 서로 상이한 정치적 조치, 협약 그리고 법적조치에 관하여 통일성 있는 실행에 기여 한다. MSRL은 구성국가의 조치나 협약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MSRL의 규율은 한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공동의 보호조치의 범위 내에서 공동의 목표에 부합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보충적인 공동의 법적규율 영역을 제시한다. 공공의 보호조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관리기본지침에 근거 한다. MSRL의 관리지침과 절차의 적용을 위하여 수자원관리법, 연방자연보호법,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및 연법수로 법상의 규정들이 개정될 것이 요구된다.

■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Übernahme von Gewährleistungen im Rahmen eines europäischen Stabilisierungsmechanismus

- 유럽안정메커니즘 부문에서 보증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법률

본 법률을 통하여 독일은 유럽안정메커니즘을 위하여 기능한다. 유럽연합은 개별 유로국가들과 협력하여 유로화위기에서 유로화를 포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5백만 유로의 공동 금융구제조치 발동하기를 원한다. 독일은 123백만 유로의 보증 분담을 통하여 유로화 보호조치를 지원하다. 나머지 금액은 유럽위원회의 긴급기금에서의 신용차관 60만 유로와 유로화존의 구성국가들이 각각의 국내총산량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유럽연합의 5백만 유로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하여 250만 유로가 충당된다. 따라서 유로화 안정화조치를 위하여 총 750만 유로가 지원된다.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Handelsperiode 2013 bis 2020 (Zuteilungsverordnung 2020 – ZuV 2020)
 - 온실가스배출거래권 할당에 관한 시행규칙: 할당기간 2013-2020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거래의 시행 후 8년 동안 유럽연합의 구성국가들은 배출권의 무료 할당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 독자적 권한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제까지 이러한 할당규율에 관하여 독자적인 할당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온실가스배출거래제도는 전 유럽에서 더욱 강력하게 조화되어진다. 이러한 경향은 연립연합위원회가 2011년 4월에 의결한 할당규율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유럽에서는 지난 거래기간과 비교하여 배출거래권의 무료 할당이 현저히 줄어든다.

2013년부터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하여 생산과 관련된 배출에 기반한 할당이 이루어진다. 이 소위 “생산과 관련된 기준”은 전 유럽연합에서 확정되었고 유럽에서 10%의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부터 도출되어진다. 따라서 비효율적 생산시설은 장래에 추가적으로 배출허가권을 구입하여야만 한다. 국제적 경쟁에서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 위험이 높은 지역의 시설들에 대하여는 할당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 외의 다른 시설에 있어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량의 30%가 축소된다.

10 월

11 월

12 월

- Gesetz zur Stärkung der Finanzkraft der Kommunen
 -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률

이 법률은 지방의 재정상태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2012년과 2013년에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생계보장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더 많은 재정을 보조한다. 나아가 2014년도 부터는 전액을 부담할 것이다.

■ Gesetz zur Vereinbarkeit von Pflege und Beruf

- 가족부양과 직업활동의 조화를 위한 법률

이 법을 통하여 가족구성원 부양에 대한 국가적 장려와 함께 구성원을 부양하는 자에게 2년 내의 기간 동안 단축된 업무 시간에서 직업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국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단축된 업무시간에서 손실되는 임금을 보전하고 이를 통하여 부양자와 함께 부양기간동안의 재정적 곤란함을 부담한다.

■ Gesetz zur Aufhebung von Sperrregelungen bei der Bekämpfung von Kinderpornographie in Kommunikationsnetzen

- 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에 있어서 사이트 봉쇄규정 폐지를 위한 법률

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 내용을 최대한 빨리 삭제시키기 위하여 현재 경찰기관과 비정부 기관 등의 공동대응이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대응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공동대응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통신망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접속을 어렵게 하고자 했던 사이트 봉쇄조치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

■ Gesetzzur Stärkung eines aktiven Schutzes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Bundeskinderschutzgesetz – BKiSchG)

- 연방아동보호법

본 법률 제1조에 의하여 아동보호에 있어서 협력과 정보공유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재정된다. 이 법률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성장을 어렵게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부모가 어떻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아동보호에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공유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조건들을 설정한다. 나아가 본 법률은 아동의 정상적 성장에 위협이 있는 경우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의사나 교사를 통한 정보공유가 용이해지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효율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일본 -

1 월 ~ 3월

4 월

■ 海外の美術品等の我が国における公開の促進に関する法律

-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에 있어서의 공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미술품 등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조치를 둘과 동시에 국가의 미술관 등의 시설정비 및 충실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전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

1. 국내에 공개되는 해외 미술품 중,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관점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공개를 원활히 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 될 경우와 그 외 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부과학대신이 외무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가는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미술관 등의 시설정비 및 충실과 당해 시설에서의 감상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3. 국가는 해외 미술품 등의 국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와 그 외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家畜伝染病予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최근의 가축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가축방역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고제도와 구제역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전염가축 및 전염이 의심되는 가축 이외의 가축을 도살처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입국 시의 방역조치 확대 등을 강구할 필요에서 개정.

1. 국가와 도도부현의 역할분담

- 농림수산대신은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에 관하여 방역지침(예방 및 만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침) 및 긴급방역지침(만연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할 시의 지침)을 작성하도록 한다.
- 도도부현 지사는 상기의 방역지침 및 긴급방역지침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만연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이 경우에 시경총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역지침

- 농림수산대신은 최신의 과학적 자료나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최소한 3년마다 방역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한다.
- 이 경우 농림수산대신은 방역지침의 작성·변경 등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3. 바이러스 침입방지 조치에 관하여

- 국가의 가축 방역관은 해외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거나 그 휴대품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화 방지에 있어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소독 및 그 외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여야 한다.
- 가축 소유자는 매년 사육상황·위생관리 상황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등의 내용이 주된 개정 사항이다.

■ 展覧会における美術品損害の補償に関する法律

- 전람회의 미술품 손해보상에 관한 법률

뛰어난 미술품을 보다 많은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미술품의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게 함으로써 질 높은 전람회가 널리 전국에서 개최되도록 국가가 지원함을 그 취지로 한다.

미술품의 평가액 상승, 테러 및 자연재해 등에 의하여 전람회 미술품의 보험료가 급등. 경기악화에 따라 민간이 주최하는 대규모 전람회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포기하는 케이스가 증가. G8에서는 러시아와 일본 이외에, 또 EU 가맹국의 약 6할에 해당하는 국가가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정.

1. 미술품의 손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대상이 되는 전람회는 국민이 미술품을 감상하는 기회확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서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규모, 내용 그 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대상이 되는 전람회 주최자는 당해 전람회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일 것으로 규정한다.
4. 손해 총액의 일정 부분은 주최자가 부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국가가 보상한다(단, 보상 상한액을 정한다).
5. 매년도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액을 예산에서 규정한다.
6. 문화심의회의 의견을 참고 후 대상이 되는 전람회를 결정한다.
7. 시행일 : 2011년 4월 1일을 시행일로 한다.

- 公立義務教育諸学校の学級編制及び教職員定数の標準に関する法律及び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립의무교육 학교의 학급편제 및 교직원 정원기준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공립 의무교육 학교의 학급규모 및 교직원 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 초등학교의 제1학년의 학급편제 표준을 개정함과 동시에 시정촌이 설치하는 의무교육 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관여에 대하여 개정.

1. 학급편제 표준의 개정

공립 초등학교의 제1학년 아동으로 편제하는 학급에 있어서 한 학급 아동수의 표준을 40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한다.

2. 학급편제에 관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관여에 관한 개정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규정하는 공립 의무교육 학교의 학급편제 기준을 학교 설치자가 따라야 할 표준으로서의 기준으로 함과 동시에 시정촌립 의무교육 학교의 학급편제에 있어서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동의를 요하는 협의의무를 폐지하고 사후 신고제로 한다.

3. 시행일 등

이 법률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에 관한 사항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공립 의무교육 학교의 학급규모 및 교직원 배치의 적정화에 관하여 공립 초등학교의 제2학년부터 제6학년까지 및 중학교(중등교육학교의 전과정을 포함한다.)의 학급편제 표준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그 외 조치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제상의 조치 및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 環境影響評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환경영향평가법(1997년 제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법에 근거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용실적은 착실히 축적되어 환경보전을 배려한 사업실시를 확보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법 부칙 제7조에서는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수년 이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의 완전 시행으로부터 10년을 맞이하여 법 시행을 통하여 대두된 과제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 지방분권 추진,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등의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고조되었음이 그 이유이다.

1. 교부금 사업을 대상사업에 추가

보조금을 교부금화 하고자 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교부금의 교부대상사업에 관해서도 동법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2. '계획단계 배려서' 절차를 신설

사업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환경배려를 도모하고자 제1종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위치, 규모 등을 선정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위하여 배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 계획단계 배려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한다.

3. '방법서'에 있어서의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

법 시행 후에 작성되고 있는 방법서의 실태로서 도서지수의 분량이 많고 내용 또한 전문적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의한 방법서 작성단계에 있어서의 설명회 실시를 의무화 한다.

4. 기타

전산열람의 의무화, 평가항목 등의 선정단계에 있어서의 환경대신이 주무대신에 대하여 기술적 조언을 하도록 규정, 환경보전 조치 등의 공표 등의 절차를 구체화한다.

■ 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최근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에 관한 사회문제를 감안하여 전화전송 서비스 사업자를 규제대상 사업자에 추가함과 동시에 규제대상 사업자가 소정의 거래를 할 경우 고객 등에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 예금통장의 부정양도 등에 관한 벌칙 강화 등을 실시하고자 개정.

1. 거래 시의 확인사항의 추가 등

- 1) 특정사업자는 고객 등과의 사이에서 소정의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 등에 관하여 본인 특정사항 외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거래목적

② 당해 고객 등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직업, 당해 고객 등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

③ 법인의 사업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본인 특정사항

2. 특정사업자는 확인한 본인 특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이외에 사용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의 실시 및 그 외 필요한 체제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벌칙 강화

본인 특정사항의 허위신고, 예금통장의 부정양도 등에 관한 벌칙을 강화한다.

4.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고령자의 거주안정 확보를 위하여 고령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상황에 대응한 구조 등을 겸비한 임대주택 등에 있어서 심신상황 확인,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용 주택사업 등록제도’의 창설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개정의 이유가 있다.

1.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용 주택사업 등록제도의 신설

- 1) 고령자용 임대주택 또는 유료 실버 타운에 고령자를 입주시켜 심신상황파악 서비스, 생활상담 서비스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등록을 허가 받은 자로 한다.

- 2) 도도부현 지사는 등록신청 내용 중, 주택구조, 서비스 제공, 입주계약 등에 관한 내용이 고령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여야 한다.

- 3) 과대광고 금지, 등록사항 공시, 계약체결 전의 서면교부 및 설명 등, 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준수의무에 관하여 소정의 규정을 둔다.

2.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인 인정제도 및 고령자 거주지원 센터의 지정제도를 폐지한다.

- 1) 각 지방의 다양한 수요에 적합한 공적 임대주택 등의 경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
- 2) 독립행정법인 주택금융지원기구법의 일부 개정

3.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을 시행일로 한다.

5 월

■ 地域の自主性及び自立性を高めるための改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개혁 추진계획(2009년 12월 15일 각의결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이 개정의 실질적 요인이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자체 행정에 있어서 그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하였다.

예를 들어, 시설·공물설치 관리의 기준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복지시설의 정비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역주택의 정비기준 및 수입기준을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도로구조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조례에 위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개혁 추진계획(2009년 12월 15일 각의결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이 본 법안 제정의 실질적 요인이라 할 수 있고 동 법안에서는 주로 기존의 중앙정부가 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수단 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지자체와 국가와의 협의·동의, 허가·인가·승인에 관한 규정을 지자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개정함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정총립 유치원의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기준의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도도부현의 3대 도시권 등 대도시 등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대신의 동의 및 협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자체 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따른 특정 구직자의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 근로자나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에 대하여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수강할 기회를 확보함과 동시에 당해 직업훈련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급부금을 지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후생노동대신은 고용보험의 '실업 등 급부'를 수급할 수 없는 특정구직자에 대하여 그 지식, 직업, 경험, 그 외 사정을 고려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정직원훈련과 그 외의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책정한다.
- (2) 국가는 인정직원훈련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6 월

■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은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 의 대상확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제도의 창설, 공공시설 등 운영권과 관련된 제도의 창설,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 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대상확대 : 공공시설 등으로서 임대주택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시설 및 인공위성(이 시설들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한다.
 2.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제도 : 특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에게 당해 특정사업 과 관련된 실시방침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은 당해 제안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 특정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의 모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 이상의 조치 이외에도 공공시설 등 운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직원의 파견 등에 대한 배려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環境の保全のための意欲の増進及び環境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은 2005년부터 시작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10년”과 관련된 노력,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관심고조 등을 고려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고 각 주체간의 협동을 통한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을 보다 촉진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에 개정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법률명을 “환경교육 등에 의한 환경보전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각 주체간의 협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목적 등에 협동 추진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형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3.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체험학습, 교육직원의 연수, 자료 등의 정보제공, 학교시설 등의 정비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 의욕의 증진 또는 환경교육 및 협동을 추진하는 국민,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대 신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민간단체를 환경교육 등 지원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자연체험활동 등의 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介護サービスの基盤強化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지역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순찰·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등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창설하고 보험료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호보험법의 일부개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정기순찰·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및 “복합형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

(1) 유료노인 흄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창설.

(2)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후견 등과 관련된 체제정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의 일부개정

(1) 개호복지사 및 연수를 받은 개호직원 등은 진료보조로서 의사의 지사 하에 가래를 흡인하는 등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호복지사의 자격취득 방법의 재검토과 관련된 개정규정의 시행기일에 대하여, 기존의 2012년 4월 1일을 2015년 4월 1일로 변경한다.

■ 母体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모체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 도도부현 구역을 단위로서 설립된 의사회(醫師會)이자 통상의 일반사회법인인 단체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이하에서는 “지정의사”라고 한다)를 지정하도록 한다.

2. 후생노동대신은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서 설립된 특정법인인 의사회에 대하여 당해 의사회가 실시하는 지정의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언 및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津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 쓰나미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본 법안은 쓰나미에 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받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참화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쓰나미 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쓰나미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나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쓰나미 관측체계의 강화 및 조사연구 추진, 쓰나미에 관한 방재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실시 등을 실시하고자 함에 제정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쓰나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쓰나미 대책으로서, 연계협력체제의 정비, 쓰나미 관측체계의 강화 및 조사연구의 추진, 각 지역에 있어서 예상되는 쓰나미 피해의 예측, 쓰나미에 관한 방재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실시, 각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에 관한 정보 및 쓰나미로부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쓰나미 대책으로서는 쓰나미 대책을 위한 시설정비, 쓰나미 대책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추진,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확보 및 재해복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쓰나미 대책에 관한 그 외의 시책으로서, 쓰나미 대책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쓰나미 방재의 날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월

■ 鉱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

- 광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최근 국제적으로 자원획득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점에서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꾀하기 위하여 국내 자원개발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광업권 설정과 관련된 허가기준을 재검토하고 국민경제에 있어 특히 중요한 광물의 광업권을 최적의 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절차제도를 창설, 광물자원 탐사에 관한 허가제도를 창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업권 설정에 관한 허가기준의 재검토 : 광업권 설정 시의 허가기준을 새로이 창설하여 경리적 기초나 기술적 능력 등을 가진 개발주체에게 광업권 설정을 허가한다.
2. 광업권 설정에 관한 절차창설 : 석유, 천연가스 등 국민경제에 있어 특히 중요한 광물을 “특정광물”로 지정하고 특정광물의 광업권 설정에 관해서는 종래 먼저 신청한 자에게 광업권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의 관리 하에 광구 후보지를 지정하여 당해 광물의 합리적인 개발에 가장 적합한 주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3. 광물탐사 허가제도의 창설 등 : 광물자원의 탐사활동을 허가제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탐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4.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의 폐지 : 석유 등의 채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 방법이나 탐광에 관한 보조 등의 조치를 정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 자원개발법은 기술보급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한다.

■ 予防接種法及び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예방접종법 및 신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본의 신형 인플루엔자 발생 및 예방접종 실시상황 등을 파악, 재검토하여 새로운 임시 예방접종 실시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 개정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플루엔자 중, 증상 정도를 고려하여 후생노동대신이 규정하는 것 중, 만연 예방상 긴급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새로운 임시 예방접종의 유형을 창설한다. 새로운 임시 예방접종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도도부현의 협력 하에 시정총이 실시한다.
2. 시정총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1종 질병과 관련된 경기 예방접종 또는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을 받도록 권유하도록 한다. 단 새로운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유할 책무를 과하지 않는다.
3. 새로운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시정총이 지불하고 그 비용의 2분의 1을 국가가, 4분의 1을 도도부현이 부담한다.
4. 정부는 긴급 시에 신형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과 관련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특례 승인을 받은 백신의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백신에 의한 건강피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 등을 정부가 보상함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당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국회승인을 거쳐야 한다.

■ 災害弔慰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재해 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은 재해 조위금에 관하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유족의 범위에, 다른 유족이 없이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자 사망 당시 그 자와 거처를 같이 하고 있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 조위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의 범위확대 : 재해 조위금의 지급대상인 유족의 범위에,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의 형제자매(사망 당시 그 자와 거처를 같이 하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를 추가한다. 단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손녀 또는 조부모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 東日本大震災に対処するための特別の財政援助及び助成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 생활재건 지원금과 관련된 국가의 보조율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해 지진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지원금에 관하여 국가는 지원금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

■ 平成二十二年度歳入歳出の決算上の剩余金の処理の特例に関する法律

- 2010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의 특례에 관한 법률

본 법안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복구상황 등의 최근 상황을 감안하여 당면 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제2호)을 편성하에 있어 새로운 국채발행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의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특례조치를 강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잉여금 처리의 특례 :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2분의 1 이상을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재정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2010년도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함이 본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8 월

■ 平成二十三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 2011년 원자력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해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시설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응급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긴급조치로서,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특정원자력 손해”라고 한다.)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국가에 의한 가불금(假拂金)의 지불 및 원자력피해 응급대책기금을 조성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원자력 손해에 해당하고 정령에서 정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당해 특정원자력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불금을 지급한다.
2. 가불금의 금액은 그 자가 입은 하나의 특정원자력 손해에 대하여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간이의 방법으로 산정한 당해 특정원자력 손해의 개산액에 10분의 5를 밑돌지 않는 정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단 당사자가 당해 자료를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역, 당해 특정원자력 손해의 종류 등의 사정에 근거하여 추계한 당해 특정원자력 손해의 액수에 당해 비율을 곱하여 나온 것을 지불금액으로 한다.
3. 가불금의 지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부과학 대신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4. 가불금의 지불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도도부현 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문부과학 대신 또는 4에 의하여 가불금의 지불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도도부현 지사는 가불금 지불에 관한 사무의 일부(지불결정을 제외한다.)를 정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그 외 정령에서 정한 단체는 5에 의한 사무위탁을 받아 당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地域の自主性及び自立性を高めるための改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동법은 각 지역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어 온 관계법률의 세부상황을 개정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도부현 권한을 시정촌으로 이양하는 것에 관한 사항

주민에게 가장 친밀한 행정주체인 시정촌에게 당해 지역 내의 행정의 자주적·종합적인 역할을 담당도록 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의 권한을 시정촌에 이양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을 개정한다.

2.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의무부과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사항

지방공공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의무부과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지역주권 전략 대강에서 열거된 항목과 그 외 각 사항에 관하여 관련법률을 개정한다.

■ 平成二十三年度における子ども手当の支給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 2011년도 자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최근의 육아 가정을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여, 2012년도부터의 항구적인 어린이를 위한 금전급부 제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2011년도의 자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동법의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수당은 중학교 수료 전의 어린이 중,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자 등을 감호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부모 등 또는 중학교 수료 전의 어린이가 입소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설치자 등에게 지급한다. 또한 부모 등이 별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와 동거하고 있는 자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한다.

2. 자녀수당의 액수는 1개월에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1만 5천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1자 및 제2자의 어린이에게는 1만엔,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3자 이후의 어린이에게는 1만 5천엔, 초등학교 수료 후 중학교 수료 전의 어린이에게는 1만엔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자녀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수당 상당부분은 아동수당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소속청이 부담한다.

4. 정부는 육아가정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에 대하여 교부금을 교부한다.

5.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자녀수당을 학교급식비 등의 지불로 변환할 수 있다. 보육료에 관해서는 시정촌장이 자녀수당을 지불할 시에 징수할 수 있다.

6. 이 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電気事業法及びガス事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전기사업법 및 가스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동법은 전기 사업 및 가스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규제 합리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비용증가에 대응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급약관의 변경을 위한 신고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의 요금개정 절차 : 매수제도의 의한 부과금 등,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외생적・고정적인 가격 변동에 기인하는 전기요금 등의 개정에 관하여 사전 신청을 가능하도록 한다.
2. 특정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탁송(託送)제도의 정비 : 특정 전기사업자가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외부전원을 조달 할 수 있도록 배송전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3. 배송전 네트워크 이용 규칙에 관한 운용체제의 정비 : 매수제도에 의하여 송배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발전설비가 증가 하여 그 접속과 관계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전사업자와 송배전 네트워크 운용자 간의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 運輸事業の振興の助成に関する法律

- 운수사업의 진흥조성에 관한 법률

경유 거래세 세율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수사업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에 관계된 비용상승 억제 및 운송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편이 향상 및 지역온난화 대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당분간의 조치로서 당해 사업의 진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이 동법의 취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의 교부 : 도도부현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운수사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중 당해 도도부현 구역을 단위로 하는 자 및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에서 당해 사업을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진흥을 조성하기 위한 교부금(이하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의 용도
 - (1)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당해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업, 운송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업, 환경대책 및 지역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업, 그 외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사업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에 사용하여야 한다.
 - (2) 운송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을 교부 받은 자는 도도부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운송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을 사용하여 실시한 사업의 실적과 그 외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정상의 조치 : 운수 사업 진흥조성 교부금의 교부에 드는 경비는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교부세의 금액산정에 이용되는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입하도록 한다.

9 월

10 월

■ 국회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국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동법은 국회에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된 양의원의 양원운영위원회의 합동협의회(이하 “양원 합동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원 합동협의회의 설치 및 국정조사 등

- (1)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해 지진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하여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추천과 그 요청을 따른 국정조사 등의 사무시행을 위하여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국회에 양원 합동협의회를 둔다.
 - (2) 양원 합동협의회는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당해 요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상기 (2)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양원 합동협의회의 조직, 운영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양의원의 의결로 규정한다.
2.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
 - (1) 국회에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내각은 당분간 매년 국회에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東京電力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調査委員会法

-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법

동법은 국회에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9인으로 조직되고 그 임명, 신분보장, 복무, 이해관계자와의 접촉 등에 관한 보고, 회의 공개 및 회의록과 위원회의 참여 및 사무국에 관한 소정의 규정을 둔다.
2. 사고조사 등
 - (1) 위원회는 이하의 사무를 실시한다.
 - ① 2011년 3월 11에 발생한 동북지방 태평양 해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이하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고 한다.)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조사
 - ②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조사
 - ③ 관계 행정기관과 그 외 관계자가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하여 강구한 조치 및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의 경감을 위하여 강구한 조치내용, 당해 조치가 강구되기까지의 경위 및 당해 조치의 효과를 구명하고 검증하기 위한 조사
 - ④ 지금까지의 원자력에 관한 정책의 결정 및 그 경위와 그 외 사항에 관한 조사
 - ⑤ ①에서 ④까지의 조사(이하 “사고조사”라고 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원자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및 당해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재검토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방지 및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 또는 조치에 관한 제언
 - ⑥ 이들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 (2) 위원회의 사고조사를 위한 참고인의 출두, 자료제출 요구, 특정 위원 등에 의한 예비적 또는 보충적인 조사, 양원 합동협의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소정의 규정을 둔다.
 - (3)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하여 대략 6개월 후, 사고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기재한 보고서를 양의 원의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로써 그 조사활동은 종료된다.
3. 이 법률은 국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11 월

■ 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法

•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재해 사업자 재생지원기구법

동법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 피해지역으로부터 산업 및 인구가 피해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지역의 경제활동 유지를 도모하고 이로써 피해지역의 부흥을 꾀하고자 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채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그 재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재해 사업자 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조직과 체제

- (1) 기구는 주무대신의 허가에 따라 일회에 한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이며 예금보험기구 및 농수산업 협동조합 저금보험 기구를 통하여 국가 등에 의한 자본금을 조성한다.
- (2) 기구의 자본 차입 등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2. 대상사업자

재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자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인하여 과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농림수산업자, 의료법인 등을 포함한다.)이며 피해지역에서 채권자 등과 협력하여 그 사업을 재생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기구의 업무

- (1) 기구는 지원결정을 한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리스 업자를 포함한 금융기관 등이 가지는 채권의 매수, 자금대부, 채무보증, 출자, 전문가 파견, 담보자산의 취득 등에 따라 그 사업재생을 지원한다.
- (2) 기구는 원칙적으로 기구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결정을 함과 동시에 지원결정으로부터 15년 이내에 사업자에 대한 재생지원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재생지원 결정 등을 할 시에 따라야 할 지원기준을 주무대신이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에 재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함과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 재해 부흥 기본방침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중국 -

1 월

■ 중화인민공화국인민해결법

-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34호

인민해결제도를 완전하기 위하여 인민해결활동을 규범하고 적시에 민간분쟁을 해결하며 사회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 공상보험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5호

본 조례는 광범위한 공상보험 적용범위와 공상인정범위를 조정하며 공상대우에 대한 수평 및 배상표준을 제고하며 강제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수정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 제10호

『일부 업종 기업의 산재보험료 납부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제5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 보험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에서 일부 업종 기업이라 함은 건축, 서비스, 광산 등 업종 중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건축시공기업, 소형 서비스기업, 소형 광산기업 등을 가리킨다.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국해관사무담보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1호

해관 사무담보 규범을 위하여 통관 효율을 높이고 해관 감독관리를 보장한다.

■ 국유토지상 주택 징발 및 보상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0호

《국유토지상 주택 징발 및 보상조례》가 2011년 1월 19일의 국무원 제14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유토지상의 주택 징발 및 보상행위를 규율하고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징발대상주택 소유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공공이익을 위하여 국유토지상의 단체, 개인의 주택을 징발하는 경우에는 징발대상주택 소유권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함)에게 공평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주택 징발 및 보상은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절차가 정당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주택 징발 및 보상업무를 관掌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 징발부서(이하 주택 징발부서라 함)는 본 행정구역의 주택 징발 및 보상업무를 처리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유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업무분장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징발 및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 6월 13일 국무원이 공표한 《도시주택 철거 관리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주택철거허가증을 취득한 프로젝트는 계속 기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부는 유관부서에 강제철거를 명령할 수 없다.

■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 財稅 [2011] 12호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개인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구매한지 5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지 5년(5년 포함)을 초과하는 비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서 주택 구매대금을 공제한 후의 차액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지 5년(5년 포함)을 초과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2. 상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 구체적인 면세절차, 주택 구매시간, 세금계산서의 작성, 차액 세금징수 공제증빙, 비구매형식의 주택 취득행위 및 기타 조세관리 관련 규정은 《건설부 등 부서의 주택가격 안정업무에 대한 의견을 이첩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5] 26호), 《부동산 조세관리 강화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통지》(國稅發 [2005] 89호), 《부동산 조세정책 집행 중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5] 17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통지는 발송한 날로부터 집행하며,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157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 경외(境外)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 중국인민은행 공고 [2011] 제1호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은행업 금융기관과 국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표, 실시한다.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경내기구의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해외 직접투자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인민폐자금으로 설립,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 통제권 또는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경내기구라 함은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지역 내에 등록 등기한 비금융기업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전기비용이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에 프로젝트나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업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 제9호

《공상보험조례》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에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라 함은 영업집조가 없거나 법에 따라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용단위, 그리고 법에 따라 영업집조가 회수 말소되었거나 등기, 등록이 취소된 사용단위의 사고 상해를 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 또는 사용단위가 연소자를 사용하여 초래된 신체장애, 사망 연소자를 가리킨다.

전 항에 열거한 사용단위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신체장애 종업원 또는 사망 종업원의 근친족, 신체장애 연소자 또는 사망 연소자의 근친족에게 일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괄 배상금에는 사고 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 또는 연소자의 치료기간 비용과 일괄 배상금이 포함된다. 일괄 배상금 액수는 사고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종업원이나 연소자가 사망하였거나 노동능력 감정을 받은 후에 확정한다.

노동능력 감정은 속지원칙에 따라 사용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서 취급한다. 노동능력 감정비용은 사망 종업원이나 연소자의 소속단위에서 지급한다. 신체장애 종업원이나 사망 종업원의 근친족, 신체장애 연소자나 사망 연소자의 근친족이 배상금액과 관련하여 사용단위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분쟁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불법 사용단위 사상자 일괄 배상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공상 인정방법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령 제8호

신규 개정한 《공상 인정방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56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상 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가 2003년 9월 23일에 반포한 《공상 인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저작권질권등기방법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판권국령 제8호

저작권의 질권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의 보호하며 저작권의 교역질서를 유지한다.

2 월 ~ 4월

5 월

■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7호) 개정

2003년 10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을 하였다.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을 하였다. 본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에 관해서 이하의 개정을 하였다.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인신안전을 보호하고 공민·법인 등의 재산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본 법의 “도로교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처벌조치에는 경고·벌관·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구류가 포함된다.

제91조를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1천원 이상 2천원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원 이상 2천원 이하의 벌관을 병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술이 깔 때까지 단속을 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5일의 구류에 처하며 5천원의 벌관을 병과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술에 취하여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술이 깔 때까지 단속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그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영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음주 후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평생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개정하였다.

제96조 제1관을 “자동차등록증서, 번호판, 통행증, 운전면허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것을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몰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며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검진합격표시, 보험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위조·변조한 것을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몰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며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천원 이상 3천원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른 자동차의 등록증서, 번호판, 통행증, 검진합격표시, 보험표시를 사용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몰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며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관을 병과한다.”고 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6호) 개정

1997년 11월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하였다. 본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하며 건축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건축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법을 지켜야 한다. 본법에서의 건축 행위는 여러 유형의 주택 건축 및 그 부속시설의 건축과 기타 부가시설의 배선, 도관, 설비를 장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8조를 “건축시공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을 공상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의 공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고도의 위험성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외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을 격려한다.”고 개정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5호) 개정

1996년 8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일부법률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하였다. 2011년 4월 22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을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을 하였다. 본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보호와 석탄생산, 경영을 규범화하고 석탄채굴업의 발전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석탄생산, 경영에 종사할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석탄자원은 국가소유이다. 지표 또는 지하의 석탄자원은 국가소유이며 석탄이 매장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변경되어도 국가소유는 변하지 않는다.

제44조를 “석탄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을 공상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의 공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이 간내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외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을 격려한다.”고 개정하였다.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확정죄명 집행에 관한 보충규정(5)

2011년 4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520차 회의, 2011년 4월 13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1기 검찰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해석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충 · 개정된 죄명

법조문(형법)	죄 명
제133조의 1	위험운전죄
제143조	안전기준미달식품 생산 · 판매죄(위생기준미달식품 생산 · 판매죄 죄명을 취소하였음)
제164조 제2관	외국공직자 · 국제공공조직관원에 대한 증뢰죄
제205조의 1	영수증 허위발급죄
제210조의 1	위조영수증 소지죄
제234조의 1 제1관	장기매매조직죄
제244조	노동강요죄(직원노동강요죄 죄명을 취소하였음)
제276조의 1	임금체불죄
제338조	환경오염죄(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 죄명을 취소하였음)
제408조의 1	식품감독독직죄

■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감형제한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사형집행유예 감형제한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2011년 4월 20일 최고인민법원재판위원회 제1519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8)”의 사형집행유예 감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 및 재판실무에 근거하여 심리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형법 제52조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누범 및 고의살인 · 강간 · 강도 · 납치 · 방화 · 폭발 · 위험물질투여죄 또는 조직적 폭력성범죄로 인하여 사형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범죄경위, 위험성 등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함과 동시에 감형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2조 피고인은 제1심법원의 감형제한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할 수 있다.

제3조 고급인민법원은 사형집행유예 감형제한사건을 심리 또는 재심리한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내린 사형집행유예는 적당하지만 감형제한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파기자판을 하여 감형제한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 고급인민법원은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제한을 하지 않은 상소사건을 심리한 후, 원심이 명확한 사실과 충분한 증거에 기하여 판결을 내렸지만 감형제한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을 하지 못한다. 감형제한을 내려야 할 경우, 제2심 판결 · 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해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제한을 하지 않은 사건을 재심리한 후, 감형제한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 경우, 심급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5조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을 내린 제2심 사건을 심리한 후,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 경우, 형법 제50조 제2관의 규정에 부합되면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감형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판결을 받고 상소, 항소를 하지 않은 사건을 재심리한 후, 파기자판으로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감형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경우, 고급법원은 그 사건을 재심하거나 또는 파기환송하여야 한다.

제6조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사건을 재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감형제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형을 허가하지 않으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여야 한다.

동일사건에서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재심리를 한 후, 그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파기자판을 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을 때, 형법 제50조 제2관의 규정에 부합되면 동시에 감형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인민법원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내린 감형제한 결정은 판결서 주문에서 단독으로 하나의 항으로 열거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형집행유예 감형제한 사건의 심리절차와 관련된 기타 여러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른다.

6 월

■ 중화인민공화국마약중독치료조례(국무원령 제597호)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도와주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요역할을 하고 마약금지위원회에서 협조하는 마약중독치료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마약중독치료는 능동적 치료, 지역사회치료, 강제격리치료, 지역사회재활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중독치료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치료를 받은 마약중독자는 입학, 취업, 사회보장 등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능동적 치료는 마약중독자가 치료기관에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 경우에 공안기관은 그의 마약복용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치료기관은 치료행위를 신청한 마약중독자 또는 그의 후견인과 자진치료협의서를 체결해야 하여 치료방법, 기한, 개인정보보호 및 치료종료상황 등에 관하여 약정하며 치료효과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지역사회치료의 경우에는 현급 및 구를 설정한 시급정부의 공안기관에서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지역사회치료결정서를 제출하여 마약중독자 및 그 가족에서 송달한다. 그리고 마약중독자의 호적지 또는 현거 주지의 인민정부 및 동사무소에 통지한다. 지역사회치료를 받는 마약중독자는 치료결정서를 받은 일로부터 15일내에 지역사회치료를 받은 지역의 향(진)인민정부 또는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하며 정당이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사회치료를 거절한 경우, 지역사회치료 중 마약을 복용한 경우, 지역사회치료협의서의 사항을 위배한 경우, 지역사회치료 및 강제격리치료 후, 재차 마약을 복용한 경우에 현급 및 구를 설정한 시급정부의 공안기관에서 강제격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 마약중독 증상이 심하여 지역사회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직접 강제격리치료를 명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부녀가 마약중독자일 경우, 강제격리치료를 하지 않는다. 16주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마약중독자일 경우, 강제격리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안기관에서는 지역사회치료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격리치료기간은 2년이다. 강제격리치료를 받는 마약중독자는 공안기관소속의 강제격리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6 개월 미만의 치료를 받은 후, 사법기관소속의 강제격리치료소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는다.

가령 위의 조건을 구비한 해당 치료기관이 없을 경우,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은 공동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에 구체적인 집행해결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공안기관소속의 강제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강제격리치료를 명한 기관은 강제격리치료가 끝난 마약중독자에게 3년 이내의 지역사회재활치료를 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재활치료는 마약중독자의 호적지 또는 거주지의 정부,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재활치료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본 조례는 201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개정에 관한 결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8호)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구법 제3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월급, 급여소득에 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3%~45%이다.” 구법 제6조 제1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월급, 급여소득은 매월수입액에서 3500원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소득액이다.” 구법 제9조의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개정하였다.

「개인소득세율표 1」

(월급, 급여소득에 적용한다)

급수	1개월 과세소득액	세율(%)
1	1500원 미만	3%
2	1500원 이상 ~ 4500원까지	10%
3	4500원 이상 ~ 9000원까지	20%
4	9000원 이상 ~ 35000원까지	25%
5	35000원 이상 ~ 55000원까지	30%
6	55000원 이상 ~ 80000원까지	35%
7	80000원을 초과한 부분	35%

* 본표의 1개월 과세소득액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수입액에서 3500원의 비용 또는 추가공제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개인소득세세율표 2」

(개인공상업자의 생산소득과 기업, 사업단체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소득에 적용한다)

급 수	1년과세소득액	세율(%)
1	15000원 미만	5%
2	15000원 이상 ~ 30000원까지	10%
3	30000원 이상 ~ 60000원까지	20%
4	60000원 이상 ~ 100000원까지	30%
5	100000원을 초과한 부분	35%

* 본 표의 매1년 과세소득액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납세연도 소득총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가리킨다.

본 결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은 본 결정에 따라 개정하여 재공포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49호)

행정상 강제를 규제하고 행정기관의 직무이행을 감독하며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공민, 법인과 기타 여러 단체의 권익의 보호도 본법의 취지 중의 하나이다.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조치와 행정상 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상 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중의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며 위험발생과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에게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래의 경우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재난사고, 공공위생사건 또는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등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응급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2. 행정기관에서 금융업에 대하여 신중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강제적 기술감독관리조치를 취할 경우,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진술권, 변명권을 가지며 행정복(행정심판)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령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상 강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이 강제집행과정에 발생한 위법행위나 또는 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상 강제조치는 법률이 규정한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또 국무원의 행정관리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단, 공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와 예금을 동결하고 송금서비스를 중지하는 조치에 관해서는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지 못한다.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고 또 지방행정사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 지방성법규는 업소, 시설을 강제 폐쇄하거나 또는 재산을 봉인하는 조치와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외의 기타 규범성문건에서는 행정상 강제조치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한다.

본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위임집행문제에 관한 규정(법해석11호)

법원의 위임집행사업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집행법원에서 피집행자가 본법원의 관할지역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나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동급인민법원에 사건의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사건집행에 있어서 피집행자가 3인 이상이거나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본 법원 소재지외의 다른 3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나뉘어 있으면 집행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격지집행을 할 수 있다.

수탁법원에서는 사건의 집행을 위임받은 후 그 사건을 입안해야 하며 집행을 위임한 법원은 수탁법원의 입안통지서를 받은 후, 위임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위임집행은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집행행위 개시지의 동급인민법원을 수탁법원으로 정해야 한다. 재산이 2곳 이상에 나뉘어져 있을 경우, 주요재산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현역군인 또는 군사기관일 경우, 그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군사법원에 위임하여 집행한다.

집행목적물이 선박일 경우, 관할권이 있는 해사법원에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월

■ 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的决定

•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에서는 “개인소득세법시행조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3항의 매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은 납세의무자가 도급경영, 임대차경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운과 월급, 노동보수 등 소득을 가리킨다. 공제필요비용은 매월 3500원이다.”로 개정한다. 제27조를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3관의 부가공제비용은 매월 3500원의 비용을 공제한 기초상에서 재차 본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로 개정한다. 제29조는 “세법 제6조 제3관의 부가공제비용은 1300원이다.”로 개정한다. 본 결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国务院关于建立全科医生制度的指导意见

• 국무원의 일반의제도 신설에 관한 의견

의료약품위생체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적응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일반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 법규를 제정하였다. 일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현재 중국에서 인구대비 의사수가 적고 특히, 기층지역, 즉 현급 도시와 농촌에서 기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 전문의수가 적다. 그리하여 일반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의 자격을 구비한 의사가 흔히 발생하는 질병 등 일반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조속히 하여 주민들이 좀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8 월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办理危害计算机信息系统安全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컴퓨터정보시스템을 위협하는 형사사건처리에 있어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본 해석에서는 형법 제285조 제2관에서 규정한 “경위가 엄중한 경우”, 제285조 제3관에서 규정한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불법통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도구”, 제285조 제3관에서 규정한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침입하거나 불법통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거나 도구를 제공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제286조 제1관과 제2관에서 규정한 “결과가 엄중한 경우”, 제286조 제3관에서 규정한 “컴퓨터 바이러스 등 파괴성 프로그램”, 제286조 제3관에서 규정한 “결과가 엄중한 경우” 및 관련 컴퓨터 범죄의 공동범죄형태에 관해서 상세하게 해석하였다.

■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信用卡诈骗犯罪管辖有关问题的通知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신용카드사기범죄 관할문제에 관한 통지

근래에 신용카드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관련사건이 매년 증가하며 피해자가 지에서 수령한 신용카드가 범죄혐의자가 지에서 신용카드정보를 절취하여 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관한 사건의 관할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절취 또는 매매 등 수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취득한 후, 격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사기범죄에 관하여 신용카드 신청지의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은 입안하여 청찰,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다.

■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3)

본 해석 중, 사회적 논쟁을 일으킨 규정은 혼인존속기간내의 부동산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해석” 제7조는 “혼인 중, 일방 당사자의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구매한 부동산을 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 혼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부동산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것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고 부동산 명의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쌍방 부모가 출자하여 구매한 부동산이 비록 일방 당사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했어도 그 부동산에 관해서 부부쌍방이 각자 부모의 출자비례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단, 당사자사이에 기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문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있으며 금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进出口化妆品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 수출입화장품검증검역감독관리방법(국가품질감독검증검역총국)

본 방법은 “출입국검증검역기구에서 검증검역을 하는 상품목록”에 포함된 화장품 및 관련 국제조약,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검증검역기구에서 검증검역을 하는 화장품(완성품 및 반제품을 포함)의 검증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 清洁发展机制项目运行管理办法(修订)(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科技部 外交部)

- 청정발전메커니즘 프로젝트 운행관리방법(개정)(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외교부)

본 방법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기타 관련 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청정발전메커니즘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감소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프로젝트합작을 하는 메커니즘이다. 프로젝트합작을 통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的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고 온실 가스배출을 줄이는 것을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중국에서는 지속적 발전 전략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전반국면에서 출발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 关于房屋、土地权属由夫妻一方所有变更为夫妻双方共有契税政策的通知(财政部 国家税务总局)

- 주택과 토지사용권의 명의를 부부일방의 소유에서 부부쌍방의 공유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정책에 관한 통지(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혼인관계 존속 중, 주택 및 토지사용권이 부부일방의 소유에서 부부쌍방의 공유로 변경될 경우, 취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9 월

■ 太湖流域管理条例

- 태호유역관리조례

태호유역의 수자원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및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여 생산생활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태호유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본 조례에서 가리키는 태호유역에는 江蘇省, 浙江省, 上海市와 長江以南, 錢塘江이북, 天目山, 茅山유역 분수령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委托评估、拍卖工作的若干规定

-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위임한 평가·경매사업에 관한 규정

정부관리부서의 행정허가를 취득하고 일정한 등급에 도달한 평가경매단체는 법원이 위임하는 평가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는 관련 평가경매조직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무작위추출방법으로 평가 경매조직을 확정한다.

국유자산과 관련된 경매 등은 성급이상 국유자산거래기관에서 시행한다.

■ 于加强PX等敏感产品安全环保工作的紧急通知(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环境保护部 国家安全监管总局 国土资源部)

- PX 등 위험품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관한 긴급통지(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환경보호부,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국토자원부)

근래에 일부 기업에서 위험화학품 등 물품에 관한 안전생산관리에 소홀하여 몇 번의 생산안전사고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일으켰다. PX 등 위험품, 특히 극독물의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를 제정한다.

■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 중국경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에 관한 잠정방법(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중국 경내에 등록한 기업, 사업부서,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단체(이하에서는 사용자라고 칭함)는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직원기본실버보험, 직원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외국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외의 외국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경내에서 등록한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이하에서 경내 사용자라고 칭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직원기본실버보험, 직원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외국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0 월

■ 全国人大常委会关于加强反恐怖工作有关问题的决定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테러방지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

이 결정에서는 테러조직의 활동 및 테러조직원을 인정하는 구체적 방법 등은 국무원에서 제정하고 테러조직의 자금동결 등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산하의 금전세탁방지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산하의 공안부 및 국가안전부와 회동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제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내용 중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제3조에 "공민신분증을 신청, 교체하거나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15조 제1관에 "경찰은 공무 집행 중, 기차역, 여객터미널, 항구, 부두, 공항 또는 기타 중요행사기간 중 시(구)를 설치한 시급도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장소에서 관련 증빙서를 제시하고 신분증을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4항을 신설하였다.

■ 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

-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본 법은 제1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은 병역법에 관한 제3차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한 취지는 국방건설과 관련된 인재의 충원이다.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적정연령의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관련 사항에 관한 개정을 하였으며 전반 군대의 자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재학생의 군입대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였고 퇴역 군인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사항도 대폭적인 개정을 거쳤다.

■ 退役士兵安置条例(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

- 퇴역사병안치조례(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

퇴역사병의 안치사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에서는 취업지원, 자주창업, 직장소개, 퇴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퇴역사병을 안치한다. 퇴역사병의 안치에 관련된 비용은 중앙과 지방각급정부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체는 모두 퇴역사병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채용할 경우 퇴역사병을 우대해야 한다. 퇴역한 사병이 공무원, 사업단위에 지원할 경우, 군복무기간을 사업경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퇴역사병에게 직장을 배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和《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实施细则》的决定(财政部、国家税务总局)

-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감정조례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감정조례시행세칙"의 개정에 관한 결정(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감정조례시행세칙" 제37조 제2관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감정조례시행세칙" 제23조 제3관을 개정하여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外商直接投资人民币结算业务管理办法(中国人民银行)

-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결산업무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국경간 무역 및 투자를 할 경우,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고, 은행업에 종사하는 금융기구의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 결산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 转融通业务监督管理试行办法(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전용통업무감독관리시행방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용통이란 증권금융회사가 자기소유 또는 모금한 자금과 증권을 증권회사에게 대출하여 그 회사가 증권신용거래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증권신용거래업무를 규범화하고 증권회사의 증권신용거래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11 월

■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중국에서 근래에 가축사료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료첨가제의 관리가 혼란하여 불법상인들이 첨가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국무원에서는 사료와 사료첨가제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 期货营业部管理规定(试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 선물영업부서관리규정(시행)(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선물회사 영업부서의 경영활동을 규제하고 영업부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물거래관리조례", "선물회사 관리방법"등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속지주의 감독관리원칙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하여 관할지역의 영업부서의 설립, 변경, 종료 및 일상경영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월

■ “Public Service Act 103 of 1994”

- Schedule 2 amended.

• “공무법”

- 별첨 세칙 2 개정

공무법 제7(5)b조에 근거하여 별첨세칙 2, 즉 각 주정부 부처 및 해당 부처장의 신설, 개정, 대체 등을 주지사 요청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은 림포포 (Limpopo)주에서 ‘사회 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를 신설 부처로 개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

■ “Taxation Laws Second Amendment Act 18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ss.13(1) and 38(1): 1 February 2011.

- Substitutes s. 88 of the Income Tax Act 58 of 1962 and s. 36 of the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 “세금법률 제 2차 개정법, 2009”

동법 13(1)조와 38(1)조는 세금 체납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불복 및 항소 등으로 계류 중인 체납 세금에 관한 내용이다. 동법 13(1)조 시행으로 소득세법 (Income Tax Act) 88조를 대체하였고, 38(1)조는 부가가치세법 (Value-Added Tax Act) 36조를 대체하였다. 2011년 2월 1일부터 동법 13(1)조와 38(1)조를 시행함으로 그동안 계류 중으로 체납된 세금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국세청에서 납입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납입하도록 하였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2,3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2,3 개정

- (1) 별첨 세칙 2는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세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중국과 터키에서 수입되는 이불(blankets: 전기담요 제외)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적용 세율을 삭제하고 터기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kg 당 691c(센트)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kg 당 2,834c (센트) 관세를 부과하였다.
- (2) 별첨 세칙 3은 산업과 관련된 관세의 환불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광산업에 관한 것으로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 산화물을 추출해내는데 사용되는 가성 소다 (caustic soda), 고체 (solid) 등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전액 환불(full duty)에 관한 것이다.

■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65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 of Pietermaritzburg: 15 February 2011
- Inserts ss. 159A-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51 of 1977.
- “형사소송 개정법”
- 2011년 2월 1일 자로 피터마리츠버그 등 제1심 관할 구역과 관련된 제1조 시행
- 동법에 159A - 159D 조항 삽입

동법 159A - 159D 조항은 계류 중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나 화상화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연장 신청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159A조는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화상 화면 (television link)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159B조는 화상화면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159C조는 화상 재판시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였고, 159D조는 화상재판시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문서 교환 등의 비밀 유지 및 재판상 증거로 채택 되지 않는 등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월

■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mendment Act 14 of 2010”

- Date of commencement: 28 February 2011.
- Amends ss. 11, 14, 17, 21, 39 & 48, substitutes ss. 55, 64 & 65 and inserts s. 14A & Schedule 3 in the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ct 27 of 2000.
- “지방 정부: 자치제 선거 개정법, 2010”
- 개정 조항: 11, 14, 17, 21, 39, 48조; 대체조항 55, 64, 65조; 삽입조항 14A 및 별첨세칙 3

동법은 2011년 5월 18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공천과정을 간소화하고, 후보등록 과정상의 하자를 쉽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후보등록을 위한 공탁금과 관련하여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광역시 의회(Metropolitan Council) 선거에 출마한 경우 3천란드 (R3000)에서 4천란드 (R4000)로, 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우 2천란드 (R2000)에서 2천5백란드 (R2500)로, 군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1천란드 (R1000)에서 1천5백란드 (R1500)로 인상하였다. 정당 추천없이 출마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1천란드 (R1000)로 증액하였다.

■ “National Environment Laws Amendment Act 14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s. 39: 1 April 2011
- Inserts s. 81A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
- “국내 환경법 개정법”
-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 81조 개정, 81A조 삽입

“국내 환경법 개정법”은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的 81조를 개정하고 81A조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81조에 언급된 생물종 탐사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부여된 의무조항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1조는 생물종 탐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인 발견 단계와 이후 생물종이 약제 등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상업화하는 단계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직 상업화할지도 모르는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82조의 허가(Permit)를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개정 법률은 이 부분을 다루었다.

동 개정은 그러한 의무조항을 제거하였고, 81A조는 초기발견단계에 있을 지라도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후 상업화단계인 경우 허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1, 3, 4, 6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1, 3, 4, 6 개정

- (1) 별첨 세칙 (Schedule) 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별첨 세칙 1의 파트 1에 대한 개정으로 그 내용은 전화선 및 전기선을 위한 격자 마스트(lattice masts)에 대해 무관세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바(bar), 막대기(rod) 등에 대해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EU, EFTA, SADC (남부아프리카발전국가들)의 경우에는 두 품목에 대해 계속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 (2) 별첨 세칙 3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의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자동차 에어콘을 위한 콘덴서나 건조기용의 격자모양으로 연결시 사용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 (hollow profiles of aluminum of cross-sectional dimension)중에서 370m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또한 표백 또는 준표백한 침엽수 목재 펄프 또는 기타 목재 펄프, 표백하지 않는 크라프트라이너 용지, 그 이외의 크라프트라이너 (Kraftliner) 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종이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용해상태로 되어 있는 가성소다에 대한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 (3) 별첨 세칙 4는 일반 관세, 연비, 환경세 등에 대한 일반적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여행객, 환승객, 귀국하는 내국인 등이 가져오는 신상품, 중고상품에 상관없이 5천란드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하며, 2만란드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총관세에서 20%를 환불받게 된다. 담배의 경우 200개 이하, 시가(cigar)인 경우는 20개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4) 별첨 세칙 6은 관세, 연료세, 환경세에 대한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거품이 있는 음료 (sparkling beverages), 전통 아프리카 맥주, 기타 알코올 9 퍼센트가 넘지 않는 것으로 숙성시킨 음료에 대해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 Schedule 1 amended.

• “부가가치세법”

- 별첨 세칙 1 개정

이번 개정은 세칙1의 제8항에 관한 것인데, 8항은 이민, 관광, 해외에서 복귀하는 국민이나 기타 승객이 개인용도나 선물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총기는 면세혜택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비행조종사나 승무원에 대한 면세혜택의 기준도 개정하였다. 면세 혜택은 30일을 주기로 하여 한 번 인정되고, 출국한 지 2일 이내에 돌아온 경우에는 혜택되지 않는다. 동 법의 수입 품목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데, 가족당 3년 주기로 한 번 인정된다.

■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 for the area of Wonderboom published
- “소액청구법원법”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즉 1만2천란드(R12,000: 한화 백구십만원)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비: 한화 이천오백원) 일반 법원과 같이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여 바로 판결을 얻는 등 시간이 절약되는 제도로서, 이혼 등 몇 가지 소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무회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더붐” 지역에 소액청구법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 “Regulations on reporting by municipalities in terms of section 13quat(9) of the Income Tax Act” published.

- “소득세법 13quat(9)조에 의거한 자치제 보고에 관한 규칙” 공포

도시개발지역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경우, 해당자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소득세 13quat(9)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mendment Act 14 of 2010”

- Date of commencement: 28 February 2011.
- Amends ss. 11, 14, 17, 21, 39 & 48, substitutes ss. 55, 64 & 65 and inserts s. 14A & Schedule 3 in the Local Government: Municipal Electoral Act 27 of 2000.

- “지방 정부: 자치제 선거 개정법, 2010”

- 개정 조항: 11, 14, 17, 21, 39, 48조; 대체조항 55, 64, 65조; 삽입조항 14A 및 별첨세칙 3

동법은 2011년 5월 18일 지방선거에 맞추어 개정되었는데 공천과정을 간소화하고, 후보등록 과정상의 하자를 쉽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후보등록을 위한 공탁금과 관련하여 정당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광역시 의회(Metropolitan Council) 선거에 출마한 경우 삼천란드 (R3000.00)에서 사천란드 (R4000.00)로, 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우 이천란드 (R2000.00)에서 이천오백란드 (R2500.00)로, 군의회 선거에 출마한 경우는 천란드 (R1000.00)에서 천오백란드 (R1500.00)로 인상하였다. 정당 추천없이 출마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천란드 (R1000.00)로 증액하였다.

■ "National Environment Laws Amendment Act 14 of 2009"

- Date of commencement of s. 39: 1 April 2011
- Inserts s. 81A in the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
- “국내 환경법 개정법”
-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 81조 개정, 81A조 삽입

“국내 환경법 개정법”은 “국내 환경관리: 다양한 생물종 유지 보호법”的 81조를 개정하고 81A조를 삽입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그동안 81조에 언급된 생물종 탐사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부여된 의무조항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81조는 생물종 탐사프로젝트의 초기단계인 발견 단계와 이후 생물종이 약제 등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이를 상업화하는 단계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아직 상업화할지도 모르는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82조의 허가(Permit)를 받아 프로젝트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개정 법률은 이 부분을 다루었다.

동 개정은 그러한 의무조항을 제거하였고, 81A 조는 초기발견단계에 있을 지라도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후 상업화단계인 경우 허가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1, 3, 4, 6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1, 3, 4, 6 개정

- (1) 별첨 세칙 (Schedule) 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별첨 세칙 1의 파트 1에 대한 개정으로 그 내용은 전화선 및 전기선을 위한 격자 마스트(lattice masts)에 대해 무관세에서 15%로 인상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바(bar), 막대기(rod) 등에 대해 무관세에서 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EU, EFTA, SADC (남부아프리카발전국가들)의 경우는 두 품목에 대해 계속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 (2) 별첨 세칙 3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자동차 에어콘을 위한 콘데서나 건조기용으로 격자모양으로 연결시 사용되는 앤이 비어 있는 알루미니뮴 프로파일 (hollow profiles of aluminum of cross-sectional dimension)중에서 37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 경우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또한 표백 또는 준표백한 침엽수 목재 펄프 또는 기타 목재 펄프, 표백하지 않는 크라프트라이너 용지, 그 이외의 크라프트라이너 (Kraftliner) 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종이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용해상태로 되어 있는 가성소다에 대한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 (3) 별첨 세칙 4는 일반 관세, 연비, 환경세 등에 대한 일반적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여행객, 환승객, 귀국하는 내국인등이 가져오는 신상품, 중고상품에 상관없이 5천란드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하며, 2만란드를 초과하지 않을 시에는 총관세에서 20%를 환불을 받게 된다. 담배의 경우 200개 이하, 시가(cigar)인 경우는 20 이하인 경우 총관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4) 별첨 세칙 6은 관세, 연료세, 환경세에 대한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거품이 있는 음료 (sparkling beverages), 전통 아프리카 맥주, 기타 알코올 9 퍼센트가 넘지 않는 것으로 숙성시킨 음료에 대해 관세 전액 환불을 규정하였다.

■ “Value-added Tax Act 89 of 1991”

- Schedule 1 amended.
- “부가가치세법”
- 별첨 세칙 1 개정

이번 개정은 세칙1의 제8항인데, 8항은 이민, 관광, 해외에서 복귀하는 국민이나 기타 승객이 개인용도나 선물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총기는 면세혜택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비행조종사나 승무원에 대한 면세혜택의 기준도 개정하였다. 면세 혜택은 30일을 주기로 하여 한 번 인정이 되고, 출국한 지 2일 이내에 돌아온 경우는 혜택이 되지 않는다. 동법의 수입 품목에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해외에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면세혜택을 받는데, 가족당 3년 주기로 한 번 인정이 된다.

■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 for the area of Wonderboom published
- “소액청구법원법”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즉 만이천란드(R12,000: 한화 백구십만원)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비용이 저렴하며 (신청비: 이천오백원) 일반 법원과 같이 많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직접 출두하여 변론하여 바로 판결을 얻는 등 시간이 절약되는 제도로서, 이혼 등 몇 가지 소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무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더붐” 지역에 소액청구법원을 신설하였다.

■ “Regulations on reporting by municipalities in terms of section 13quat(9) of the Income Tax Act” published.

- “소득세법 13quat(9)조에 의거한 자치제 보고에 관한 규칙” 공포

도시개발지역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한 경우, 해당자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치제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소득세 13quat(9)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 “Regul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amended.

- “정당 등록 관련 규칙” 개정

정당 추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최소 추천인의 서명을 5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하였다.

3 월

4 월

■ "Defence Amendment Act 22 of 2010"

- Date of commencement: 15 April 2011
- Amends ss 1, 12, 53, 82 & 104 and inserts ss. 4A & 62 A in the Defence Act 42 of 2002
- “국방법 개정법”

“국방법, 2002”의 조항 1, 12, 53, 82, 104조를 개정하고, 새조항으로 4A와 62A조를 삽입했는데, 주요 내용은 예비군 (Reserve force)을 국방부와 일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비군 고용 조건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군수처장 (Chief of Logistics)를 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과 주요 부처장으로 구성된 Military Command of the Defence Force 의 멤버로 추가하였다.

■ Income Tax Act 58 of 1962

- Notice in terms of s 10 (1) (y) and para. 64A of the Eighth Schedule published.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 10(1)(y)조 및 별첨 세칙 64A 항에 의거하여 “Taxi recapitalisation programme” (흑인의 대중 교통수단이 12-16인승 중형차를 남아공에서는 택시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낡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전한 새로운 중형 차를 도입 및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및 “사람과 대중이 쉽게 접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영양 강화 프로그램” (Staple Food Fortification programme: 아동들의 영양부족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들이 쉽게 구매하는 식품에 영양가를 강화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또는 개인 등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한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2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2 개정

별첨 세칙 2는 수입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세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 안은 너트, 와셔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폭이 6mm - 36mm 길이 10mm - 400mm 이상의 강철 볼트에 대해 55.4% 반덤핑 관세 부과 (Ningbo Jinding Piece Company Limited 생산 제품 제외), 육모 모양으로 원형길이가 6mm-36mm의 철 또는 강철 너트에 대해 122.7% 관세를 부과한다.

■ "Marine Living Resources Act 18 of 1998"

- Criteria for allocation rights for abalone ranching or stock enhancement pilot project published.
- “해양생물자원법”

전복 사육 농장 또는 육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을 얻기 위한 기준 발표하였다.

■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Act 38 of 2000"

- Instruction to National and Provincial Departments, Municipalities and Public Entities delivering infrastructure to register all construction contracts awarded through a tender process during 2009/10 and 2010/11 financial years published.
- “건설산업육성관리국법”

2009/10과 2010/11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회사의 입찰을 통해 건설 공사를 수주한 모든 업체 중에서 특히 기간 시설을 담당하는 수주 업체에 대한 지침서를 공포한다.

■ "Public Finance Management Act 1 of 1999"

- Listing of public entities in Schedule 3, Part A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1.
- Listing of public entities in Schedule 3, Part C published with effect from 1 April 2010.
- “공공자금관리법”

“회사법, 2010” 시행에 따라 회사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 담당 법정인 Companies Tribunal의 신설하고 이 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포함하여 운영에 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월

■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ve Directorate Act 1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Amends ss 1 & 2 and repeals Chapter 10 (ss 50-54) of the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Act 68 of 1995 and amends s 1 of the Witness Protection Act 112 of 1998, s 18 of the Domestic Violence Act 116 of 1998, and s 1 of the Regulation of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nd Provision of Communication-related Information Act 70 of 2002.
 - “독립 경찰 내사국법, 2011” 제정 (시행일 추후 공포)
 - 동법 제정으로 “남아공 경찰법” 제 1조와 2조 및 제10장 (55조-54조) 폐지; “증인 보호법” 제1조 개정; “가정폭력법” 제18조 개정; 및 “통신 감정 규칙 및 통신관련 정보 개정법 규칙, 2002” 제1조 개정

헌법 206(6)에 의거하여 경찰관에 대한 항의, 고소, 불평 등이 접수되었을 시 이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창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중앙 경찰 및 지방 정부 경찰에 대한 감독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경찰내사국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독립 경찰 내사국 설립을 위한 규정 및 수사국 역할, 집행위원 및 자문 기관 설립, 수사담당자의 임명 및 권한, 경찰 및 지방 경찰의 협력 및 보고 의무 등이다.

■ Civilian Secretariat for Police Service Act 2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Amends s 1, repeals s 2 and substitutes the words 'Secretary for Safety of Security', wherever they occur, with the words 'Secretary for the Police Service' in the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Act 68 of 1995 and amends s 1 of the Firearms Control Act 60 of 2000.
 - “경찰 서비스에 대한 민간 사무국법, 2011” 제정 (시행일 추후 공포)
 - 동법 제정으로 “남아공 경찰법” 제 1조 개정, 제2조 폐지, 동법에 있는 문구 대체 ('Secretary for Safety of Security'를 'Secretary for the Police Service'로 대체), “화기통제법” 제1조 개정

헌법 208조에 의거하여 경찰업무를 독자적으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민간 감시국을 법으로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의 투명한 공권력 행사 및 일반의 자유제한에 있어서 최소한의 권한 행사, 경찰의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점검 등을 위해 민간 감시국 설립의 취지가 있으면, 동법의 주요 내용은 민간 감시국 설립 및 감시관 임명 및 권한, 보수,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Correctional Matters Amendment Act 5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Amends the Table of Contents and ss 1, 3, 5, 10, 17, 38, 39, 42, 54, 70, 75, 90 & 134, substitutes Chapter V (ss 46-49 & 49A-G), ss 73 & 79 and inserts s 128A of the Correctional Services Act 111 of 1998 and repeals ss 48 & 49 and amends s 87 of the Correctional Services Amendment Act 25 of 2008.
 - “교정시설관련 개정법, 2011” 제정
 - 동법 제정으로 “교도소법, 1998” 목차 및 제1, 3, 5, 10, 17, 38, 39, 42, 54, 70, 75, 90, 134조 개정 및 제5장 대체 및 128A 조항 신설, “교도소 개정법, 2008” 제48조, 49조 및 87조 폐지

“교도소 개정법, 2008”에 소개되었던 수형자 유폐 제도 신설에 대한 조항 폐지, “교도소법, 1998” 새로운 개념 삽입 및 기존 개념 개정에 따른 개정, 의료목적의 가석방 제도 신설, 가석방과 관련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재유치자 구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 Division of Revenue Act 6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1 April 2011.
- Repeals the Division of Revenue Act 1 of 2010, with the exception of ss. 28 (8) and 38 (1).
 - “국세 분배법, 2011” 제정
 - 동법 시행으로 “국세 분배법, 2010” 폐지 (동법 28(8)조와 38(1)는 그대로 시행)

전년도에 거두어 들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2011/2012 회계연도에 중앙정부 부처 및 각 지방 정부에 형평상에 맞는 분배와 해당 금액에 집행에 따른 중앙 정부 와 각 지방 정부의 의무 및 책임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s for the areas of Vanderbijlpark, Stutterheim, Cathcart and Kenhardt
 - “소액청구법원법”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즉 만이천란드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 비용이 저렴하며 절차가 간소하여 채무회수나 손해 배상청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반더비질바크, 스튜터하임, 캐스카르트, 켄하르트 지역에 소액청구법원을 신설하였다.

6 월

■ Sectional Titles Schemes Management Act 8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Substitutes the long title & s.31, amends ss. 1, 11, 15B, 17, 19, 21, 24, 25, 26, 27, 29, 32, 34, 36, 49, 55, 60 & 60A and repeals ss. 27A, 35, 37-48 & 51 of the Sectional Titles Act 95 of 1986.
 - “부분 토지재산 개발 운영법, 2011” 제정
 - 법률 제목 및 31조 대체, 1, 11, 15B, 17, 19, 21, 24, 25, 26, 27, 29, 32, 34, 36, 49, 55, 60 & 60A조 개정, 부분 토지 재산법 27A, 35, 37-48 & 51조 폐지

남아공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분리하지 않으므로 토지의 주인은 토지의 부속된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토지 주인은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일부분의 소유자는 토지 주인처럼 마음대로 건물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동법은 건물 개발과 관련하여 건물 관리 및 공동 재산관리를 위한 아파트 관리위원회 설립 및 아파트 관리위원회에 적용 규칙 및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동법은 부분토지재산법의 일부 조항을 대체, 개정 및 폐지하였다.

■ Community Schemes Ombud Service Act 9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 “공동주거 계획 옴부즈만 서비스법” 제정

동법은 부동산 운영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공동주거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공동 주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을 제공 및 분쟁해결 조정 및 중재자 훈련, 아파트 건물 개발 계획에 대한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 및 공동 주거 계획 통제 및 관리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Schedule 2, 4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 별첨 세칙 2,4 개정

별첨 세칙 2는 수입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세 등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리신(lysine)에 대해 부과되었던 33.5% - 48%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별첨 세칙 4는 일반 관세, 연비, 환경세 등에 대한 일반적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제조, 처리, 마감,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하거나 도구로 이용되는 카본(Carbon)에 대한 일정 비율로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 Revenue Laws Second Amendment Act 61 of 2008

- Date of commencement of s. 36 (1): 1 August 2011
- Amends s. 64E of the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 “세입법 제2차 개정법, 2008”

“세입법 제2차 개정법, 2008” 제 36(2)조는 대통령령으로 관보에 제36(1)조에 대한 시행일자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공시를 통해 동 조항에 대해 2011년 8월 1일자로 규정하였다. 제36(1)조는 부가가치세법 제 44조 개정을 다루고 있는데 국세청장이 수출인세티브계획에 의거한 품목에 대한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2008년 개정한 후 동년 8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었다.

수입관세법 제 64E조는 새로운 조항으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일정 형태의 고객에 대해서 인가된 지위 (accredited status)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객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을 일부 개정하였다.

■ Local Government: Municipal Systems Amendment Act 7 of 2011

- Date of commencement: 5 July 2011
- Repeals s 82 , substitutes ss 56 & 71, inserts ss 54A, 56A & 57A and amends ss 1, 54A, 56, 57, 66, 67, 72, 106 & 120 and Schedule 1 to the Local Government: Municipal Systems Act 32 of 2000.
 - “지방 정부: 시정 운영 개정법, 2011” 제정
 - “지방 정부: 시정 운영법” 82조 폐지, 56조와 71조 대체, 54A, 56A & 57A 삽입, 1, 54A, 56, 57, 66, 67, 72, 106, 120조 및 부칙1 개정

동법의 취지는 “지방 정부: 시정 운영법”을 일부 삽입, 수정을 통해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시운영담당자 임명과 관련된 추가 조항을 삽입을 통해 시운영 담당자(municipal managers)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임명된 시운영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업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등을 규율하고, 또한 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평가, 시공무원들의 의무, 보수, 혜택 등 근무조건에 관한 규칙, 근무조건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7 월

■ Merchant Shipping (Safe Containers Convention) Act 10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Repeal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Act 11 of 1985

- “해상 선적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협약)법”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법, 1985” 폐지

동 법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내용을 비준하며 이를 국내법에 적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법은 남아공 영토인 남극 연안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군섬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동법 3조 2항에 남아공 본토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군섬까지의 운송은 국제 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이 구간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은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기존 컨테이너와 새로 제조된 컨테이너에 적용되며, 항공 운송의 목적으로 제조된 컨테이너는 제외된다. 새로 제조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동 법의 모든 규정에 의거 제조되어야 하며, 견본 테스트나 개별 테스트를 통과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의 컨테이너는 동 협약이 시행되는 일자로 부터 5년 이내에 동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하는 컨테이너 승인 규정에 의거 승인받아야 한다.

■ Appropriation Act 11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14 July 2011.

- “세출 예산승인법, 2011”

헌법 213(2)조는 국고 자금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 지출 승인된 경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 자금 관리법” 제 26조 또한 국가 정부기관은 각 회계 연도에 따라 집행될 자금에 관하여 국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의 제정 목적은 회계연도 2011/12에 집행될 국고 자금에 대한 승인 목적과 기타 자금 집행과 연관된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동 법은 중앙 정부 기관의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승인한 것이다.

■ South African Postbank Limited Act 9 of 2010

Date of commencement: 22 July 2011

- “남아공 우체국 은행 유한회사법, 2010”

“우체국서비스법 (1998)의 51 (1), (3) & (4), 52, 53, 55, 58 조 폐지

작년에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시행된 동법의 취지는 그 동안 우체국 산하에서 운영되어 오던 포스트뱅크 (Postbank)를 독립 이사회를 갖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은행으로 전환을 위해 제정되었다. 포스트 뱅크는 그동안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농촌이나 도시 빈민층의 저소득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설립 취지가 있다.

동 법은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을 새로 설립되는 우체국은행의 조직으로 전환하므로 이에 필요한 전환 규정, 은행으로서 등록하므로 금융업체로서 은행업무 및 투자 부문의 영업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회사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권한 및 이를 감독하는 감독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자본금 조성 및 회계 관련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s for the areas of West Rand, Roodepoort, Vrede, Nongoma, Botshabelo, Ingwavuma, Marico and Swartruggens published

Amendment of area for which the small claims court for Bloemfontein was established.

- “소액청구법원법”

이번 개정안들은 새로운 소액청구법원의 신설 및 기존 신설법원의 관할 구역을 확대 적용하였다. 신설 지역은 웨스트 랜드 (West Rand), 루더푸어트 (Roodepoort), 브리드 (Vrede), 농고마 (Nongoma), 보차베로 (Botshabelo), 잉와브마 (Ingwavuma), 마리코 (Marico) 및 스와트루겐스 (Swartruggens) 등이며, 관할권 변경 지역은 부魯몬테인 (Bloemfontein)이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Schedule 1, 3, 4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별첨 세칙 1,3,4 개정

별첨 세칙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제봉에 사용되는 인조 가는 실에 대해 그동안 무관세에서 ITAC 레포트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15%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EU, EFTA, SADC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무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별첨 세칙 3은 산업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환불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CRT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는 텔레비전 수신에 사용되는 수신용 장치(reception apparatus), 디스플레이 패널 (display panels) 등에 대해 전액 관세 면세가 적용되며, 이는 2011년 4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또한, 알키드 수지(alkyd resins) 제조에 사용되는 탈수된 카스토르 오일 (Dehydrated castor oil)에 대해 국제 통상 행정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에서 허용하는 조건을 준수한 경우 관세 전액을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별첨 세칙 4는 일반 관세, 연비, 환경세 등에 대한 일반적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파인애플 통조림에 대한 환불 규정으로서, 관세에서 20% 환불을 허용하고 있다. 환불조건은 국제 통상 행정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Commission)에서 허용하는 양과 유통기한에 해당하며, 또한 남부 아프리카 관세 연합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지역에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8 월

■ Refugees Amendment Act 12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Immediately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Refugees Amendment Act 33 of 2008.

Amends ss. 1, 4, 8, 8C, 8E, 21B, 24, 24A, 24B, 27, 36 & 38, and substitutes the word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 wherever they occur, with the words 'Status Determination Committee' in the Refugees Act 130 of 1998.

- “난민 개정법, 2011” (“난민개정법, 2008”시행일로 소급 적용)

다음 조항을 개정: 1, 4, 8, 8C, 8E, 21B, 24, 24A, 24B, 27, 36, 38조

다음 어휘 대체: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를 ‘Status Determination Committee’로 대체

“난민법 1998”에 규정된 특정 용어에 대해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삭제, 개정 및 삽입하였고, 또한 난민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이를 명백히 근거없는 경우와 근거없는 경우로 나누었고, 국장 (Director-General)에게 난민신청서 결정을 담당할 ‘지위부여 결정 위원회’ (Status Determination Committee) 설립 권한을 부여 등에 제정목적이 있다.

동 개정법에 따라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가지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1) 난민 지위 부여, (2) 명백히 근거없는 경우로 거절 (rejection as manifestly unfounded), (3) 근거부족으로 거절 (rejection as unfounded) 등이다. 따라서 신청서가 근거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항소(appeal)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그동안 결과에 대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서 그 결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고, 담당자들 또한 결정을 쉽게 하도록 체계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난민신청이 항소에서도 거절된 경우 해당인은 해당인 본국으로 송환된다.

난민 신청중에 출생한 난민 신청인의 자녀에 대해 “남아공 출생 및 사망 등록법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근거 등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난민 신청서에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기 위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Immigration Amendment Act 13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Inserts s 9A, substitutes ss 13, 23 & 35, repeals ss 24 & 46, and amends the Preamble, ss 1, 4, 7, 9, 10, 10A, 14, 15, 19, 21, 22, 26, 27, 29, 30, 43, 49 & 50.

substitutes the words: 'visa' or 'visas' → 'temporary residence permit' or 'temporary residence permits'; 'terms and conditions' → 'condition' or 'conditions'; '18 years' → '21 years'

- “이민 개정법, 2011”

삽입 조항: 9A; 대체 조항: 13, 13, 35조; 폐지조항: 24조, 26조; 개정조항: 서문, 1, 4, 7, 9, 10, 10A, 14, 15, 19, 21, 22, 26, 27, 29, 30, 43, 49, 50조

이번 개정법은 이민법안에 규정된 개념을 국제적 개념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 방문 비자 (visitor's permit) 및 모든 종류의 임시 체류 허가증 (temporary residence permits)을 비자(visa)로 통일하였고, permit이라는 용어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permits)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노동비자가 발급되었는데 앞으로는 3가지 형태의 노동비자 즉 일반노동비자 (general work permits), 긴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소지에 대한 노동비자 (Critical Skills Work Permits), 다국적 기업 고용인에 대한 노동비자 (Intra Company Transfer Work Permits) 등이다.

그동안 타부처 장관에게 위임했던 '긴급히 필요로 하는 기술소지자'에 해당되는 직원군이나 산업분야에 대해 내무부 장관이 공포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방문비자로 왔다가 남아공 내에서 노동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11(2)조항이 남용이 되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또한 벌칙금 및 형량이 증가되었다. 아직 이민법만 개정이 되었지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 State Liability Amendment Act 14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30 August 2011 or earlier date set by the President by proclamation in the Gazette.

Substitutes ss 2 and 3 & inserts s 4A in the State Liability Act 20 of 1957.

- “국가 책임 보상 개정법” (시행일: 2011년 8월 30일 또는 대통령이 관보에 시행일보다 선행일을 선포한 경우 해당일자)

“국가 책임 보상법” 2조와 3조 대체 및 4A 신설조항 삽입

동법은 헌법 재판소가 “Nyathi”라는 사건 [Nyathi v 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for the Department of Health Gauteng and Another 2008 (5) SA 94 (CC)]에서 국가 책임 보상법 (State Liability Act)의 제3조가 위헌이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국회는 위헌 판결이 난 후 12개월 안에 법 개정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동 기간이 여러 번 연장이 되었다가 최종 상한일이 2011년 8월 31일로 설정되므로 동 법이 시행이 되었다.

Nyathi는 하우텡 (Gauteng)주 병원에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배상금 지불이 지연되므로 인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최종적으로 배상금이 지불이 되었지만 배상금을 받은 후 그는 바로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인측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 책임 보상법 제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6월 2일 승소하였으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3조에 배상금 지불을 국가 세액 (National Revenue Fund) 또는 지방정부 세액 (Provincial Revenue Fund)에서 지불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손해를 가한 해당 부처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므로 각 정부 부처의 업무수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정부 기관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시 정부 기관에 대한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 개정법은 이를 개정하여 정부기관이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도록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난 후 30일 이내에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경우 14일간의 통보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지불이 안 된 경우 가압류를 하며, 가압류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경매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74일 이내에 국가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채무변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압류로 인해 해당부처 업무를 지나치게 방해할 수 있는 동산이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Schedule 1, 3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별첨 세칙 1, 3 개정.

별첨 세칙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폴리에틸렌 (polyethylene)의 밀도가 낮으며 길이가 15 cm x 23 cm보다 작은 봉지로서 개봉이 되지 않으면서 한쪽에 구멍이 있는 경우, 수입전지역 무관세 적용이 된다.

별첨 세칙 3은 산업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환불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짜지 않은 수공 필라멘트로 코팅이나 덮이지 않으며, 150 g/m²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유아의 기저귀 제조에 공급되는 경우 전액 환불 된다.

9 월

■ Basic Education Laws Amendment Act 15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19 September 2011

Amends ss. 1, 3 & 4 of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Act 27 of 1996; inserts ss. 6B & 33A and amends ss. 1, 5A, 9, 12, 16A, 19, 36, 39 & 60 of the South African Schools Act 84 of 1996; amends s. 1 and substitutes s. 2 and certain expressions in the Employment of Educators Act 76 of 1998; and amends ss. 1, 5 & 19 of the South African Council for Educators Act 31 of 2000 and s. 1 of the General and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Assurance Act 58 of 2001.

-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들 개정법, 2011”

국립 교육 정책 법 (National Education Policy Act 27 of 1996) 제1, 3, 4조 개정;

남아공 학교법 (South African Schools Act 84 of 1996) 1, 5A, 9, 12, 16A, 19, 36, 39, 60조 삽입 및 6B, 33A조 신규 삽입;

교육자 고용법 (Employment of Educators Act 76 of 1998) 제 1조 개정 및 제2조 대체;

남아공 교육자 협의회법 (South African Council for Educators Act 31 of 2000) 제 1, 5, 19조 개정;

보통 또는 상급 교육 및 훈련의 질적 보장법 (General and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Assurance Act 58 of 2001) 제 1조 개정.

위 열거한 여러가지 법률 중에서 특히 “남아공 학교법” 개정에 주목적이 있으며, 공립학교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되었다. 공립학교 교장에 학교 재정 및 운영, 학교 이사회 양성에 관한 부가적 기능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였다. 또한 앞으로 지정된 학교 교복, 표준 학교 시설, 학교건물의 학생 수용능력, 학습과 지도와 관련된 지원 재원등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이 재정부 장관과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법은 학교안에서 또는 학교안이 아닐지라도 학업시간동안에는 교육 과정과 관련이 없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캠페인, 동맹, 불온한 안내책자나 팜플렛, 불온한 포스터 부착하거나 배너(banner)를 내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명과 관련하여 관련 학생이 결정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항소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주정부 기본교육담당 집행위원 (MEC)은 그러한 결정을 재가하여야 한다.

주정부 기본교육담당 집행위원 (MEC)는 공립학교 중 이미 학비 면제가 되는 학교가 아닌 학교 중에서 학비 면제대상 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또한 불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교 활동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법행위 또는 계약적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국가 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10 월

■ "Criminal Procedure Amendment Act 65 of 2008"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 of Highveld Ridge: 31 October 2011.

Date of commencement of s. 1 in respect of the magisterial districts of Alberton, Benoni, Boksburg, East London, Germiston, Inanda, Johannesburg, Kempton Park, Krugersdorp, Mdantsane, Moretele, Mthatha, Odi, Pietermaritzburg, Randburg, Roodepoort, Uitenhage, Umlazi, Vanderbijlpark, Vereeniging and Wonderboom: 11 November 2011.

- “개정 형사소송법”

2011년 10월 31일 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조에 대해 하이벨트 리지(Highveld Ridge) 관할구내에서 시행.

2011년 11월 11일 부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조에 대해 알버톤, 베노니, 복스벽, 이스트 런던, 저미스톤, 이난다, 요하네스버그, 켐톤 파크, 쿠르거스더롭, 음단취니, 모레테레, 음타타, 오디, 피터마르츠버그, 랜드버그, 루데부어트, 우이테하지, 음라지, 반더비질파크, 베르나흐킹, 원더부엄 관할구내에서 시행.

개정 소송법 제 1조는 “형사소송법, 1977”에 159조 A-D 항들을 신설하여 삽입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신설 규정은 계류중인 피고인이 전화 통화나 화상화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절차를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159A조는 특정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화상 화면 (television link)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159B조는 화상화면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였고, 159C조는 화상 재판시 기술적 요건을 규정하였고, 159D조는 화상 재판시 변호인과 피고인사이의 대화, 문서 교환 등의 비밀 유지 및 재판상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의 보호를 규정.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Schedule 1,3 amended

Schedule 3,4,5,6 amended

Schedule 1,3 amended

- “관세 및 소비세법”

별첨 세칙 (Schedule) 1은 일반 관세 (ordinary customs duty)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용은 인공 잔디(artificial turf)에 EU, EFTA, SADC를 제외한 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에서 10%로 인상.

아모니아 일종인 리신(lysine)과 에스테르(esters)를 EU, EFTA, SADC를 제외한 타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적용하던 관세 10%에서 무관세 적용.

별첨 세칙 3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환불에 대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의 주 내용은 인공 필라멘트 양 (artificial filament yarn), 일반 yarn 등을 수입할 경우 전액 환불(full duty)을 인정.

■ Customs and Excise Act 91 of 1964

Air Passenger Tax (APT/4) amended in terms of the proviso to s. 47B(2)(b)(i) with effect from 1 October 2011.

- “관세 및 소비세법”

동법 47B조 (2)(b)(i)항에 의거 2011년 10월 1일부로 남아공에서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자리랜드간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해 송료를 R80에서 R100로 인상.

■ Small Claims Courts Act 61 of 1984

Establishment of small claims courts for the areas of West Rand, Roodepoort and Randfontein

- “소액청구법원법”

소액청구법원은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제도로 저렴한 비용 및 간소한 절차로 채무회수나 손해 배상청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요하네스버그내 웨스트 랜드, 루더푸어트, 랜드 폰테인 지역에 소액청구법원을 신설.

■ Public Service Act 103 of 1994

Schedule 2 amended.

- “공무법”

별첨 세칙 2 개정

공무법 제7(5)b조에 근거하여 별첨세칙 2, 즉 각 주정부 부처 및 해당 부처장에 대한 신설, 개정, 대체 등을 주지사 요청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은 음프마랑가 (Mpumalanga) 주에서 ‘안전, 보안 및 연락부 (Department of Safety, Security and Liaison)의 명칭을 “공공사회 안전, 보안 및 연락부(Department of Community Safety, Security and Liaison)로 변경한 것이 주 내용.

11 월

■ "Civilian Secretariat for Police Service Act 2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1 December 2011, except ss. 4 (2) and (3) and 14: to be proclaimed.

Amends s 1, repeals s 2 and substitutes the words 'Secretary for Safety of Security', wherever they occur, with the words 'Secretary for the Police Service' in the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Act 68 of 1995 and amends s 1 of the Firearms Control Act 60 of 2000.

- “경찰 서비스에 대한 민간 사무국법, 2011”

시행일: 2011년 12월 1일 (4조 (2)와 (3)항 및 14조 제외- 동조항은 시행일 추후 공고)

헌법 208조에 의거하여 경찰업무를 독자적으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민간 감시국을 법으로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의 투명한 공권력 행사 및 일반의 자유제한에 있어서 최소한의 권한 행사, 경찰의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점검 등을 위해 민간 감시국 설립의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 감시국 설립 및 감시관 임명 및 권한, 보수, 보고 의무 등이다.

동법 시행으로 관련된 “남아공 경찰법” 제 1조 개정, 제2조 폐지함에 따라 남아공 경찰법에 있는 문구 'Secretary for Safety of Security'를 'Secretary for the Police Service'로 대체하고, “화기통제법” 제1조 개정함.

■ Science and Technology Laws Amendment Act 16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5 December 2011

Amends ss 1, 2, 4, 6, 7, 11, 15 & 18, repeals ss 16 & 17, substitutes ss 20 & 24 and the expressions 'chairman', 'president' and 'Executive Management Board', respectively, wherever they occur, with the expressions 'chairperson', 'chief executive officer' and 'Executive Management Committee', respectively and inserts the words 'or she' or 'or her' after 'his', 'him' or 'he', as the case may be, wherever they occur in the Scientific Research Council Act 46 of 1988;

Amends ss 1, 5, 7, 9 & 11 of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novation Act 55 of 1997;

Amends ss 1, 4, 6 & 10, repeals s 22 and substitutes the expression 'president', wherever it occurs, with the expression 'chief executive officer', except where it refer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r the president of the FRD i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ct 23 of 1998;

Amends ss 1, 5, 6, 7, 8, 10, 11, 12, 13, 14 & 16, substitutes s 2 and repeals s 9 of the Academy of Science of South Africa Act 67 of 2001;

Amends ss 1, 4, 6, 8, 10, 14, 15, 16 & 18, repeals ss 13, 17 & 19 and substitutes ss 2 & 12 of the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Act 68 of 2001;

and amends ss 1, 3, 6 & 20 of the Natural Scientific Professions Act 27 of 2003.

- “과학 기술 법률 개정법, 2011” (신규 법률)

동 법률은 다음 6가지 법률을 개정하였다: (1) 과학 연구회법(Scientific Research Council Act 46 of 1988), (2) 국가 기술혁신 자문위원회법(National Advisory Council on Innovation Act 55 of 1997), (3) 국립 연구 재단법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Act 23 of 1998), (4) 남아공 과학 아카데미법(Academy of Science of South Africa Act 67 of 2001), (5) 남아공 아프리카 연구소법 (Africa Institute of South Africa Act 68 of 2001), 및 (6) 순수 과학 종사자 전문 인법(Natural Scientific Professions Act 27 of 2003) 등이다.

주요 내용은 모든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국립 연구기관이나 연구소를 감독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 권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였다. 또한 법률의 기술적, 문법적 오류 수정, 남성 인칭에 여성 인칭 추가, 명칭 변경 등을 하였다.

■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7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Amends s 102 & Schedule 2 to the Firearms Control Act 60 of 2000

- “스토킹(괴로힘)에 대한 보호법, 2011” (신규 법률)

가정폭력법이 관계성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 법률은 제3자와 같이 관계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부터의 괴로힘을 당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쉬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다. 동법률은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및 경제적 위험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동 법률이 제공하는 주요 보호 내용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미행 당하는 등의 모든 종류의 스토킹(stalking)을 포함하고 있다.

동 법률은 보호 명령(protection order) 신청 절차, 가행자가 보호 명령을 위반시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 보호 명령과 최종 보호 명령(final protection order)을 나누어 위험에 대한 즉각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 명령은 전국적으로 적용이 된다.

임시 보호 명령은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을 시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시 보호 명령이나 최종 보호 명령이 승인되었을 경우 체포영장도 발부된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에 대해서도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Military Veterans Act 18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to be proclaimed

Repeals the Military Veterans' Affairs Act 17 of 1999

- “재향군인회법, 2011” (신규 법률)

“재향 군인과 관련된 법 (Military Veterans' Affairs Act)” 폐지

재향군인회법은 이전 법률인 ‘재향군인과 관련된 법’이 재향군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명목상의 법률로 존재한 반면, 신 제정법은 구체적으로 재향군인의 복지를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 지출이 예상되는 바 동 법률에 대해 인근 국가인 짐바브웨의 무가베정권이 백인정부에 대항하여 싸웠던 퇴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무력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재 분배와 같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 법률은 인종분리정권하에 백인정부를 대항하여 싸웠던 흑인 민주 투사를 재향군인 또는 퇴역군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각종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제5조에 복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상사자에 대한 보상, 심리치료, 직업 제공, 비지니스 기회 제공 또는 비지니스 보조, 주택, 의료, 교육, 연금, 교통비 보조, 장례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에 의하면, 퇴역군인들의 복지와 관련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재향군인회들은 국방부 부처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정책수립 및 법률 제정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의해 상임 자문기관(Advisory Council)를 두도록 되어 있다. 3조1항에 의하면, 정규군출신이 아닌 민주 투사 출신으로 재향군인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력 테스트(means test)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Division of Revenue Amendment Act 20 of 2011

Date of commencement: 7 December 2011

Substitutes Schedules 1 to 9 to the Division of Revenue Act 6 of 2011

- “국세 분배 개정법, 2011” (신규 법률)

취지: 전년도에 거두어 들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2011/2012 회계연도에 제출된 예산에 따라 중앙정부 부처 및 각 지방 정부에 형평성에 맞게 분배 및 할당금 집행에 있어서의 중앙 정부 와 각 지방 정부의 의무 및 책임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동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각 정부 부처 및 지방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과 실제 집행 내역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Second-hand Goods Act 6 of 2009

Date of commencement of the definition of 'controlled metal'; ss 16-20; 22 (1); 25 (4) (b); 25 (4) (c); 32 (1) (l); 32 (1) (o); 32 (2); 32 (3) and Schedule 2: 10 December 2011.

- “중고품 거래법”

중고품 거래법은 2009년 9월 30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법률로서 장물(도난품) 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품 거래상이나 전 당포 등의 사업 운영자에게 중고품 거래시 매매자 신원확인 및 도난품이 아니라는 증거자료 첨부 등을 의무화하였다.

동법은 부분 시행으로 “controlled metal”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모든 조항 및 이와 관련된 부칙 2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controlled metal과 관련하여 거래상으로서 허가, 허가 취소, 회원 등록, 거절 등을 다루고 있는 16-20조 시행, 도난품(장물) 관련하여 거래상의 의무조항을 규정한 22조(1)항 시행, metal cable과 관련하여 표피가 불탄 경우를 규정한 25조(4)항(b) 와 (c) 시행 및 controlled metal 과 관련하여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및 형벌 규정이 시행되었다.

부칙 2에 규정된 ‘controlled metal’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크롬, 납, 백색 합금(white metal), 니켈, 텉스턴, 주석, 페로 바나듐 (ferrovanadium), 페로 실리콘 (ferrosilicon), 페로 크롬 (ferrochrome), 놋쇠 (brass), 동, 코발트와 귀금속법 (Precious Metals Act 27 of 2005)에 규정된 귀금속을 포함하며, 이러한 금속이 전부 또는 일부 포함된 모든 물품을 지칭한다.

시행 규칙(regulation)은 아직 법제화 작업중에 있다.



생각은 **자유롭게**
연구는 **창의적으로**
세계적인 **법제연구기관**
최신**외국법제정보**